

월간
재정포럼 3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8년 3월호 제141호

현안분석 ·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 제도/ 김종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추정모형에 대한 소고/ 전병힐

정책토론티포트 · 제42회 납세자의날 기념 심포지엄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기고 ·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최신조세 · 재정 해외동향 · 中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세제개편 급물살 외

정책흐름 ·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조세제도 개혁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 안중범
현안분석	06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 제도 · 김종면 30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추정모형에 대한 소고 · 전병힐
정책토론포트	43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기고	56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 장재형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60 中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세제개편 급물살 외
정책흐름	68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84 예산 10%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을 적극 지원 86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도입 관련 87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상 조치 마무리 90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92 「국가회계법」 시행을 위한 후속업무 본격 추진 94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96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출범
재정통계	100 국세 · 지방세 비중 추이 외
이슈 & 포커스	110 국내기업 조세 역차별 없앤다 외
신간안내	118 경제학 패러독스 외

조세제도 개혁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안중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10년 동안 두 번의 정권에 걸쳐 감세논쟁을 주도한 한나라당이 정권을 창출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감세가 앞으로 5년간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 사실 지난 10년간, 특히 지난 5년간 국민들의 세부담이 많이 늘었다. 그 중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가 가장 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급속한 증대로 부자들의 세부담도 커졌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냈건만 재정적자는 점점 커져만 갔고 나라의 빛 또한 늘어만 갔다.

감세를 통해 경제 살리기 방안 찾아야

감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단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그동안 너무 무거웠기에 줄여줄 때가 되었다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감세정책이 필요하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담을 낮추면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는 더 많이 일하여 소비가 늘어난다. 세계의 평균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그동안 좋았던 세계경제가 유가 상승에 이어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앞으로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감세를 통한 경제 살리기는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감세 자체보다는 어떻게 감세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세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몇몇 세목의 세율을 인하하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각종 조세지원과 감면 그리고 공제제도들을 함께 고려하는 세부담의 경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구해내는 연구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차제에 소득세와 법

인세의 세율체계, 공제제도, 감면제도, 준비금제도, 최저한세제도 등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금하게 서둘러 세율 인하의 크기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동안의 조세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금의 종류 줄여 경제적 효율성 높여야

세부담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세금의 종류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서 세목 수가 무려 31개로 OECD국가 중에서 세금의 수가 제일 많은 나라에 속하고 있다. 세금의 크기와 더불어 세금의 가짓수도 이른바 조세왜곡(tax distortion)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세금의 수를 줄이는 것도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아주 오래전 파스로마나라는 전성시대를 이룩하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세금에 대해서 의미 있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조세제도를 단순화하여 세금의 수를 다섯 가지로 줄여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의 가짓수를 살펴보면 로마가 정복한 속주국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토지세, 자유를 얻은 경제력 있는 노예에게 부과되는 노예해방세, 오늘날의 소비세와 비슷한 매상세, 그리고 관세와 상속세가 부과되었으며 통치기간 내내 동일 세율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세기 다산 정약용 선생이 『경세유표』에서 세금부담의 경감과 함께 세금의 종류를 줄이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일관적인 조세제도가 경제의 불확실성 줄여

세제개편의 빈도를 줄이는 것도 우리의 조세정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감세, 세금 수 축소와 더불어 일관적인 조세제도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각 경제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세제개편이 잦은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거의 매년 세제개편을 하고 개편 항목 수도 100개가 넘을 정도로 세제개편 남용 국가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 빈번한 세제개편은 하나의 세제개편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또 다른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개개의 세제개편의 효과를 철저히 분석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추후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크나큰 장애가 된다.

.....
 이제는 감세 자체보다는 어떻게 감세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세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세제개편이 아니라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전체를 놓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려 보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세제개편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놓고 오랜 기간 토론하고 각종 안을 정리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련되는 세제개편은 실제 집행된 후에 과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여 차후 세제개편에 반영시킨다. 미국의 1983년 세제개편이 아직까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세제개편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뭇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역시 세금을 한번 정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한 번 정해지면 좀처럼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우구스투스가 조세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역사상 처음 상속세를 신설하는 데 20여년의 시간이 걸렸을 정도이며, 아우구스투스의 조세개혁 이후 다섯 가지의 세금은 변함없이 고대 로마의 역사와 함께 300년이나 지속되었다.

지난 정권의 경제적 어려움에 실망한 국민들이 이루어낸 정권 교체로 새 정부는 지금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세제를 포함한 정책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메뉴들을 접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최대한 많은 메뉴를 골라 하루빨리 시행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반찬이 많이 차려져 있더라도 당시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서 먹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세제개편이 아니라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전체를 놓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려 보는 것이다. 즉, 조세제도 개혁의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에 시작되었다가 무산되었던 조세개혁특위와 같은 조직이 구성되어서 신중하게 과학적으로 오랜 기간 조세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인류 역사를 보면 세금으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다. 그만큼 세금은 가장 효과적이고도 위험한 통치수단인 것이다. 그동안의 정책실패에서 보았듯이 세금은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또한 포퓰리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도 세금에 대한 신중하고도 효과적인 접근이다. 그래야 세금으로 국민부담을 줄여주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한국조세연구원

■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 제도

김종면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추정모형에 대한 소고

전병힐 ·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 제도¹⁾ :

경직성 경비의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모색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hrv@kipf.re.kr)

공무원 단체교섭은
특히 국가재정법에서
도입한 4대 재정개혁 중
두 가지 제도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

I. 서론

한국조세연구원

공무원 노조법의 시행(2006.1.28)으로 제한적이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에게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었으며, 2007년 3월에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공무원 단체교섭이 개시되었고, 공무원노조와 정부와의 첫 공동교섭이 2007년 7월에 개시되었다. 공무원단체와 정부와의 공동교섭의 주요 의제는 공무원 보수 및 각종 수당 인상을 비롯하여 공무원 연금개혁, 정년 연장 등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주요 정책결정 사안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그 결과가 각 부처와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공무원노조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는 최근 국가재정법 도입으로 개편된 새로운 재정운용 체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단체교섭은 특히 국가재정법에서 도입한 4대 재정개혁 중 두 가지 제도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 우선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된 문제를 보기로 하자.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의 시평으로 국가재원 사용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5년간 연도별 총 지출한도 설정을 통하여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관리의 중기계획을 수립한다. 총 지출한도 내에서는 세출예산의 분야·부문별 지출한도를 명시하여 국가 재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 및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그러

1) 본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수행한 기획예산처 정책자문 용역 보고서 『공무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해외사례 연구』의 내용 중 필자가 집필한 부분을 발췌하여 요약하였음을 밝혀둔다.



나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결과로 예기치 못한 인건비 추가 지출 및 주요 국가 정책 수정으로 야기되는 지출 증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은 용계획에서 수립된 지출한도 준수를 어렵게 하여 자칫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국정운영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는 정부예산 중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운영에서의 중요한 재정위험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4대 재정개혁 중 지출부처에 예산당국이 부여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도록 위임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즉 하향식 예산편성제도 역시 이러한 상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하향식 예산제도하에서 비록 부처의 인건비 예산과 경상운영비에 대해 별도의 지출통제가 이루어지나, 일부 부처는 자체 예산편성의 자율성 때문에 부처의 지출한도 내에서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가 수월해진 여건이다. 또한 보수나 운영경비가 아니더라도, 단체교섭 의제가 정부·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경우에는, 노조 요구의 수용 여부에 따라 부처예산 내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최적 자원배분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과거의 예산편성 방식과는 달리 하향식 예산제도하에서 부처의 자율성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예산운용과 정부-노조의 단체교섭 간에 존재하는 상충 가능성을 피하고 재정제도와 노사관계 양자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예산편성 과정과 공무원의 노사 단체교섭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예산운용과 정부-노조의 단체교섭 간에 존재하는 상충 가능성을 피하고 재정제도와 노사관계 양자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II. 주요국 사례

본절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생략하였으나 필자가 참가한 선행 연구에서는²⁾ 이들 3개국 이외에도 일본과 독일의 경우까지 총 5개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국가들이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참고하여 적용할 만한 국가를 거의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OECD의 30여 개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인구나 경제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만한 규모가 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이들 5개국이 대표적인 경우

2) 김종면·원종학·김우철 (2007) 참조.



미국은 예산과 공무원 단체교섭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미국 공무원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부 또는 각 기관의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체(政體)의 유형을 보아도 대통령제(미국),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과 총리(수상)를 모두 두는 반(半)대통령제(프랑스, 독일), 의원내각제(영국, 일본)를 망라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선진국의 유형은 군소정당의 연정형 의원내각제국가(주로 소규모 유럽 국가들 및 북유럽 국가들)와 오세아니아 국가(호주, 뉴질랜드)이며, 전자의 소규모 의원내각제 국가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르므로 그 사례를 직접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호주나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주의 영연방 국가들은 유사한 사례인 영국을 검토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 미국

가. 개요

미국은 예산과 공무원 단체교섭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미국 공무원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부 또는 각 기관의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 특히 임금은 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매년 갱신되어 미국법전에 명시하고 있으며, 임금을 포함하여 법에 정해진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의 정책 등 공무원의 처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도 당연히 교섭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공무원의 단체교섭은 주로 근무환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한된다³⁾.

이에 따라 단체교섭은 행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예산 및 범정부 인사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다루지 않으므로, 예산관리청(OMB) 및 인사관리청(OPM) 양 기관은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않는다.

미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행정부 내에서 준사법체제를 갖추어 공무원의 노사문제 전담기구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노사 간 쟁점 사항에 대해 조정, 기소, 판결에 이르기까지 연방법 제7부에 의거하여 행정부 소속의 '연방 노사관계 기구(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FLRA)'에서 담당하며, 행정부 소속인 FLRA 이외에 사법부(미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법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FLRA에는 노조의 교섭단위에 대한 심사 및 승인 권한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교섭단위는 단위 사업장 내의 직군 단위로 설정되어 상대적으로 작으며, 이에 따라 교섭의제가 사업장 내의 근

3) 민간의 노사관계는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근거하는 반면, 연방공무원은 Federal Service Labor-Management Relations Statute(미법전 제7부)의 적용을 받음.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공무원의 경우 임금교섭 및 파업권이 제약된다는 것임. 공무원의 파업을 금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파업권을 옹호하는 단체의 가입까지도 파면 사유로 규정함.



무조건 위주로 설정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나. 미국 공무원의 보수 결정

미국 연방공무원 대부분의⁴⁾ 보수는 1990년의 연방공무원보수균등화법(FEPCA; Federal Employees Pay Comparability Act, 미국법전 제5부 53장)에 따라 결정된다. FEPCA에 따른 보수 결정은 단체교섭과 무관하며, 인사관리청에서 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결정한다.

FEPCA의 적용대상(미국 법전 제53장 5302항)은 주로 일반보수표(GS)가 적용되는 공무원(미국법전 제5부 53장 5331~5338항 해당 공무원)이며, 이외에도 외교관(1980년의 외교업무법(Foreign Service Act 403항에 정의) 및 재향군인보건청(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종사자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2007년 현재 약 180만명의 연방공무원 중 120만명 이상의 사무직 인원이 FEPCA의 적용을 받는다.

FEPCA의 임금 인상 방식(미국법전 제5부 제53장 제5303, 5304항)은 1) 일괄 인상률과 2)지역급여 인상률을 합산하는 것이다. 법정 일괄 인상률은 ECI(Employment Cost Index; 민간 고용비용지수) - 0.5%포인트로 미국 법전의 제53장 530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ECI는 미국 노동통계청(BLS)에서 공식 집계하여 발표하는 지수이므로 이에 어떠한 형태이든 교섭이나 협상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된다. 이에 비하여 지역급여 인상률은 지역별로 민간 대비 보수격차 해소를 위하여 10년의 기간에 걸쳐 보수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지역별로 인상률을 정하여 일괄 인상분에 가산하도록 법전의 제53장 5304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인사관리청에서 매년 평균 0.5%포인트 정도의 지역급여 인상률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지역급여 인상률을 FEPCA의 관련 조항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는 동법의 예외규정 때문인데, 제5303항(일괄 인상)과 제5304항(지역급여)에서는 모두 예외규정을 두어 국가비상사태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법에서 규정한 바와 다른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일괄 인상은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대통령 예산안에서 자동적으로 인건비에 반영되어 왔다. 반면 지역급여 인상에 관한 제5304항의 내용 중, 행정부는 급여지역 구분, 민간과의 급여비교 방식, 연방보수위원회(Federal Salary Council) 및 급여대리인(pay agent) 지정 등 일체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지역급여 인상률은 FEPCA 제정 이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미국 연방공무원 대부분의 보수는 1990년의 연방공무원 보수균등화법에 따라 결정된다. FEPCA에 따른 보수 결정은 단체교섭과 무관하며, 인사관리청에서 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결정한다.

4) 주요 예외 사례는 단체교섭에 의해 보수가 결정되는 우정청임.



연방공무원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부여되나, 파업권 및 정치행위가
금지되고 아울러 임금교섭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매년 대통령의 권한으로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법에서 정한 인상률과 다르게 결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연방공무원의 보수 인상은 대체로 민간보수와 일정 폭의 격차를 유지하며, 매년 인상률은 민간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최근의 GS(일반봉급표) 급여 인상률을 보면 2005년 1월 3.5% 인상(GS 2.5% 인상 + 지역급여 1.0%), 2006년 1월 3.1% 인상(GS 2.1% 인상 + 지역급여 1.0%), 2007년 1월 2.2% 인상(GS 1.7% 인상 + 지역급여 0.5%)으로, 이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예산편성 순기상 OPM-OMB 간의 사전협의나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없이 인건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며, 연말·연초의 대통령 예산안 확정 직전에 최종 미세조정으로 마무리된다. 특히 예산 확정 이후에 집행단계에서 인건비의 변동 때문에 직제·정원 변경과 같은 매우 특수한 상황 이외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중기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되므로 예산제도와 공무원 인건비 결정 간에 상충 요인이 없다.

다. 노사의 법적 권한

미국법전 제5부 제71조 및 제73조는 연방공무원과 기관(경영진)의 법적 권한 및 이에 대한 제약을 명시하고 있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연방공무원의 파업 금지 등, 노측의 교섭력을 제약하는 내용이 있으며, 기관 경영진의 고유 권한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단체교섭 대상을 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안 중 일부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상술한 바와 같이 인건비 등 기관의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은 동법 조항에 의거하여 원천적으로 노사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연방공무원의 단체교섭권

연방공무원에게는 미국법전 제5부 제71조에 의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부여되나, 제71조와 제73조에 의하여 파업권 및 정치행위가 금지되고 아울러 임금교섭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73조는 공무원의 고용 제약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실질적인 교섭력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파업에 참여하거나 파업할 권한을 주장하는 경우 및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이 파업할 권한을 주장하는 연방공무원 단체에 가입한 경우까지도 연방공무원으로 고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7312항(시



위·소요 관련)에서는 연방공무원이 시위·소요를 계획·지원·참가·주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이유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파면되며, 이후 5년 이내에 연방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미국법전 제5부 제 71조에서도 공무원의 권리 및 제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7102항에서 공무원의 권리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⁵⁾.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는, 직원은 노조대표로 활동할 권리와 고용조건에 관해 단체교섭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조건’에 대한 정의를 둬으로써 암묵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일부 제약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권리의 제한을 법전의 제7103항 (a)(14)세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7102항의 ‘고용조건’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공무원 권리를 제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3조에서 금한 정치행위와 관련된 정책, 제도, 사안
- 직제분류와 관련된 사안
- 연방 법률에 의해 정하는 사안

이에 따라 급여 및 급여 인상 결정 방식이 미국법전 제5부 제53조(FEPCA)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무원연금 역시 법정 사항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제7116항은 기관(경영진)과 노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⁶⁾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7116(b)(7)항은 노조의 실력 행사를 금하여 교섭력을 제한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조가 파업, 업무정지(work stoppage), 태업(slowdown),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피켓팅(picketing)을 주도하거나 또는 이에 참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며, 또한 노조가 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2) 경영진의 권한

미국법전 제5부 제7106항에서는 정부기관 경영진의 고유권한을 정의하고 이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선 관리운영 사항으로, 각 기관의 사명(미션), 예산, 조직, 직원 수 및 기관 내의 기밀사항 취급에 관한 사항을 경영진의 고유권한으로 지정하며, 이에 따라 정부 또는 기관 소관의 정책도 교섭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기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경영진의 권한을 인정하는바, 직원의 채용, 배치, 감독, 일시귀휴(layoff) 혹은 계속고용 및 정직, 해고, 감봉 및 강등 등 징계처분, 업무의 배분, 외부위탁 및 기관운영상의 인사 결정, 보직 발령시 적정 인사의 선정·발령, 긴급 상황에서 기

급여 및 급여 인상 결정 방식이 미국법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무원연금 역시 법정 사항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5) 예외조항(제7103(a)(3)항)에 따라 FBI, CIA, NSC, TVA, 경호실(Secret Service) 직원에게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이 없음.

6) 부당노동행위는 영어로 "unfair labor practices"이며, 이때 "labor"는 "노동"이나 "노조"의 뜻이 아니라 "노사관계"나 "노사관련"으로 해석해야 함. 따라서 "unfair labor practices"는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부당행위로 해석해야 되며, 노조에 의한 부당행위로 포함됨.



교섭단위의 범주 및 규모가 노측의 의사가 아니라 FLRA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원활한 노사 간 교섭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관의 고유 임무(미션)를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가 이에 포함된다.

단체교섭이 가능한 사항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1) 조직의 소단위조직, 특정 프로젝트, 또는 직위에 배정되는 직원의 수, 유형, 등급에 관한 사항 및 기술 등 업무 수행방식에 관한 사항, (2) 상기 조항과 관련된 경영진의 권한 행사에 있어 경영진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동 경영진의 관련 권한 행사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직원을 위한 후속 조치(고충처리) 등이다.

라. 노사문제 전담 기구(FLRA) 운영

본절의 도입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연방공무원의 노사분쟁 해결 전담기구로 FLRA(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를 운영하고 있으며, FLRA는 노동문제에 관한 한 행정부 내의 준사법체계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노동문제에 관한 한 사법부(법원)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FLRA의 역할 중 단체교섭단위의 지정 권한은 노사교섭 체계를 결정하는 데 특히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교섭단위의 범주 및 규모가 노측의 의사가 아니라 FLRA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원활한 노사 간 교섭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 결과 소수의 교섭단위를 제외하고 교섭단위는 대부분 전국단위가 아니며, 기관 전체보다는 사업장 등 하위조직 또는 직군별로 구성되어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이는 노측의 교섭의제를 사업장 내의 근무조건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반해 성격이 상이한 직군이나 여러 사업장이 교섭단위를 형성하는 경우 이들 간의 공동 관심사를 찾기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사안으로 교섭의 초점이 변질될 우려가 커진다. FLRA의 교섭단위에 대한 결정권에 따라 동일 부처·기관 내에 대부분의 경우 복수의 교섭단위가 존재하며, 따라서 FLRA는 교섭단위 결정 기준을 통하여 복수 노조 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동일 교섭단체 내에서도 하나의 노동단체가 과반수의 지지로 독립적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복수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2. 영국

가. 개요

영국은 불문법 체계하에 공무원의 노동권이 암묵적으로 인정되나, 예산 편



성 과정에서 부처별 인건비를 강력히 통제하는 사례이다. 우선 공무원 단체교섭이 예산에 주는 영향을 보면, 예산편성과 단체교섭 간의 분리는 제도적으로는 불완전하나, remit제도를 통하여 국가예산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고 있다.

영국 예산제도에서는 국가재원의 배분이 격년제 예산제라고도 불리는 Spending Review(SR)를 통해 이루어진다. SR하에서는 각 부처의 총 지출한도(TME)는 재량지출(DEL)과 의무지출(AME)로 구분되며, 각 부처별 재량지출 한도(DEL) 이내에 부처운영비(Administration Budget)는 별도의 하위 한도로 설정된다. 부처 인건비는 부처운영비 중 일부이나 별도의 한도가 설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부처가 운영비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실제로는 부처 인력 및 인건비 운영계획인 remit에 대해서 노조와 단체교섭 이전에 재무부와 수상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부처나 정부의 예산 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

영국 공무원 제도의 특성으로는 직급 및 보수체계를 각 부처·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노조와 단체교섭 대상이며, 그 결과 부처·기관별로 직급 및 보수체계가 다르다. 특히 보수에 관한 단체협약은 다년도 계약인 경우도 많으며, 다만 부처·기관은 승인된 remit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일부 공무원 및 공공부문 직군은 단체교섭 없이 독립적인 Pay Review Body에서 보수를 결정하기도 한다. 단체교섭은 각 부처·기관의 장과 노측 간에 이루어지며, 동시에 복수노조와 협의하는 단일교섭 체제가 운영된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하는 명문화된 절차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독립 중재 기구인 ACAS의 중재하에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한다.

영국 공무원 제도의 특성으로는 직급 및 보수체계를 각 부처·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공무원의 범주 및 권한

불문법 체계를 따르는 영국에서는 공무원법 역시 명문화된 법이 없으므로 공무원의 범주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왕권의 하인 중 정치 또는 법적 지위에 종사하지 않는 민간인”을 의미한다⁷⁾. 이에 따라 장관(정치적 임명직), 군인, 경찰관, 지방공무원, NHS(국립보건서비스) 직원 등은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실제로는 각 부처 장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며, 대략 우리나라의 중앙공무원에 해당된다.

명문화된 법이 없기 때문에 근로 및 노동 관련 권한에 대해서도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 영국 의회조사국의 견해로는, 영국의 전통법에 따른 해석으로는 공무원은 국왕의 하인이며, 국왕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기 때문에

7) 영국 수상실에서 사용하는 정이며, 본문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일부 특정 직위 및 왕실 소속 하인도 포함됨.



영국의 공무원 제도는 고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전 공무원에게 일관성이 있는 직급이나 보수체계가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 하인인 공무원은 국왕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국왕이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에게는 근로자로서의 근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근로나 노동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견해와는 달리 실제로는 1966년의 근로권리법(ERA; Employment Rights Act)의 일부 조항과 공무원관리규정(CSMC; 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수상실에서 관리하는 행정부 규정)에 의해 공무원에게도 민간에 준하는 노동권이 보장되며, 노조 가입 및 활동이 허용된다. 이는 1991년의 대법원(High Court) 판결에 따른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이 없었다.

이러한 해석의 결과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노동기본권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결권과 쟁의(파업)권은 이를 금하는 법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유사하게 단체교섭권 역시 이를 금하는 법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고위공무원은 Pay Review Body(보수심의기구)가 보수를 결정하므로 실질적으로 보수에 관한 단체교섭이 없다.

다. 직급 및 보수체계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영국의 공무원 제도는 고위공무원(SCS; Senior Civil Service)을 제외하고는 전 공무원에게 일관성이 있는 직급이나 보수체계가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우선 직급체계를 보면, 수상실의 공무원관리규정(CSMC)에 근거하여 각 부처와 책임운영기관은 고위공무원 이외의 전 직원의 직급체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차관(Permanent Secretary) 이외에는 중앙에서 결정하는 직급이 없으며, 급여대역(pay band)의 결정 역시 수상실 지침 이내에서 부처결정의 자율성이 인정된다.

보수체계도 직급과 유사하게 각 부처와 책임운영기관이 고위공무원 이외의 전 직원의 보수체계(연금 제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CSMC 제7장 7.1.1항). 단, 부처별 보수체계는 정부의 보수 관련 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CSMC 제7장 7.1.2항), 대규모 개편 시에는 수상실과 사전 협의 의무가 있다(7.1.3항). 이러한 보수체계 및 보수결정의 분권화는 1994년에 시작되어 1996년 4월 1일에 완료되었다.

그 결과 부처 및 부처 산하기관별로 독자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하여, 유사 직



급이라도 다른 기관과의 보수를 비교하기 어려우며, 정부에서는 현재 더 이상 직급별 보수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 즉, 영국 공무원의 보수체계라고 할 수 있는 급여체계가 없으며, 부처별 혹은 범정부의 보수 분포만 발표되고 있다.

라. 보수의 결정

공무원 개개인, 또는 기관 단위의 보수 인상률은 각 기관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인건비의 총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체교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는 보수(인상률) 결정이 remit(승인요청서) 제도를 통하여 재무부와 수상실에서 관리되기 때문이다.

Remit제도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중 NDPB(비부처공공기관) 근로자의 보수 결정에 적용된다. 18개 주요 부처, 즉 소속 인원이 가장 많은 정부 부처(Department)는 예상 소요인원과 보수를 상세히 명시한 인력운용계획을 적은 remit를 제시하여 재무부 차관(Chief Secretary)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에 비해 비주요 부처, 즉 직원 500명 이상(정규직 기준)의 (책임운영)기관, 재무부 승인 요건이 법에 명시된 산하기관(NDPB;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들 역시 remit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는 재무부 차관 또는 재무부 담당자의 승인을 요한다. 직원 500명 이하의 비주요 책임운영기관 및 재무부 승인을 요하지 않는 산하기관은 소속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하기관 중 일부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고 독립적인 당해 Pay Review Body가 remit를 담당하며, 산하기관 이외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근로자들 중 일부 역시 Pay Review Body가 있다. Pay Review Body는 현재 총 8개가 운영되며, 군인, 의사, NHS 직원, 교도관, 교사, 고급여 공무원, 경찰의 보수가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다⁸⁾.

Remit제도하에서는 각 부처·기관은 임금협상 이전에 인력 및 인건비 운영계획을 재무부가 지정한 양식에 기입한 remit를 재무부나 소속 부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무부의 공무원보수지침(Civil Service Pay Guidance)은 5.1.6항에서 remit가 승인되기 이전에 노조와 공식 단체교섭을 금하고 있다. Remit의 승인은 수상실과 재무부 2곳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며, 재무부 내에서는 노동·보수·연금팀(Work, Pay and Pensions Team)과 당해 세출담당팀(Spending Team)의 승인을 모두 얻어야 한다⁹⁾.

Remit 승인 이후 각 부처·기관은 소속 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보수를 결정하나, 승인된 금액 이상을 요하는 조건에 합의할 수 없으므로 수상실과 재

Remit 승인 이후

각 부처·기관은 소속 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보수를 결정하나, 승인된 금액 이상을 요하는 조건에 합의할 수 없으므로 수상실과 재무부는 remit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통제할 수 있다.

8) 경찰의 보수는 2개의 Pay Review Body에서 결정하며, PAB Remit Group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경찰을, PNB Pay Review Body는 영국(Unted Kingdom) 경찰을 담당함.

9) 다년도 remit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것도 가능함.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노동권이 인정되고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예산과 공무원 단체교섭의 제도적 분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부는 remit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통제할 수 있다. 이외의 경우로 Pay Review Body가 보수를 결정하는 공무원 직군에서는 단체교섭 없이 당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보수를 결정하며, 각 Pay Review Body는 remit 작성 과정에서 자체적인 조사와 더불어 정부와 노조의 견해를 듣고 참고할 수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노동권이 인정되고 임금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실시하나, 다만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엄밀히는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예산과 공무원 단체교섭의 제도적 분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체교섭이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 단체 임금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일반적으로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의지에 반하여 국가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측 단체교섭 대표인 공무원장관은¹⁰⁾ 예산장관이 동의한 한도 이내에서 교섭을 한다.

프랑스 공무원은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보건공무원 등 3개 부문 종사자로 정의되고 있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전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지 특징은 모든 공무원에게 소속부문, 직위, 직종, 호봉별로 봉급지수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봉급지수에 곱해지는 단 1개의 “지수100”(l'indice 100)이 결정되면 모든 공무원의 봉급이 결정되는 보수체계가 운영된다는 사실이다¹¹⁾¹²⁾¹³⁾. 이에 따라 정부와 노조 간에 범정부 단위로 이루어지는 임금 단체교섭에서는 봉급지수라는 단일 지수 하나만을 협상한다.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면, 민간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공무원법(loi le pors)에 명시된 권한만 인정된다. 즉,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교섭 및 공정노동에 관한 법이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법 제4조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공무원은 모든 권한과 의무가 공무원법에 의해 정해지는 법적 신분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법에서 보장되는 권한은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에게는 노조 가입(공무원법 제8조)과 쟁의권(제10조)이 인정된다. 그러나 경찰, 군인, 내무성 통신부 직원, 기상예보관 등에게는 쟁의권이 없으며, 주정부 고위직, 항공관제관, 사법관 등도 쟁의권이 일부 제약된다. 그러나 쟁의권이 인정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징계처분

10) 2007년 5월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무부에 2명의 장관이 있으며, 이중 1명인 예산장관이 폐지된 이전 공무원장관의 임무를 겸임함.

11) 이러한 보수 결정체계는 우리나라 지역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을 위해 운영되는 점수제도와 유사함.

12) 고급 관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봉급액이 명시된 특별 봉급표가 적용됨.

13) 이외에도 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이 가산됨(직책수당, 지역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주거수당 등 10여 종).



이 가능하며, 국가 기간산업·업종 종사자에게는 근무 복귀를 강제로 명할 수 있다.

단체교섭 권한은 정부와의 임금교섭 및 부처 경영진과의 근무조건 협의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은 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보수(‘지수100’, 즉 봉급지수)에 대해서만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단체교섭에 임할 의무가 없으며, 합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도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보수 인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봉급 인상에 합의하여 정부가 이를 지킨 경우는 지난 25년간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임금교섭이 결렬되거나, 합의 및 서명을 하였더라도 정부가 이후에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다. 임금교섭과는 별도로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경영책임이 있는 당국자”(부처 경영진)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해 엄밀하게는 기속력이 없다.

5개국 모두 실질적으로 임금 단체교섭이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감안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은 없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Ⅲ. 주요 이슈별 사례 비교 **한국조세연구원**

위에서 국가별로 살펴본 공무원 단체교섭과 예산운용에의 영향에 대해, 본 절에서는 다시 주요 이슈별로 요약하고자 한다. 아래의 논의에서는 본고에서 소개한 미국, 영국, 프랑스 사례 이외에도 일본과 독일의 특성도 간략히 요약하여 5개국의 사례를 정리하기로 한다.

1. 예산과 임금 단체교섭의 분리

5개국(미·일·영·독·프) 모두 실질적으로 임금 단체교섭이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감안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은 없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법이나 제도상 예산과 공무원 임금 단체교섭이 완전히 분리된 대표적 사례이며, 따라서 단체교섭이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영국은 단체교섭이 부처·기관의 인건비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으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운영비에는 중앙 예산당국이 설정한 지출한도가 적용되며, 인건비 역시 remit제도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처·기관은 노조와 공식 교섭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인력 운영계획(인원, 등급, 보수 등)을 재무부와 수상실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예산과 단체교섭 양 제도 간에 부분적



미국의 경우
 보수 결정은 법정 사항으로서,
 민간보수지수인 ECI와 연동하며,
 이에 더하여 인사관리청이
 보완적으로 지역급여 인상을
 통한 소폭 조정한다.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대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나, 정부가 반드시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합의를 할 의무가 없으며,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준수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공무원 담당 장관은 예산장관이 지정한 한도 내에서만 교섭을 진행하므로 예산과 단체교섭 간에 부분적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으나, 독일은 공무원(Beamte)의 경우 단체교섭을 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으로는 단체교섭이 예산에 주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공무원과는 달리 공공근로자(보건, 사회서비스, 기능직 등)는 단체교섭을 하지만, 인상 폭이 낮아 예산에 반영하는 데 무리가 없다. 또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은 전년도 공공근로자 보수 인상률에 준한다는 관례가 있으므로 어떠한 의미에서는 단체교섭과 공무원 보수 결정이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유사하게 공무원의 임금은 단체교섭을 하지 않고 일본 인사원에서 매년 민간 기업 수준과 비교하여 독자적으로 정한다.

2. 한국 주세연구원 보수체계와 보수의 결정

5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수체계를 유지한다. 미국의 경우 보수 결정은 법정 사항으로서, 민간보수지수인 ECI(노동통계청이 추계)와 연동하며, 이에 더하여 인사관리청(OPM)이 보완적으로 지역급여 인상을 통해 소폭 조정한다. 일본도 인사원이 일방적으로 보수 인상을 결정토록 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내무부가 재무부와 협의하여 공무원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공공근로자의 경우에는 교섭을 하지만, 이 역시 재무부가 제시한 한도 이내이며, 공공근로자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된 보수 인상률은 익년도의 공무원 보수 인상에 그대로 적용되어온 관례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수100'이라는 봉급지수 하나를 결정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보수가 결정되며, 정부가 노조와 이를 교섭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결과가 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5개국 중 영국의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직급·보수체계, 보수 수준이 부처·기관별로 자율화되어 전국적인 일관성·통일성을 이미 상실하였다는 특성이 있다.

〈표 1〉 5개국의 예산과 임금 단체교섭 간의 관계 비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인건비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예산요구 초안은 직전 연도의 중기 경제 가정을 사용 행정부 예산안 편성 중 보수 인상이 확정되면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운영비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나 재무부+수상실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한 조치 없이 예산 과정에서 무난히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당국이 보수 인상을 결정하므로 부처는 세부 인력계획 제출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사
공무원 보수	보수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급·호봉에 따른 일반 봉급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기관별로 완전 자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급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문, 직위, 호봉, 단계별로 세분화된 봉급지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봉급표
	인상 결정 방식 및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인상률(법정 사항) OPM에서 지역급여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자율로 노조와 교섭하나, 재무부+수상실이 사전 통제 한 범위 내에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무부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담당 장관이 결정 2005년 5월 이후 예산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원이 일방적으로 결정
단체교섭의 예산에 대한 영향	예산과 단체교섭 분리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적으로 거의 분리 remit 제도를 통하여 예산의 integrity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적 분리(공무원 교섭이 없음) 공공근로자는 교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적 분리 공무원의 교섭력이 제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 분리
	단체교섭의 실질적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법과 제도를 통하여 원천적으로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음 예산총액, 부처 간 배분, 부처 운영비 총액에는 영향이 없음 부처 인건비는 영향을 일부 받을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음 공공근로자 임금교섭 결과가 예산편성 중 반영되나, 재무부가 제시하는 인상률 상한 이내 공무원은 익년도에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므로 예측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음 임금 인상을 단체교섭하지만, 정부가 교섭할 의무나 결과를 수용할 의무가 없음 교섭은 예산장관이 지정한 한도 내에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제도상 원천적으로 배제



공무원의 단결권은
5개국 모두에서 인정되며,
노조 가입 및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5개국 모두 민간에
비해 제약이 있다.

3.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공무원의 단결권은 5개국 모두에서 인정되며, 노조 가입 및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5개국 모두 민간에 비해 제약이 있다. 이 중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제약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미국에서는 급여와 경영 고유권한 등 법정 사안들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제로 교섭 가능한 사안은 기관·사업장 내의 지엽적인 근무조건으로 국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교섭’은 가능하나 ‘단체교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단체교섭권이 없다고 해석된다. 독일 역시 공무원(Beamte)은 단체교섭이 없으나, 공공근로자의 임금 단체교섭이 익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을 결정하므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단체교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석된다. 프랑스에서는 임금에 관하여서만 정부와 전국단위 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하나, 정부는 교섭에 응하거나 합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노측이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5개국 중 영국에서만 사업장별 단체교섭을 통하여 직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remit제도를 통하여 인상폭에 간접적인 통제가 가해진다. 또한 Pay Review Body 관할의 공무원 및 공공부문 직원은 임금에 대한 단체교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겐 고위공무원 약 4,000명 및 공공부문의 약 40%의 근로자가 해당된다.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과는 달리 쟁의권(파업)의 인정 여부는 5개국 간에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법으로 공무원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¹⁴⁾, 프랑스는 파업권을 인정하나, 법으로 일부 직군은 금지(군인, 경찰관 등)한다. 영국은 불문법 체계로, 파업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관례가 없으므로 쟁의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군인과 경찰 등 일부는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4.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특성으로 우선 교섭단위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은 매우 분산화된 단일단계 교섭을 한다. 즉, 교섭단위는 부처·기관 단위이며, 복수 노조가 인정된다. 미국은 교섭단위 내 과반수 직원을 확보한 노조에게 독점적 대표권을 인정하나, 대개의 경우 기관 내 복수의 교섭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은 복수의 노조와 상대해야 한다. 또한 교섭단위의 대다수가 사업장 또는 사업장

14) 독일 공무원의 경우는 파업이 금지됨(공공근로자는 가능).



소속 직군별로 세분화(2,450개 교섭단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약 90개 교섭단위가 있으며, 부처·기관의 장이 간부들과 함께 교섭에 참가하여 동시에 복수 노조 대표와 교섭을 진행한다.

미국, 영국의 사례와는 달리 독일, 프랑스는 전국단위의 단일 교섭을 하므로 정부 대표가 노조와 교섭을 한다. 일본은 단체협상이 없다.

단체교섭의 두 번째 특성으로 교섭 대상(교섭의제)을 보면, 미국은 급여, 기관 경영진 고유권한, 기관 외부 사안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오로지 근무조건으로 교섭의제를 국한한다. 프랑스, 독일은 주로 급여에 치중하나 근무조건도 교섭의제에 포함할 수는 있다. 영국이 가장 포괄적인 범주로 교섭의제를 설정하며, 급여와 근무조건 전반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제도를 보기로 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조정제도가 없는 경우이며, 정부가 교섭에 응하거나 합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필요시 일방적으로 보수 인상을 결정한다. 미국은 FLRA를 통하여 사법부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부 내에서 조정 및 중재가 이루어진다. 독일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진행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에 준한 절차를 따른다. 영국에는 명문화되거나 일반화된 조정 절차가 민간 노동분쟁에도 없으나, 일반적으로 조정전문 독립기구인 ACAS의 자문·조정을 받으면서 노사 양자 간에 교섭을 계속한다.

미국, 영국의 사례와는 달리 독일, 프랑스는 전국단위의 단일 교섭을 하므로 정부 대표가 노조와 교섭을 한다. 일본은 단체협상이 없다.

<표 2> 5개국 국가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비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국가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단결권	인정됨 - 단, 군인, 외교관, FBI 직원 등은 금지	인정됨 - 단, 군인은 금지	인정됨	인정됨 - 단, 군인은 금지	인정됨 - 단, 경찰관, 자위관 등은 금지
	교섭권	상당히 제약됨 - 급여, 연금 등 법정사항 및 경영 고유권한은 제외 ※ 우정청 직원은 협약체결권 있음	인정됨 - 고위공무원을 비롯, Pay Review Body 관할 직군은 임금 교섭이 없음 (공공부문의 40%) 연금은 기관·사업장 등 단체 교섭 단위가 아니라 수상실이 노조와 직접 협의	공무원관계법 개정으로 공무원조합의 관여를 법률상 보장 협약체결권은 없음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자와의 교섭결과가 익년도에 반영됨	임금에 대해서만 인정됨 - 근무조건, 연금 개정 등은 협의가 가능 ※ 협약체결권이 없으며 교섭결과로 의정서가 작성된 경우는 이에 따르는 것이 관행이나, 이 경우에도 정부는 합의 결과를 무시할 수도 있음	인정됨 - 단, 협약체결권은 없음 ※ 현업, 특정독립행정법인 및 우정공사직원에는 협약체결권이 있음
	쟁의권	금지됨 - 단순참가를 포함하여, 위반은 파면 및 형사처벌의 대상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파업은 위법 아님 - 단, 군인, 경찰관 등은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음	전통적 직업관리제도의 제원칙으로부터, 금지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인정됨 - 단, 경찰관, 교도관 금지	금지됨
단체교섭의 실태	교섭단위	분산화된 단일단계 교섭 각 부처·기관별로 교섭 - 주로 소규모 사업장 단위	분산화된 단일단계 교섭 1) 일반 직원 - 각 부처·기관별로 교섭 - 관련된 모든 조합대표가 교섭에 참가 2) 고위공무원 - 급여 이외의 근로조건에 대해 각 부처별로 교섭	집중화된 단일교섭비관리 - 연방, 주 및 시군구에서 일괄하여 교섭이 행해짐	전국단위의 집중화된 단일단계 교섭 전 공무원	- 각 부처별로 노동조합과 교섭 - 인사원 등은 연합체와 회견 등
	교섭대상	근무조건 (급여, 경영 고유권한 등 법정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님)	급여 및 근무조건	급여(공공근로자에 한함)	급여(지수100) 및 급여체계 - 근무조건도 협의	단체교섭이 없음
	분쟁조정	FLRA가 행정부내 준사법체제로서 전담	민간부문에도 규정된 바 없음 - 주로 ACAS의 조정하에 교섭을 계속	분쟁조정위원회 절차가 규정됨	없음	해당 없음

한국조세연구원



IV. 시사점

1. 예산과 단체교섭 분리의 필요성

주요국에서는 예산·재정 운용의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별로 나름대로 예산과 공무원 임금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노동기본권의 보장 역시 한 사회·경제를 지속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및 이를 통한 국정 운영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여서, 이 두 요소가 충돌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국가예산에서 경직성 경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편성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동으로 예산운용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이러한 측면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며, 중기예산 운용과 공무원 단체교섭 간의 상충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속히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양 제도 간의 제도적 또는 법적인 분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산과 단체교섭 분리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접근방법을 각각, 또는 겸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통하여 대표적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예산의 재정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 교섭체계의 분산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교섭단위를 사업장 등 소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교섭단위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교섭 의제를 직장·사업장과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FLRA의 교섭단위 인정 권한의 사례를 참조하여 노동단체가 직장이나 부문을 넘어 연대함으로써 정치적 사안에 비중을 두는 것을 지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립적인 노사문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교섭단위의 관리·조정과 아울러 분쟁 해소 전담기구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FLRA 및 영국 ACAS 사례).

아울러 영국의 remit제도와 같이 임금교섭은 부처·기관의 재량하에 진행하되 예산당국 및 총리실은 직접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다만 부처의 인

주요국에서는 예산·재정 운용의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별로 나름대로 예산과 공무원 임금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있다.



예산과 단체교섭
분리 방안으로는 교섭체계의
분산화, 교섭대상의 제한,
공무원 노동권의 제약,
분쟁조정기구의 운용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력·인건비 총액 운용을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부처·기관에는 대신 인력·인건비 운용에서 다소의 탄력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술한 바와 같이 교섭단위가 적절한 규모와 범주로 설정되어야 각 부처·기관이 실효성이 있는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섭대상의 직접 제한

미국, 일본, 독일 관리 등의 사례와 같이 임금교섭을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경영진 고유권한인 사안, 기관 외부의 정책 및 기타 사안, 법에서 정하는 사안도 제외(기존 법과 상충되는 의제는 배제하며, 혹시 의제가 채택되어 합의에 이르더라도 원천적으로 무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임금 인상 결정 제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적절한 제약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례는 본고에서 검토한 주요 선진 국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오직 불문법 체계로 법의 적용이 다소 모호한 영국에서만 민간에 상응하는 수준의 노동기본권이 인정되고 있었으며,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쟁의권(파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 분쟁조정기구의 운영

미국의 FLRA나 영국의 ACAS와 같이 공무원의 노사분쟁 조정기구를 행정부 내의 독립기구로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무원, 혹은 공공부문의 노사분규를 가급적 행정부의 범주 이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노사분쟁이 장기화 또는 필요 이상 첨예화되는 사태를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2. 공무원 윤리 확립의 필요성

본고가 발췌하여 요약한 『공무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해외사례 연구』의 작성 과정에서 필자와 2명의 공동 연구진은 조사대상국가의 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 및 공무원 단체교섭 담당 기관과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공무원은 공공(영국의 경우에는 국왕)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Weber적 공공윤리, 공공가치관하에 봉사한다는 인식으로 쟁의권 등 노동기본권의 일부 제약을 당연한 것으로 감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공부문 종사자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원론적인 가치관이겠지만, 새삼 되새겨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굳이 이를 전한다.

이러한 독일, 프랑스, 일본 사례와 달리 공무원 또는 공공부문 근로자가 대규모 파업을 시도했던 영국과 미국에서는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 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파업을 엄단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였다는 사실도 아울러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역시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겠으나, 법과 원칙, 즉 기존 제도의 틀 이내에서 노사가 문제 해결을 모색하지 못하고 불법이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수용할 경우, 우수한 법이나 제도를 갖추어도 여러 계층·집단 간의 이견을 해소하거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기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대화로써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KIP**

영국과 미국에서는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 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파업을 엄단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였다는 사실도 아울러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종면 · 원종학 · 김우철, 『공무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해외사례 연구: 예산편성제도와 관련된 성을 중심으로』, 기획예산처 정책자문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BLS, “How to Use the Employment Cost Index for Escalation,” <http://www.bls.gov/home.htm>

BLS, Union Members in 2006,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Newsletter USDL 07-1113, 2007.

BLS, Employment Cost Index-June 2007,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Newsletter USDL 07-1151, 2007a.

Bordogna, Lorenzo, “Industrial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2007.

Cabinet Office, *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2006.

Carley, Mark, *Industrial relations in the EU, Japan and USA*, European



-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05
- CMS & AFGE, *Master Labor Agreement between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and the 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2004.
- Cour des Comptes, LA FONCTION PUBLIQUE DE L'ÉTAT DEUXIÈME RAPPORT PUBLIC PARTICULIER,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IVI DES RÉPONSES DES ADMINISTRATIONS INTÉRESSÉES, 2001.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School Teachers' Pay Condition Document 2007 and Guidance on 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2007.
- DGAFP, *Fonction publique: faits et chiffres*, Ministère de la Fonction Publique, 2006.
- DTI, *Trade Union Membership 2006, 2007*.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EIRO thematic feature: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in an enlarged European Union*, 2006.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Industrial relations in EU member states 2000–2004*, 2007.
- FLRA, “About the FLRA,” <http://www.flra.gov/10.html>
- GAO,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Workers with and without Bargaining Rights,”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 U.S. Senate, GAO–02–835, 2002.
- GPO, “Executive Order 13420,” *Federal Register*, Vol 71, No. 247, 2006, pp. 77571~77580.
- GPO, *US Code Title 2: The Congress*, <http://www.access.gpo.gov/uscode/title2/title2.html>
- GPO, *US Code Title 5: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Employees, Part III: Employees*, <http://www.access.gpo.gov/uscode/title5/partiii.html>
- Grimshaw, Damian, “National systems of public sector pay: implications



for ‘welfare outcomes’ and economic stability,” ESRC Labour Studies Seminar Series.

Hirsch, Barry T. & MacPherson, David A., “Union Membership and Coverage Database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Not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6, No. 2, 2002, pp. 349~354.

HM Treasury, *Spending Review 2004*, 2004.

HM Treasury, *Pre-Budget Report*, 2006.

HM Treasury, *Budget 2007*, 2007.

HM Treasury, *Civil Service Pay Guidance 2007-08*, 2007a,

HM Treasury, *Public Expenditure Statistical Analyses 2007*, 2007a

IDS, *Public sector pay policy*, a report for the Council of Civil Service Unions, 2007.

Legifrance (<http://www.legifrance.gouv.fr>), *CONSTITUTIONAL BYLAW (LOLF) No. 2001-692 of 1 August 2001 on budget acts*, <http://www.legifrance.gouv.fr/WAspad/Visu?cid=17362606&indic e=20&table=LEGI&ligneDeb=1>

Legifrance (<http://www.legifrance.gouv.fr>), *Law no. 83-634 of July 13, 1983, Loi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Law carrying right and obligations of the civil servant)*, <http://www.legifrance.gouv.fr/WAspad/Visu?cid=17362606&indic e=20&table=LEGI&ligneDeb=1>

Legifrance (<http://www.legifrance.gouv.fr>), *Loi organique no 2001-692 du 1er aou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http://www.legifrance.gouv.fr/WAspad/UnTexteDeJorf?numjo=ECOX0104681L>

Lucifora, Claudio & Dominique Meurs, “The Public Sector Pay Gap in France, Great Britain, and Italy,” Pay Inequality and Economic Performances Project financed by the EU, 2004.

Meat Hygiene Service, *MHS Pay and Conditions of Service Final Offer* 28.09.05, 2004

Ministère de la Budget, des Comptes Publics et de la Fonction Publique, “Les circulaires budgetairés,” <http://www.performance-publique.gouv.fr/?id=209>.



- Ministère de la Budget, des Comptes Publics et de la Fonction Publique ,
Rapport annuel sur l'état de la fonction publique, Volume 1, Faits et chiffres 2006-2007, 2007.
-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La réforme des comptes de l'Etat*, 2006.
- Nomden, Korn, "Labour relations in the Belgian, French, German and Dutch public services," mimeo, 2001
- OECD, "Trends in public sector pay in OECD countries," 1996 Edition draft report, Public Management Committee, 1997.
- OECD, *The Legal Framework for Budget Systems, OECD Journal on Budgeting, Special Issue*, Vol. 4, No. 3, 2004.
- OECD, "Governance of Decentralised Pay Setting in Selected OECD Countrie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2007/3, 2007.
- OME, "Public/Private Approaches to Pay & Progression," mimeo by Research and Analysis Group, 2005
- OMB, *Preparation, Submission, and Execution of the Budget*, Circular No. A-11, 2007
- ONS, "Public sector employment 2006: seasonally adjusted series and recent trends," Labour Market Trends, 2006.
- ONS, *Civil Service Statistics 2006*, 2007.
- ONS, "Characteristics of public sector workers," *Economic & Labour Market Review* Vol. 1 No. 5, 2005a.
- OPM, "All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Report," http://lairs.opm.gov/portal/page/portal/LAIRS_Main/BARGAINING_AGREEMENTS:TAB859271.
- OPM, "Listing of All Active Bargaining Unit Status Codes," http://lairs.opm.gov/portal/page/portal/LAIRS_Main/BARGAINING_UNITS:BARGAINING_UNIT_REPORTS.
- OPM, "National Exclusive Recognition Units," http://lairs.opm.gov/portal/pls/portal/LDR.LDR_RPT_URITFG_TBL_C.show.
- OPM, "Negotiability Determinations," http://lairs.opm.gov/portal/page/portal/LAIRS_Main/NEGOTIABILITY_DETERMINATIONS:



SEARCH_NEGOTIABILITY_DETERMINATIONS.

- OPM, “Recognition Units with National Consultation Rights,” http://lairs.opm.gov/portal/pls/portal/LDR.LDR_RPT_LIST_REG_UNIT_W_NCR.show.
- OPM, *Federal Civilian Workforce Statistics: The Fact Book, 2005 Edition*, 2006.
- OPM, *Report on Locality-based Comparability Payments for the General Schedule,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s Pay Agent 2006*, 2006a.
- Prison Service Pay Review Body, *Third Report on England and Wales 2004*, 2004.
- Review Body on Senior Salaries, *Twenty-Eighth Report on Senior Salaries 2006*, Report No. 62, 2006.
- Scottish Fisheries Protection Agency, MINUTES OF PARTNERSHIP MEETING HELD ON THURSDAY 18th DECEMBER 2003 AT 12.00 PM IN ROOM 004, PENTLAND HOUSE, EDINBURGH, 2003.
- Stanley, Martin, “How to be a Civil Servant,” <http://www.civilservant.org.uk/pay.shtml>, 2007.
- UK Parliament, “Civil Servants: Employment Rights,” Standard Note SN/BT/3698, 2005.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추정모형에 대한 소고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bjun@kipf.re.kr)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건전한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정확한 예측과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요청된다.

I. 도입

한국조세연구원

출산율 감소와 수명의 증가에 따라 우리 사회는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2007년 현재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비율은 9.9%로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서 있으며, 2018년과 2026년의 노년층 비율은 각각 14.3%와 20.8%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와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¹⁾. 비교적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경우에도 197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2006년에서야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했음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의 노령화 추세는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경제 내 부양인구비율을 증가시켜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예컨대 은퇴 후 특별한 수입원과 자산이 없는 노년층들의 빈곤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보장은 고령화 사회가 직면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노년층 경제문제의 경우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의료서비스보장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서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작되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현재 주된 논의는 안정적인 재정유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건전한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정확한 예측과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요청된다. 노인

1) 2006. 11월 장래인구 추계자료.



장기요양제도의 재원은 다른 종류의 사회보험제도와 같이 가입자 부담의 보험료, 국가 지원 및 수혜자 부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험료율, 경제 변수, 인구구조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수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므로 적어도 수입 추정문제는 다른 제도에서의 추정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요재원 규모에 관해서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소요재원 역시 증가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의견을 같이하지만, 구체적인 증가 규모는 각 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가정과 추정방식에 따라 상이하다. 기존 연구들은 소요재원은 단순히 노령인구 규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의 요양서비스 이용 행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노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소요재원 추정문제와 차별적이며, 요양서비스 이용수준은 각 개인의 건강수준, 보다 정확히는 현재와 미래의 건강수준에 대한 분포와 다른 사회경제변수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연구가 제시하는 추정치들이 자칫 상당한 수준의 오차를 가질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소요재원 추정모형은 노령인구 건강수준의 기간별 이행과정(transition process)에 대한 추정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소요재원 추정모형은 노령인구
건강수준의 기간별 이행과정에
대한 추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노년장기요양보험제도 수요추정모형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이전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단순추계방식이 건강수준의 기간별 이행과정과 관련해서 강한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일 것이다. 추계결과의 정확성은 암묵적으로 사용된 가정의 현실 적합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단순한 예를 이용하여 이들 가정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기존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제3절에서는 제2절에서 사용된 단순한 모형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기존 추정방식이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져오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한 자료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II. 추계방법에 대한 논의

이 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에 지출규모를 결정짓는 수요예측모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총 지출규모²⁾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자격요건 및 급여수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본고에서는 논의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급여 지출액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 보유자로서 재택 내지 시설에서 간병 및 요양서비스를 요구하는 자로 한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 보유자로서 재택 내지 시설에서 간병 및 요양서비스를 요구하는 자로 한정된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혜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과정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수혜대상자가 요양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를 통해 10개 영역 37개 항목에³⁾ 걸쳐 욕구조사를 실시 후 의사소견서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각 신청대상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눈다. 현재 기준에서는 5개 등급중 상위 3개 등급해당자가 수혜대상자로 선정된다. 수혜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월급여액의 상한액은 등급에 따라 결정되고, 수혜대상자는 급여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가서비스의 경우⁴⁾ 15%, 시설서비스의 경우⁵⁾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⁶⁾.

<표 1>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체계

서비스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방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소속직원 (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 상태 등을 조사
등급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요양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다만,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 보장 등을 위해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제공하는 인터넷에 게시

자료 : 보건복지부 (2007a)에서 인용

3) 요양서비스요구 조사의 10개 영역은 2차 시범사업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수단적 생활수행능력(ADL), 의사소통장애, 시각기능장애, 인지기능, 행동변화, 통증간호, 지원서비스, 환경평가, 질병상태이다. 요양등급판정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2007b)에서 찾을 수 있다.

4)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간호, 단기보호와 같이 요양보조사 혹은 간호사가 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5)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체와 같이 요양에 필요한 전문적 설비와 인력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제공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6) 예외적으로 1)의료급여수급권자 혹은 저소득층은 시설급여의 10%, 재가급여의 7.5%를 부담하고, 2)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개인부담이 면제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지출총액은 65세 이상 인구 수, 수급자격대상자 판정률, 재가 및 시설서비스 이용률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장기요양대상자 급여총액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지출총액은 65세 이상 인구 수, 수급자격대상자 판정률, 재가 및 시설서비스 이용률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FR_{t,i,j} = P_{t,i} \times L_{i,j} \times FI_{i,j}$$

$$HR_{t,i,j} = P_{t,i} \times L_{i,j} \times (1 - FI_{i,j})$$

$$TR_{t,i} = \sum_j (FR_{t,i,k,j} + HR_{t,i,k,j}) \times NU_{i,j}$$

여기서 $FR_{t,i,j}$ 는 t연도 i연령대 j등급 시설대상자 수, $HR_{t,i,j}$ 는 t연도 i연령대 j등급 재가대상자 수, $TR_{t,i}$ 는 t연도 i연령대 j등급 총 장기요양대상자 수, $P_{t,i}$ 는 t연도 i연령대 총 인구 수, $L_{i,j}$ 는 i연령대 j등급 발생률, $FI_{i,j}$ 는 i연령대 j등급 시설입소율, $NU_{i,j}$ 는 i연령대 j등급 서비스이용률을 나타낸다. 위의 관계식에 착안하여 한국조세연구원(2007)을 포함한 기존 연구들⁷⁾ 연령별로

장기요양대상자 수 = 전체 대상자 수 × 등급별 대상자 비율 × 시설입소비율

라는 공식을 이용하여 연령별 요양대상자 수를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전체 장기요양대상자 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등급발생률, 시설입소율, 서비스이용률 등의 변수를 외생화하는 방식으로 추정치를 산출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급여총액과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적격대상자 선정방식 설계상 건강상태의 분포가 등급발생률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동시에 건강상태는 시설입소율과 서비스이용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등급발생률, 시설입소율, 서비스이용률을 외생화하는 추정방식은 건강상태의 사회적 분포에 대해 암묵적인 가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추정방식의 적합성은 이 가정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의존하게 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시설서비스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시설입소율과 서비스이용률 모두 1이라고 하자. 또한 1개의 등급만이 존재한다고 하자. 즉, 단순히 수혜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위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단순해진다.

7) 기존 연구들의 추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조세연구원(2007)을 보라.



개인의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서비스 인정확률과
생존확률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TR_{t,i} = FR_{t,i} = P_{t,i} \times L_i \quad (1)$$

다시 말해, t년도 i연령대 급여수혜자는 해당 인구 수에 발생확률을 곱해 구해지는 것이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건강상태, 보다 정확하게는 건강상태에 대한 사회적인 분포가 인구규모와 대상자 발생확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t+1년도 인구추정치는 출생률이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개인들의 생존확률(survival probability)에 결정되며, 이는 개인의 t년도 건강상태에 의존하게 된다. Bhattacharya, Garber, and MaCurdy (1998)에 의하면 연령, 성별, 인종과 같은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질병요인에 따른 사망률이 상이하다. 또한, 개인별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대상자 발생확률 혹은 인정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등급판정제도의 심사기준 특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 나타나 있는 보건복지부(2007) 2차 시범사업시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사망률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표 2> 등급별 사망자 비율

('06. 4. 1 ~ '07. 6. 30, 단위: %)

지사	계 (2차 판정자/ 사망자)	장기요양 인정				장기요양 불인정			
		계 (B)	1등급	2등급	3등급	소계	4등급	5등급	등급외
계	4.11	16.67	28.93	12.57	8.36	0.08	0.07	0.00	0.00
일반	4.50	18.67	31.34	14.38	9.37	0.12	0.12	0.00	0.01
기초수급자	2.75	10.38	20.03	6.48	5.70	0.00	0.00	0.00	0.00

주: 사망률=각 등급별 사망자수/각 등급별×100
자료: 보건복지부(2007b) p.78에서 인용

등급판정도가 개인의 건강 정도를 나타낸다면 사망률과 건강상태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이는 것이다⁸⁾.

수요 대상자 산출식 (1)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률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사전적으로 주어진 값을 적용하는 방식이 잘못된 추정치를 가져옴을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살펴보자. 단순화를 위해 치유가 되지 않는 특정한 만성 질병의 보유자가 수혜대상자가 선정되는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다음을 가정한다.

- 가정 1. 연령은 질병보유확률, 서비스이용률, 생존율 등 모든 요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가정 2. 서비스이용률과 시설입소율은 1이다.

8) 각 등급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사회경제변수와 연령, 성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라는 해석에는 주의가 따른다. 또한, 등급별 사망률은 구간내 개인들의 건강상태분포에 따라 다른 수치를 보이게 된다.



- 가정 3. 질병 보유시 시설입소 적격대상자로 판정한다.
- 가정 4. 생존율은 질병 보유 여부에만 의존하며, 이번 기에 질병보유시 다음 기 생존확률은 0.1, 그렇지 않은 경우 1이다.
- 가정 5. 이번 기 질병보유자는 다음 기에 확률 1로 질병을 보유하며, 이번 기 질병 비보유자는 다음 기에 확률 0.2로 새로이 질병 보유자가 된다.

수요대상자 규모 산출식은 사후적으로 성립될 뿐, 사전적으로 구해질 수 없다.

〈표 3〉 질병보유율 및 생존율에 대한 가정

	인구수	다음 기 생존율	다음 기 질병보유율 ⁹⁾
이번기 질병보유자	500,000	0.1	1
이번기 질병비보유자	500,000	1	0.2
전체	1,000,000	0.55	0.273

가정 4와 가정 5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방식들은 수혜대상자 판정비율 (L_i)를 외생화하여 추정한다. 각 시나리오에 따라 증가하거나 고정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여기서는 이번 기 수혜대상자 판정률을 다음 기 수혜대상자 판정률로 사용해보자. 그러면, 다음 기 요양서비스 이용대상자는

$$275,000 = 550,000(\text{다음 기 인구}) \times 0.5(\text{질병보유율})$$

라는 결론을 얻는다. 그러나 정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0,000 = 500,000(\text{이번 기 양성반응인구 수}) \times 0.1(\text{생존확률}) + 500,000(\text{이번 기 음성반응인구 수}) \times 1(\text{생존확률}) \times 0.2(\text{질병보유율})$$

다음 기의 총인구 수는 55만명이고, 15만명의 양성반응자가 있다는 앞서의 계산을 이용해 실제 질병보유율은 약 27.3%임을 알 수 있다. 기존방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잘못된 질병보유율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생존확률은 질병보유율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구추정시 사용되는 생존확률과 질병보유율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두 확률은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요인에 의해 동시에 결정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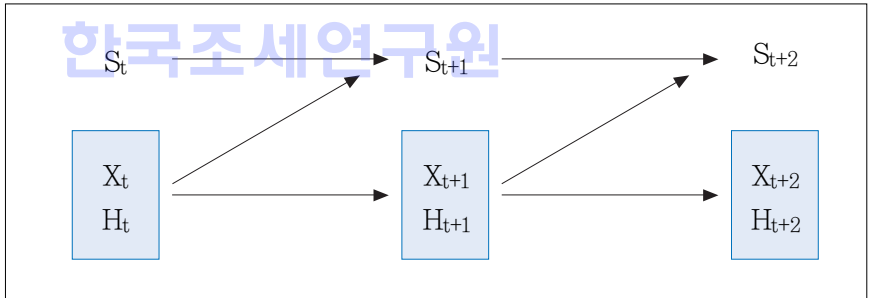
9) 다음 기 질병보유율은 생존했다는 가정하에 질병을 보유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질병보유율은 유병률(Prevalance rate)로 해석될 수 있다.



수혜대상자 비율을 외생화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모델에 근거한 추정치에 의존해야 한다.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식 (1)은 사후적으로 성립할 뿐 사전적으로 구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식 (1)을 적용하기 위한 수혜대상자 비율을 외생화함에 있어서, 단순히 가정에 의해 그 값을 결정하기보다는, 정확한 모델에 근거한 추정치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번 기의 건강과 사회경제변수는 지난 기까지의 건강과 사회경제변수의 이력(history)에 의존할 것이다. 앞서의 예와 같이 오직 지난 기의 건강수준과 사회경제변수만이 이번 기의 건강과 사회경제변수를 결정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는 다음의 도표에 요약되어 있다. 여기서 X_t 는 t기의 사회경제변수를, H_t 는 t 기의 건강상태를, S_t 는 t기의 생존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된 가정 외에 전기의 건강수준과 사회경제변수가 통제되면 이번 기의 생존확률과 사회경제변수는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는 가정 역시 사용되고 있다.



다음 기에 장기요양서비스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 다음 기에 살아 있어야 하며 ($S_t=1$), (2) 질병을 앓고 있어야 한다 ($H_t=0$). 따라서 다음 기 급여대상자 규모에 대한 기대치(expected value)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sum_i \Pr(S_{i,t+1}=1|X_{i,t}=x, H_{i,t}=h) \Pr(H_{i,t+1}=0|X_{i,t}=x, H_{i,t}=h) 1(X_{i,t}=x, H_{i,t}=h)$$

$$= \sum_{x,h} \Pr(S_{i,t+1}=1|X_{i,t}=x, H_{i,t}=h) \Pr(H_{i,t+1}=0|X_{i,t}=x, H_{i,t}=h) w(x,h)$$

위의 식에서 $1(\cdot)$ 은 표시함수(indicator function)를 의미하고, $w(x,h) := \sum_i 1(X_{i,t}=x, H_{i,t}=h)$ 는 t시점에서 사회경제변수와 건강변수가 각각 x 와 h 인 집단의 크기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생명표를 이용하는 경우 조건화하는 변수에 따라 다음 기에 생존하



는 인구 추정치는 $\sum_{x,h} \Pr(S_{i,t+1}=1|X_{i,t}=x, H_{i,t}=h)w(x,h)$ 혹은

$\sum_h \Pr(S_{i,t+1}=1|X_{i,t}=x, H_{i,t}=h)w(x,h)$ 로 제시된다.

비슷하게 사회경제적 변수 및 건강변수에 대한 조건화 여부에 따라

$\sum_{x,h} \Pr(H_{i,t+1}=0|X_{i,t}=x, H_{i,t}=h)w(x,h)$ 혹은

$\sum_h \Pr(H_{i,t+1}=0|X_{i,t}=x, H_{i,t}=h)w(x,h)$ 을 만성질환 보유자에 대한 추정치

로 이용한다. 따라서, 기존 추계방식을 따른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는 인구와 유병률의 곱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left(\sum_{x,h} \Pr(S_{i,t+1}=1|X_{i,t}=x, H_{i,t}=h)w_t(x,h) \right) \times \left(\sum_{x,h} \Pr(H_{i,t+1}=0|X_{i,t}=x, H_{i,t}=h) \frac{w_{t+1}(x,h)}{N_{t+1}} \right)$$

일반적으로 이 추정치는 정확한 추정결과인

$$\sum_{x,h} \Pr(S_{i,t+1}=1|X_{i,t}=x, H_{i,t}=h) \Pr(H_{i,t+1}|X_{i,t}=x, H_{i,t}=h) w_t(x,h)$$

와는 다르다. 예외적으로 생존확률 혹은 질병발현율이 건강수준과 사회경제변수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즉

$$\Pr(S_{i,t+1}=s|X_{i,t}=x, H_{i,t}=h) = \Pr(S_{i,t+1}=s)$$

혹은

$$\Pr(H_{i,t+1}=h|X_{i,t}=x, H_{i,t}=h) = \Pr(H_{i,t+1}=h)$$

가 성립하면 두 추정치는 일치하게 된다. 또한 다음 기에 대한 조건부 생존율과 조건부 유병률이 이번 기의 건강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수록 기존추계방식이 가져오는 오차가 커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예를 통해 생존율과 수혜대상자 비율, 보다 정확하게는 생존변수와 각 등급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건화하지 않은 채 각 변수에 대한 모집단의 추정치를 이용한 기존의 방법은 부정확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히 등급대상자 비율을 외생화하는 접근의 정확성은 궁극적으로 외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지출액 결정요인을 외생화하는 기존 추계방식을 일반적으로 부정확한 추정치를 제시한다.

한국조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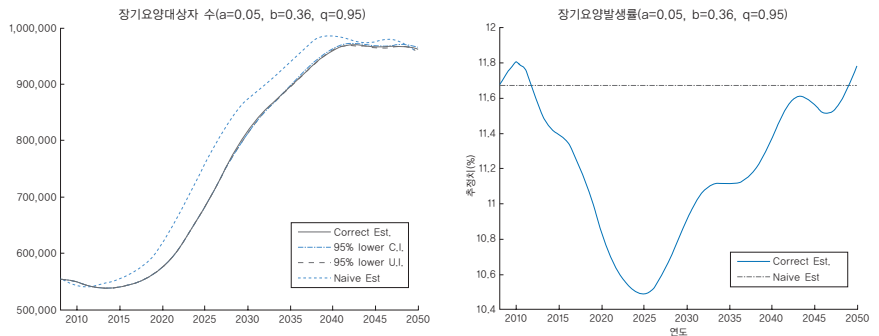
정확한 추정치는 생명표와 건강변수의 동적인 관계에 대한 엄밀한 고찰 없이는 얻어지기 곤란하다.

생화된 등급대상자 비율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추정치는 생명표와 건강변수의 동적인 관계에 대한 엄밀한 고찰 없이는 얻어지기 곤란하다.

이상의 논의를 해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건강과 사회경제변수 간의 동학적 관계를 사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사실이다. 실제 언급된 변수들의 동학이 어떤 양상을 갖는지는 실증자료를 통해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변수, 즉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여부 및 그 크기가 고려되고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정책도입 이전의 이행확률 (transition probability)에 의존한 수요규모 추정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한다. 생존과 건강상태가 정책개입 이후에도 동일한 확률분포를 갖는다는 불변성항 (invariance property)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또 다른 중요한 관심사이다. 개인 i 가 t 시점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I_{i,t}$ 라고 하자.

한국조세연구원

[그림 1] 실험 1



특정 정책 개입에 대한 건강과 생존더미변수의 조건부 분포를 $F_{S_t, H_t | I_t}$ 할 때, 정책당국자의 효용함수 $G(\cdot)$ 은 사회구성원들의 생존과 건강상태에 대한 분포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경제적 효율성은 제도 변화 전후의 목적함수변화분의 크기, 즉

$$G(F_{S_t, H_t | I_t=1} | t=1, 2, \dots) - G(F_{S_t, H_t | I_t=0} | t=1, 2, \dots)$$

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III. 모의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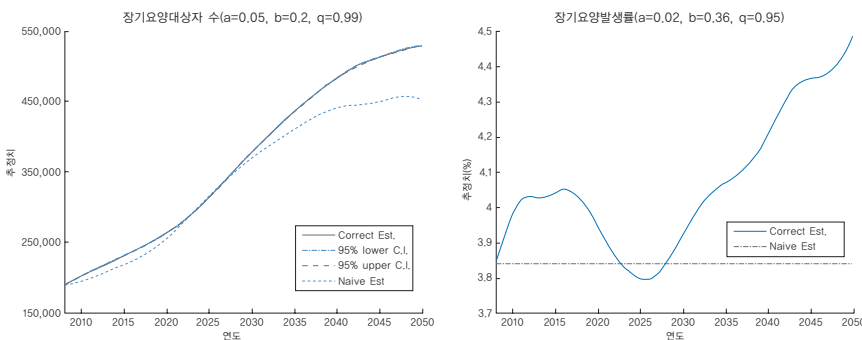
제2절에서 기존의 방식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기존 연구들의 오차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여기서는 단순한 통계적인 가정과 파라미터에 대한 가정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기존 추정방식의 오차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 사용한 가정을 아래와 같이 베르누이(Bernoulli) 분포를 통해 모수를 결정하였다.

$$\begin{aligned} \Pr(S_{t+1}=0|H_t=0) &= \alpha \\ \Pr(S_{t+1}=0|H_t=1) &= \beta \\ \Pr(H_{t+1}=0|H_t=1) &= q \\ \Pr(H_{t+1}=1|H_t=0) &= 0 \end{aligned}$$

또한 65세 이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요하는 건강상태는 없다 ($H_t=0$)고 가정하였다.

[그림 2] 실험 2



[그림 1]은 $\alpha=0.05$, $\beta=0.36$, $q=0.95$ 라는 모수를 사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규모와 65세 고령자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이 모수 값들은 1978년에서 2007년까지의 통계청 인구추정치를 서바이벌 (survival) 모형에 대한 최우 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구해졌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2015년까지 약 55만명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 고령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요양서비스 대상자도 증가하게 되어 2040년 무렵에는 약 95만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대비 장기요양 대상자 비율의 경

모의실험 결과 일정한 질병보유율을 가정하는 추계방식의 오차는 대부분의 경우 95% 신뢰구간을 벗어났다.



장기요양보험대상자 규모의 정확한 추정을 통한 적절한 보험료 산정 및 재정의 안정화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 대략적으로 U자형 추세를 보였다. 2008년 현재 약 11.6%의 비율에서 2025년까지 10.5%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정한 장기요양대상자 발생비율을 가정하는 기존 추정방식의 가정이 이 모의실험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기존 추정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발생률은 2008년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정의상 기존 추정방식은 2008년에는 정확한 값을 제시하나, 이후 오차는 점차 증가하여 약 5만명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추정방식은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오차를 야기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림 2]는 $\alpha=0.05$, $\beta=0.2$, $q=0.99$ 라는 모수를 사용한 모의실험 결과이다. 이전과 비교해 질환발생률이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 장기요양 대상자 수와 장기요양발생비율 모두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주요한 사실들은 동일하게 관측된다. 장기요양발생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기보다는 초기에 증가와 감소를 경험하다가 2025년 이후 계속된 증가로 2050년경에는 약 4.5%에 도달한다. 기존 추정방식이 가져오는 오차는 이전과 비교하여 적은 수준이나 많은 시점에 있어서 95% 신뢰구간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동일하였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추정모형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성 질병대상자를 포함한 장기요양대상자를 가정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안정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에 대한 동의가 경제적인 효율성 및 수입지출구조를 감안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여전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보다 앞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지출규모의 증가로 인해 오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급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안정화를 꾀했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관점에서 장기요양보험대상자 규모의 정확한 추정을 통한 적절한 보험료 산정 및 재정의 안정화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존의 추정방식은 요양대상자 발생률과 이용비율 등의 변수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장기요양대상자 규모 및 소요재원의 장기추세를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생존율과 요양대상자 발생률 모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예컨대



특정 질환유무와 같은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심각한 오류를 가져온다. 생존율과 요양대상 발생률이 서로 독립적으로 외생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한 요인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추정하는 다른 모형들 역시 유사한 문제점을 잠재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주요한 요인에 대해 외생화함은 건강상태 및 기타의 변수들의 동학관계에 대해 암묵적인 가정을 함과 동일하다. 따라서 추정치의 정확성은 궁극적으로 외생화된 변수의 정확성에 의존되고, 결국 기존 모델을 이용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외생화된 변수의 값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이다. 따라서 외생변수로 주요 요인을 단순화하기 전에 각 변수가 결정되는 맥락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본고는 단순한 가정하에 정확한 요양서비스 규모를 추정하는 일례를 보여주었다. 물론 제안된 추정방식은 주요변수들이 가정된 동학과정을 따라야만 작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인 변수, 건강 수준, 생존터미변수 등에 대한 이행확률의 도출에 대한 연구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모형 구축을 위해 사전적으로 요구된다. 다시 말해,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본격적인 제도의 도입에 앞서 여러 기간에 걸친 시범사업 기간 동안 고려대상이 되는 개인별 자료 구축이 사전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시범사업대상에 대한 자료 구축은 특정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자료의 구축이 어려운 경우, 제기된 문제점을 인식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연구방식은 다른 식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컨대, 단순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외생화하는 대신, 주요 관심 변수들이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수준에서 이용률에 대한 범위를 구축한 후 장기요양서비스 급여 총액의 구간 추정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KIPF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확한 소요재원 예측을 위해서는 사회·경제 변수, 건강수준 및 생존변수 등의 자료에 대한 구축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2007a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 2007b
 한국조세연구원, 『복지재정 추계모형과 전망』, 2007
 Battacharya, J., A. M. Garber, and T. E. MaCurdy., “Cause-Specific Mortality among Medicare Enrollees,” in *Inquires in the Economics of Aging* (ed.) by D. A. Wis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10) 이 경우 역시 주요 관심 변수들의 분포에 대한 가정 여부, 추정치로 제시되는 구간의 크기에 따른 유의미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정책토론투리포트

제42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 본 원고는 2008년 2월 29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42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의 주제발표(요약)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 개요

- 일 시 2008. 2. 29(금) 14:00~16: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14:00~14:10 인사말 **한국조세연구원**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4:10~15:50 주제발표 및 토론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 ▶ 사회자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 발표자 김형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 토론자 김도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경대 교수)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장지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병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최철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가나다 순)
- 15:50~16: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6:00 폐회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요약)

1. 납세협력비용의 정의

-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세금 이외의 모든 비용을 의미함.
 - 납세협력비용은 인건비, 외부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 그리고 기타의 비용 등을 포함.

2.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 356개의 법인과 301개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납세협력비용의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의 경우 납부세액의 3% 수준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를 초과함.
 - 이용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세목에서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의 경우 평균 7,816만원으로 납부세액의 1.4% 수준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216만원으로 납부세액의 6.8%임.
 - 이용한 자료에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의 경우 납부세액의 약 3% 수준으로 판단됨.
 - 이들 세목에서 납세협력비용은 상당히 역진적인 모습을 보임.
 -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평균 27~28만원 증가
 -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은 납부세액의 약 18%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평균 0.05%포인트씩 감소
 - 세무조사를 1회 받는 데에도 약 1천만원 정도의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나 납부세액은

납세협력비용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6%포인트 감소함.

- 납세협력비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내부 인건비로 법인의 경우 약 70% 수준을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약 50%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도 법인세수의 2~3% 수준으로 판단됨.
 - 이용한 자료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4,083만원으로 납부세액의 1.15% 수준임. 단, 자료에는 대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세수의 2~3% 수준으로 판단됨.
 - 법인세에서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평균 7~8만원 증가
 - 법인세에서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협력비용은 납부세액의 약 40%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약 0.05%포인트씩 감소
 - 법인세의 경우, 공제받는 세액공제 항목이 늘어나는 경우에 추가적인 서류 작업 등을 해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5천만원 정도 증가
 - 법인세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22.65%포인트 낮게 나타남.
- 세수 대비로 보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세의 절반 수준임.
 - 법인세에 비해 부가가치세에서 납부세액이나 납세협력비용 모두 더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단,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자체는 역진적이라고 하기는 힘들.
 - 법인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부가가치세에서의 그것보다 약 2배 정도 높

한국주세인포럼

은 수준을 보임.

- 부가가치세의 납세협력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50% 정도를 차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8%를 차지

3. 정책과제

□ 세법 제·개정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의무화

- 1997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실시중이나 조세분야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 규제영향분석을 실시중인 주요 OECD 회원국은 조세분야를 포함하며,
- 전체 행정부담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남.
- 세법령의 제·개정시 기업 등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행정부담인 납세협력비용의 개량적인 측정을 의무화하여 과도한 행정부담 유발 방지 필요
- 의원 입법안에 대해서도 동등한 측정 의무를 부과

□ 세제 간소화

- 조세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그 자격규정을 보다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이해도 및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 동일한 혜택을 주지만 조세지원제도의 수는 줄이는 방안 모색
- 상속·증여세의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을 단순화하여 세액계산을 쉽게 함.

□ 전자신고방식의 확대 및 고도화

-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을 확대할 필요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의 경우 건교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도록 함.

-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본서식 이외의 관련서류(예: 재무제표, 납세자의 자발적 소명 자료 등)도 첨부파일 형태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제3자 정보 및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납세자의 정보 및 자료 제출을 최소화
- 제3자 및 공공기관에 이미 제출된 정보를 활용하여 세무신고서의 각 입력란을 자동으로 미리 채우는 체계(pre-filled tax returns) 구축
- 각 납세자에 대한 세무계좌를 전산 운영하여 국세청과의 세무 관련 모든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함.
- 특히 경제활동의 큰 변화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과거 신고서의 내역을 컴퓨터로 확인·수정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세정의 성과지표로 활용

- 최근 세무행정의 기능은 세수확보보다도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 이러한 기능을 국세청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로서 납세협력비용을 활용
-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납세협력비용 수준뿐만 아니라 납세자 유형별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함.
- 이를 통해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요인을 납세자 유형별로 식별할 수 있고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사업이 가능
- 주기적인 조사 결과를 사업에 환류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기여

* 전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jpf.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 요약

세정 선진화 위한 투자 확대해야

원윤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그 동안 세무행정 분야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본 보고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를 보시는 광태원 교수의 연구 외에 몇 가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마침 신정부가 세정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또 앞으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조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즉 납세협력비용의 현황을 요약하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매출액 대비 협력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세목별로 납세협력비용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와 같은 현황을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정책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협력비용이 증가하되, 증가율은 체감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규모의 경제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 현상 이외에 왜 납세협력비용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납세협력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납세협력비용과 반대의 측면인 세무행정비용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우리나라 조세행정 60년사를 연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국세청 설립 이후 단위세액당 징세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업무를 전문화하고 효율화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미국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단위세액당 징세비용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 국세청이 그만큼 세무행정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전자신고를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으로 하고 있는데, 전산화 등에 투자가 많아지게 되면 또는 국세청의 인력이 강화되면 그만큼 조세협력비용은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양자의 관계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목별로 살펴볼 때도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의 납세협력비용이 부가가치세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든다고 나타나 있는데, 영국의 경우 양자 간에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인세의 어떤 부분들이 조세협력비용을 많이 유발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납세협력비용 차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위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질 때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조사항목을 분류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을 내부비용, 외부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결과는 총비용만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분석이 필요하다면 내부비용, 외부비용, 기타비용 각 구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규명해야 하는데, 좀 더 자세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할 때도 납세자에게 세정의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등 자세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납세자를 능동적 주체로 인식해야

세금을 납부하고 징수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설정된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조세관계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기존에는 납세자란 세무행정의 대상이 되는, 즉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객체로 보았다. 그러나 납세자는 이러한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조세관계에 의해서 설정되는 납세의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주체인 것이며, 세무행정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서비스행정이다. 납세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행정으로서의 국세행정의 중요성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서비스를 강조하는 측면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60년대 국세청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탈세도 워낙 많고 세무행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행정의 주요 초점은 탈세를 막고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는 데 두어졌다. 70년대·80년대 오면 세무행정의 효율화, 선진화, 전산화 등에 많은 중점이 두어졌는데, 9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러까지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보면 세무전문가 입장에서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세무서식들은 국세청이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 만들기보다 납세자가 과연 쉽게 작성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다시 보아야 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국세종합상담센터는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는 특히 연말정산기간이나 각종 세금들의 신고기간 등 납세자들의 필요가 높아질 때에는 퇴근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도 서비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세무행정의 주요 초점은 어떻게 하면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두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세행정의 발전방향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모색하기 위해 상당한 권한을 민간자문 위원회에 부여하여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으며 또 국세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pre-filled tax return 방식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처럼 직접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납세자 의식을 싹트게 하는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 납세자협력비용 관점에서 본다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고양식이 미리 작성되고 그것을 납세자에게 송부하여 필요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국세연구원

납세협력에 따른 편익비용 추정도 필요

유경문/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서경대 교수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한 통계적 분석은 이 논문이 처음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새 정부 이후 각종 규제완화에 관심이 많은데, 이 연구가 기업에 고무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즉 국세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매출이 증가하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규제완화를 주장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또한 납세협력비용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협력비

용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구자료에 의하면 비용은 화폐비용, 시간 비용, 심리비용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실체를 계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화폐비용만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심리적 비용도 중요한 변수이므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적·심리적 비용을 반영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 볼 때 납세협력비용은 오히려 시간비용과 심리비용이 감안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계산된 수치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1회 받는 데 평균적으로 2,283만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기업이 그만큼 부담을 갖는다는 것인데, 이를 염두에 둔다면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할 때 계속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탈세가 있다는 확실한 근거 없이 자의적인 조사는 자제해야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탈세가 많다고 평가되고 세무조사대상과 세무조사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탈세의 발생 개연성이 높고 적발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이 자료에 근거해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업에서 활용한다면, 즉 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고, 특별세무조사도 없애자고 주장한다면 공평과세를 원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법이나 납세절차 간소화 필요

오늘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크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지적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해 이러한 점을 배려하는 것이 필

요하다. 물론 납세협력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 세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법이나 납세절차를 상당히 간소하게 하고 일반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국세청에서 ‘생활세금 시리즈’나 ‘세금전략 가이드’라는 책자를 만들어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러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막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우니 더욱 홍보에 힘써야 한다. 한편 본 연구결과 발표문에서는 영국의 예를 통해 세목별 납세협력비용과 그러한 비용 감소를 위한 전략과 수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영국의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활용한다면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때 비용도 발생하지만 기업 측 입장에서 보면 편익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를 올바르게 한다면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는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재무 회계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정보가 새로이 정리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납세편익도 있다. 또한 종업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징수하여 납부할 때까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징수액을 현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납세협력에 따른 납세편익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용만 강조하고 납세협력에 따른 납세편익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세제 간소화로 납세협력비용 줄여야

이현석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납세협력비용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감세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미국과 영국은 조세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세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납세협력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조세부문은 규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고려사항으로 보아 심의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의원입법이다. 정부입법은 부처 간 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만, 의원입법은 그러한 공론화의 과정이 부족하므로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회계와 세무신고를 통합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되었는데 양자 사이의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이 달라 해소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세법 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 기업회계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고 내년부터 원하는 기업은 이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세법이 반영하지 않으면 납세협력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미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세제 간소화의 문제이다. 알기 쉽고 단순한 세제 구축은 납세협력비용의 전반적인 감소, 역진성 완화, 세수 확대와 같이 다양한 효과를 가진다. 우리

나라는 세법체계나 내용이 너무 어렵다. 예를 들어 재산의 평가 부분을 보면 개별세법마다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또 다른 법을 인용하도록 되어 있어 복잡한데, 독일은 평가에 관한 사항은 평가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두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세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서류작성 제출부담 덜어주어야

아울러 세금신고서와 같은 서류작성 및 제출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시급하다. 납세협력비용 중에 서류작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과 개인을 막론하고 9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전자신고방식을 확대하여 부속서류까지도 전자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자신고가 가능하더라도 기업들은 서면신고를 병행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관행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들이 스스로 전자신고만으로는 불안하니까 서면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자신고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자신고가 잘 접수되었다는 응답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기업은 주식, 출자지분의 변경 등에 따른 변동사항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국세청이 증권예탁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제출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기업들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도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순오류의 경우 일본처럼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무조사도 납세협력비용을 증대시키는 원인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절차나 부작용을 줄이지는 것이지 정기조사까지 면제해달라는 뜻은 아니다. 가령 세무조사 건수,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문제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성실기업으로 인정되면 조사주기를 지금보다 연장해주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납세협력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무조사 후 결과통지서는 항목별 적출금액, 추정 예상세액만 기재되는데, 구체적인 계산내역과 시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준다면 세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자행정서비스 확대로 납세비용 줄여야

장지중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정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내용을 보니까 납세협력비용이 평균 10%,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40%에 이른다고 하니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작년 기준으로 국세심판청구가 4,700건인데 그 중 1,400건, 즉 30% 가까이 인용된 것으로 통계가 나온다. 이런 것도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도 납세협력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납세와 관련하여 가장 부담되는 부분으로 30%가 신고누락시 가산세 부담이라고 답변했다. 앞으로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발표자가 제안한 정책제안에 동의하면서, 성실납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생각했던 효과가 나타나도록 계속 점검해야 한다. 또한 국세심판원에 사건이 많이 접수되지 않도록 사전에 세무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에 차이가 조금 난다.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관계 당국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차이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자행정서비스를 좀더 확산해 나가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종전에 공무원이 재산등록할 때 잔액증명, 토지대장을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신고해야 했는데, 한두달 뒤에 재산등록 관장부서가 누락된 부분과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통보하였다. 해당부서가 건교부, 금융기관 등에 조사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통보하는데, 기왕에 먼저 조사해서 나중에 개별 공무원들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자는 요구가 많았는데, 올해부터 담당부서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납세와 관련해서 전자행정을 일부 중소기업이 투명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명성은 앞으로 확보해나가기야 할 방향이므로 전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나가기야 할 것이다.

납세자 만족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

정병춘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그동안 신고납부절차 개선 등 국민들의 납세편의 제고를 세정혁신의 우선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세청을 대신해서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이번 연구발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윤희 교수께서 납세자는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자발적 성실납세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국세청 역시 비용 측정 문제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납세자 만족도·신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 외에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과 접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심리적 부담도 중요한 납세협력비용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시장거래가 투명하지 않고 세금탈루·은닉 등이 용이한 세정환경하에서는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상호관계도 같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정책방향은,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으로 초래되는 납세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세무공무원과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동시에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소득 발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양도소득자, 근로소득자 등 세법지식이 부족한 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자동 세액계산 현실적 어려움 많아

발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신고서 중복제출 문제의 경우 외형 30억원 이상 법인에 한해 신고내용 검증에 활용하기 위해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수동제출받고 있으나, 그 외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 중복제출 문제는 없다.

그리고, 자동 세액계산의 경우 각종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이 연계되어 자동으로 자료가 수집되고,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같은 경우에 복잡한 소득계산이 필요하고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한도액 계산은 일일이 수동으로 계산하여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 세액계산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전산시스템을 발전·고도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전자신고가 안되는 공익법인 신고, 소득할 주민세 동시 납부 등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각 행정기관

의 전산시스템 사이의 상호관계와 시스템 간의 조화로운 연계방안 등 국세청 외적 환경 측면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세사업자, 비사업자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산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의과정에서 발표하신 과세불복 건수와 관련하여 현재 전체 고지건수 1만건당 70건의 불복 발생비율은 국세청 전체 고지비율로 볼 때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불복비율을 6시그마 수준 즉, 100만건당 6건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의 '역진적인 현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도 살펴봐야 한다. 물론,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겠지만, 용어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납세협력비용의 경우 경제·사회의 발전 정도, 소득탈루 양태, 시장거래질서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비사업자,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징세비 또는 세원관리의 효율성과 납세협력비용의 관계, 나아가 납세자 신뢰도·만족도와 납세협력비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면 조세제도와 국세행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정책 수립 시 세무대리인 입장도 고려해야

최철웅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먼저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조세전문가인 한국세무사회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다.

납세를 하기 위한 세제운용 비용을 공공부문비용인 세정당국의 징세와 사적부문비용의 납세협력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를 내부인력 인건비용, 세무대리인 등 외부인력에 대한 수수료, 상담료 등 비용 그리고 기타비용 등으로 구분하였는바, 외부인력에 대한 비용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다.

국가 전체적으로 징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이지만 실질적으로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은 상충관계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세자 입장에서, 본인이 납세하는 것보다 조세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절세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납세협력비용에 심리적 비용이 감안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세무대리인은 전국적으로 8천명 정도 있고, 정부와 납세자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납세자들에게 세법을 이해시켜서 납세순응도를 높여 조세저항이나 조세마찰을 줄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다.

첫째, 최근에 발표된 2006년도 OECD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국세 100원을 납부하는 데, 0.79원의 징세비가 들었고, 우리나라와 징세체계가 비슷한 일본

의 경우에는 1.58원, 독일 1.80원, 프랑스 1.35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징세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80년대는 100원을 납부하는 데 1.21원, 90년대에는 0.93원, 2000년대에는 0.8원의 징세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나 징세비가 그 동안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의 전자신고 도입 등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절감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 이렇게 감소한 징세비용은 세무대리인에게 납세협력 비용이 전가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세무사업무의 공공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수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게 되면 세무대리인 등의 금전적인 보수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도 세무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져 있고, 세무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여기에다 수수료가 현재 제값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보다 낮아진다면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 납세협력비용을 언급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EITC(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는데, 과세관청이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대업무가 커지고 있고, 전자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 세무사들의 많은 시간, 인력 등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세정당국과 납세자 간 정보 확보가 정책과제

추창근/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납세협력비용은 결국은 조세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로 보인다.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는 최대요인이 그런 이유일 것이다. 어느 나라이거나 마찬가지로지만, 세제는 자체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전문 분야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고, 개인이나 사업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명목으로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을 활용하게 되고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세구조가 복잡하니 납세자가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불만이 생기게 되어서,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단순하고, 알기 쉬운 세제 및 세정을 구축해서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징세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것은 이상과 현실이 다르고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서 영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과세특례제도, 간이과세제도가 있지만, 사실 탈세의 온상이 되는 측면도 있고, 공평한 과세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영세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납세협력비용이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조세행정의 목표가 세무당국과 납세자가 서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되, 그 정보를 갖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면, 다시 말해서 납세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의 비용으로 확보하고, 납세자는 징세비용 및 세무정보를 확보하는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신고 확대 정책과제 제시 적절

이러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수단의 정보화 또는 정보기술의 도입에 주목해야 된다. 즉, 조세시스템의 정보화, 정보기술 등이 조세행정 및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 정보통신의 인프라 등이 많이 개선되어 있고, 정보접근비용이 빠르게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이런 측면에서 조세제도나 조세행정도 과거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환경과 관련하여 조세부문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발표자료에서 전자신고 확대를 정책과제로 제시한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좀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조세행정엔 납세자와 세정전문가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가지고 있으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이 불완전한 정보를 갖게 된다면, 여러 정보를 왜곡, 부정 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징세비용이 늘고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정당국보다 정보 우위에 있다면 악용되어 과포누락 등을 할 것이고, 세정당국이 특정납세자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면 탈세 등을 막지 못해서 다른 계층 간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납세자 본인이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즉, 조세제도가 극히 단순화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다. 다만, 현실과 이상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전자신고의 이용 확대 및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세정당국과 납세자가 서로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접근방법을 결합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위해 노력

김도형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

먼저 오늘 좋은 자료를 발표해준 김형준, 박명호 박사와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황성현 조세연구원장께 감사를 드린다.

세제실에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목표하에 '단순(simple), 공평(fair), 성장친화(pro-growth)'적인 세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매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시점에서 「납세협력비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다만, 이번 연구결과 중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설문 조사방식과 세목별 접근방식에서 다소 보완할 점이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설문조사방식의 경우 설문항목의 적절성, 응답자 답변의 신뢰성, 표본의 대표성에 대해 보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협력비용의 구체적인 내역과 원인 등에 대해 보다 정직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연구결과를 실제 제도개선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특성을 반영한 타깃팅(targeting) 그룹 중심으로 납세협력비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납세협력비용이 과중할 것으로 생각되는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중소기업의 납세협

력비용에 대해 별도로 연구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현재 납세협력비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어려움이 있는데, 금전적 비용(monetary costs)과 비금전적 비용(non-monetary costs), 자발적 비용(voluntary costs)과 의무적 비용(mandatory costs)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 비용에는 불복청구시 세무대리인 및 변호인 선임비용이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부실과세 방지 및 과세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사업자가 연간 세금을 몇 번 납부하는지를 고려하여 세금납부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알기 쉽고 단순한 세제 위해 지속 노력

또한, 많은 분들이 세제의 복잡성을 말씀해주셨고, 세제를 알기 쉽고, 단순화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세제를 알기 쉽고 단순화하기 위한 노력을 매년 해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작년에는 세법조문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국어학자가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을 거쳐서 세법 개정법률안을 만들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 외에, 연말정산 간소화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였고 국세청에서 이를 보완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발전시켜 전산으로 사전신고서가 작성되는 수준까지 가져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더욱 많이 노력하겠다.

그리고, 금년부터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영세한 자영업자나 법인들이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

록 하였는데, 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

또한, 세법상 과세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고,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도 협력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향후 이러한 협력의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협력의무가 미진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최소화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납세자들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납세자들이 지급조서 제출 및 전자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세액 공제제도를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토론자분들의 의견에 몇 가지 코멘트를 하자면 토론자들께서 납세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완화 노력은 행정규제 차원이 아닌 세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행정규제와 세무부담은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병역의무와 조세의 부과 및 징수의무는 행정규제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세무상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와는 별도로 세제 내에서 논의해서 세무상 부담을 줄여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세무상 부담은 단순한 부담수준을 넘어서 과세 형평 및 과세탈루 등을 위한 예방적 조치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세제를 담당하고 이를 만들어가는 기술자의 입장에서 납세자가 겪고 있는 불편과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줄여감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세제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KIPF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2008년, 저소득 근로자에게 열심히 일할수록 흥이 나고,
기쁨이 되는 사회가 시작

장재형 / 기획재정부 EITC추진기획단 팀장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에도 2008년 1월 1일부터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가 시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와 연계하여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현금(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며, 세금환급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근로장려세제”라고 불린다.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소득지원 위주의 복지정책 (Welfare)과 달리 근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Workfare)이며, 저소득 근로자가 일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영국, 호주 등 7개 선진국은 근로장려세제를 주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975년 EITC를 최초로 도입한 이래 지

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현재 저소득근로계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소득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각국의 근로장려세제 운영비교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도입시기	'08년	'75년	'99년	'83년
적용대상	연소득 1,700만원 미만 2자녀 이상 근로자	연소득 \$38,348 미만 가구	연소득 £13,910 미만 가구	연소득 AUD98,660 미만 가구
최대급여 (GNI 대비)	80만원 (4.3%)	\$ 4,536 (10.6%)	£ 3,875 (21.1%)	AUD 4,025 (10.5%)
적용가구 (전체 가구 대비)	31만가구 (1.8%)	1,960만가구 (19.6%)	180만가구 (7.3%)	10만가구 (1.3%)

주: £ 1=1,861원, AUD 1=830원

※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근로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여 빈곤감소를 유도하고, 소득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에 의해 부양되는 가정에 지원효과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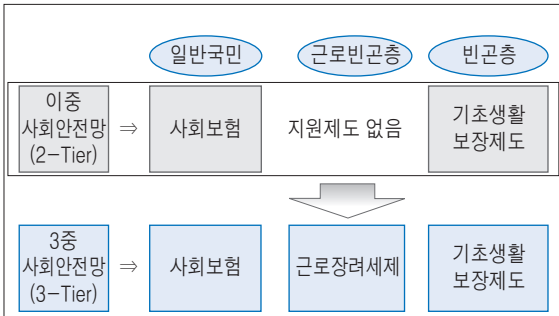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최근 외환위기 이후, 경제양극화로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여 열심히 일을 하여도 저 임금과 고용불안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형편도 못되고, 국민공층을 위해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등 현재의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근로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21세기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안전망 체계



그간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착실히 준비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파악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에 처음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추진하여 자영

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소득파악이 미흡했던 일용근로자의 경우, 2006년 한해 동안 소득자료인 지급조서가 420만 명분 제출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상당히 진척되는가 하면, 2007년부터는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2%)가 부과됨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07년에는 근로장려세제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세부 집행절차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하였고, 금년에는 위 관련 법령 일부를 재정비해 나가면서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가 국민들 상당수에게 아직 낯선 제도임을 감안,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과 일반국민으로 정책대상을 구분하고, 대상별로 홍보매체를 다각화(TV, 신문, 인쇄물, 온라인 등)하여 정책대상에 적합한 전략적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홍보효과의 극대화 추구하는 등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첫 근로장려금은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에 지급

현재는 근로장려세제 시행 초기이므로 소득파악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것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08년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며, 재산합계액이 1



억원 미만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아동요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 부양하는 근로자가구로 확대하고, 2014년에는 영세한 자영사업자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는 전체가구의 20%에 해당하는 360만가구 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ITC 단계적 확대방안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8~'10년)	2단계 ('11년~'13년)	3단계 ('14년부터)	4단계 ('30년까지)
적용대상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용가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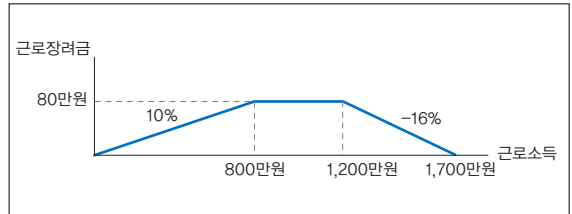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며,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합계액의 10%,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80만원, 그리고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700만원에서 부부합산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를 지급하게 된다.

최초의 근로장려금은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09년도에 처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산정 예시

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계산근거
300만원	30만원	300×10%
500만원	50만원	500×10%
800만원	80만원	80만원(최대급여)
1,000만원	80만원	"
1,200만원	80만원	"
1,400만원	48만원	(1,700만원-1,400만원)×16%
1,500만원	32만원	(1,700만원-1,500만원)×16%

근로장려세제 모형



근로장려금 신청자 편의를 위해 신청방법을 최대한 간소화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1~5.31)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만 제출하면 세무서는 행정자치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청자격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법 내용과 조세행정에 낯선 저소득 근로자들이 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조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월 이내(매년 8월말까지)에 지급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계좌 이체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구축

근로장려세제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소득과약 수준, 재정여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 자영사업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과약을 제고, 국가재정 확충 및 기존 복지제도의 효

율성 증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제도시행 추이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신청자의 편의 제공을 위
 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
 지 구축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짧은 시
 간내에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근로자의 든든한 사회안
 전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
 다. 앞으로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

한국조세연구원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조세정책 ·

中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세제개편 급물살

- 자본소득세 도입 등 검토
- 중국 제11기 전인대 개막...후진타오 2기 출범

중국 증시가 급락한 뒤 침체를 이어가자 전국인민 정치협상회의(정협)에 증권거래세 인하안이 제출되는 등 중국 자본시장 세제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협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 외에 자본소득세 도입, 개인소득세와 증권 관련 세금 연계 등 방안도 적극 논의되고 있지만 거래세 인하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지난해 활황장으로 증권거래세가 2,005억위안(25조원)이나 걸쳐 전년보다 10.2배 늘었지만 최근 상하이종합지수가 고점에 비해 30%나 떨어지며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 수입 증가는 중국 증권당국이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거래세율을 0.1%에서 0.3%로 크게 올린 게 한몫했다.

정협위원인 허창 중앙재경대 증권선물연구소장은 현재 사는 쪽과 파는 쪽 양쪽이 내는 거래세를 파는 쪽만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수·매도 양측이 내던 세금을 파는 쪽에만 물리면 장기투자에 유리해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날 것이란 얘기다.

정협위원 일부는 자본시장 체질 강화를 위해 거래세율을 내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점진적으로 거래세

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파인 민주건국회가 양회에 제출한 '자본시장 세수정책 보완' 건의에서도 거래세가 핵심 안건이다. 양회 1호 문건으로 채택된 이 건의안에는 거래세를 거래금액과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자본시장 장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는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을 삼가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쉬런 재정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거래세율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수년째 논란이 일고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과 관련해 정협에 참여한 한 위원은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장기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을 매기고 단기 매매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수를 확대하고 동시에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물과 채권매매에서 얻는 이득에 대한 과세방안과 관련해선 개인소득세를 이미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매일경제 2008-03-06]

EU, 조세회피국들과 ‘전쟁’에 박차 합의를 - 집행위, 저축세 지침 개정안 앞당겨 제안

유럽연합(EU)이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스위스 등 조세회피국들과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U 27개 회원국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수 십억유로 세금을 빼돌리는 탈세의 온상인 유럽 대륙 조세회피국을 규제하기 위한 싸움에 속도를 낼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순회 의장국인 슬로베니아가 밝혔다.

재무장관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부자들의 탈세 행각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된 EU 저축세 지침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슬로베니아 관리들이 전했다.

페어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저축세 지침의 적용 범위를 개인 계좌뿐 아니라 기금 또는 재단까지 확대하고 모든 EU 회원국에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 검사들은 자국 부자 수 백여명이 리히텐슈타인에 거액의 예금을 은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독일의 제안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스 등 대다수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일부 회원국은 지침 개정안이 EU 회원국이 아닌 조세회피국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개정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3국은 현 EU 저축세 지침에서도 다른 회원국들과 세금 정보를 교환하는 대가로 이자세를 보류할 수 있도록 유예를 받고 있으며 엄격한 은행비밀 규칙을 보호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빌헬름 몰테러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오스트리아는 조세회피국이 아닌 투명한 국가”라면서 자국의

은행비밀법규가 책임 있게 운용될 경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슬로베니아는 EU 집행위원회에 저축세 지침 개정안을 예정보다 몇 개월 앞당겨, 오는 5월께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도 당초 연말께 발표할 예정인 지침개정안을 앞당겨 제안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EU 관리들이 전했다.

하지만 EU 조세 법규 개정안은 27개 회원국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무장관들은 또 역내 은행들에 대해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인한 손실을 신속하고 철저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일보 2008-03-05]

홍콩, 대대적 감세정책 ... 소득·법인세 최대 75% 삭감

홍콩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75% 삭감하는 등 대대적인 세금 인하에 나섰다. 싱가포르와 대만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들며 한국과의 허브 경쟁력 격차를 더욱 벌리는 추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격인 존탕 홍콩 재정사장이 오는 3월 말 마감인 2007년 회계연도분에 한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동산세를 75% 삭감하겠다고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일회성 세제 인하에 드는 비용은 180억홍콩달러(약 2조 2,000억원)로 추산된다. 지난해 1,156억홍



콩달러에 달한 재정수지 흑자가 재원이다. 홍콩은 20% 이상 오른 부동산 가격 등에 힘입어 막대한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이번 일회성 세제 인하 외에 홍콩은 2008년 회계연도부터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를 기존 16%에서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법인세도 17.5%에서 16.5%로 낮출 계획이다.

홍콩의 세금 인하는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해 홍콩의 경제성장률이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 따른 선제적 경기방어 성격도 갖고 있다. 홍콩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6.3% 상승하며 4년래 최저를 기록했다.

홍콩 외에 대만과 싱가포르도 법인세 인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등 아시아에 '감세 바람'이 불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법인세를 20%에서 18%로 낮춰 시행 중이다. 대만도 현행 25%인 법인세를 7.5%포인트 대폭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홍콩은 와인과 맥주에 부과했던 80%의 주류세를 폐지하고 홍콩을 세계 고급 와인무역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2008-02-28]

일본은 현재 기업들에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부과된 일본의 배출 감축량은 기업의 자율적 참여로도 줄일 수 있지만, 앞으로 강화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의 강제적인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토록 하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2005년부터 역내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을 정해 주고, 기준치보다 많이 감축한 기업은 초과분만큼을 배출권으로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목표 수준에 미달한 기업은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야 한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EU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장의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 규제를 싫어하는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규제를 만들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2008-02-20]

8. 기업에 온실가스 삭감 의무화

일본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도를 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니혼게이지사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간이 끝나는 2013년부터 기업별로 배출량 삭감 목표를 할당하고, 과부족 부분은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있는

재정정책 ·

美 가계자산 5년 만에 감소... '양극화' 심화

- 미 전체 가계자산 57.7조달러, 작년 4분기 5년 만에 감소세
- 세금 납부 상위 400명, 전체 소득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

미국인 가정의 전체 자산이 5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계층의 소득은 갈수록 늘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현재 미국 가계의 전체 자산은 57조 7,180억달러로 5,330억달러 감소했다.

미국 가계의 자산이 감소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 1993년 이래 처음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한 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주식값 또한 급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국 가계의 자산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경기후퇴(recession) 우려도 한층 높아졌다. 미국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체 금융시장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감소세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투자처가 없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분류돼 온 정부 보증업체의 주가마저 바닥을 기고 있다. 패니매의 주가는 22.08달러로 1995년 이래 최저치를, 프레디맥의 주가는 20.07달러로 1996년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금융권과 저소득층에 투입된 자금의 규모는 대공황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4분기 연방주택대부은행(FHLLB)이 금융권에 제공한 자금은 연율 기준으로 2,100억달러에 달했다.

NHLB는 지역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 얻은 이익으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미국인 전체 가계의 자산은 줄어든 반면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05년 세금 납부 상위 400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미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5%라고 보도했다. 1995년 0.49%의 두 배를 넘어섰고, 직전년인 2004년 1.02%에 비해서도 늘어나는 등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금 납부 상위 400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의 연평균 소득은 1억 30만달러로 2004년에 비해 1년 새 2,580만달러가 증가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매일경제 2008-03-07]

中 통화정책 '긴축'으로 바꾼다

“물가 안정과 경기 과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제1차 회의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국 언론은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의 기초를 안정에서 긴축으로 바꾼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라며 “최근 급등하는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2,987명의 전국인대 대표 가운데 2,970명이 참석했다. 2,237명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대부분도 자리를 함께 했다.

▽ '물가 4.8%' 마지노선

올해 중국 정부의 최대 과제는 물가와외의 전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총리는 이날 강한 어조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지난해와 같은 4.8%로 억제 하겠다”고 선언했다.

원 총리는 정부의 생필품 생산 지원 확대와 곡물 수출 억제, 공공요금 인상 통제 등 9개 항의 물가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은행 지급준비율을 올리고 금리를 조정하며 위안화 환율 변동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혀 물가를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화 팽창을 막기 위해 올해 예산 적자는 지난해보다 600억위안(약 8조원) 줄어든 1,800억위안으로 책정됐다.

중국의 물가는 지난해 4.8%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엔 7.1%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물가가 8.5%까지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총리는 또 “경제 성장만 일방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발전 방식을 전환 하겠다”며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지난해 성장률 11.4%에서 8%로 낮춰 제시했다.

▽ 작고 효율적으로... 행정개혁 박차

원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효율성이 높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행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비를 위한 필연적 요구”라며 행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8개 부처로 돼 있는 국무원 체제는 이번 전국인대에서 ‘대부제(大部制)’ 개혁안이 통과되면 23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원 총리는 또 “교육 발전과 농촌 지원 예산을 각각 45%와 23% 늘리겠다”며 “위생사업 개혁과 취업 촉

진, 도농 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 보장 및 주택 보장 시스템 완비 등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중국 지도부 대대적 교체

이번 전국인대에서는 국가 지도부도 크게 바뀐다. 국가부주석은 시진핑(習近平)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아 차기 대권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경제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상무 부총리에는 리커창(李克強) 정치국 상무위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을 담당하는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는 유임되며 재정 금융 부총리는 왕치산(王岐山) 정치국 위원이, 산업 교통 부총리는 장더장(張德江) 정치국 위원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부총리급인 5명의 국무위원엔 류옌둥(劉延東·여·교육·체육), 다이빙궈(戴秉國·외교), 량광례(梁光烈·국방), 멩젠주(孟建柱·정법), 마카이(馬凱·행정)가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막한 전국인대는 18일, 3일 개막한 전국 정협은 14일 각각 폐막한다.

[동아일보 2008-03-06]

‘노인을 위한 나라’ 멕시코 등 5개국 의료·복지 호평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3일 대표적 ‘노인친화국’으로 멕시코, 안도라,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을 꼽았다. 이들 나라는 저렴한 생활비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 풍부한 여가활동 기회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멕시코에 사는 60살 이상 노인들은 슈퍼마켓, 약

국, 식당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전액 할인도 가능하다. 거주 비자가 있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물가가 싼 데다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가사도 우미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멕시코 전역엔 복지시설 7천여 곳이 자리잡아 20만여명이 이용 가능하다. 국외생활 안내 잡지 「인터내셔널리빙」은 지난해 ‘은퇴자들을 위한 최고의 안식처’로 멕시코를 선정했다. 하지만 인구의 절반 가량이 비공식경제권에서 일하고 있어, 앞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멕시코 노년층 수 십만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안도라는 세계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긴 곳이다. 정부는 노년층에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빈곤 문제나 범죄는 거의 없다. 관광산업이 전체 경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여가활동의 폭이 넓다. 다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프랑스나 스페인을 가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35년 동안 연금을 납부하면, 57살부터 마음 놓고 ‘은퇴’할 수 있다. 정부가 제약시장에 개입하고 있어, 노년층 주요 지출내역인 ‘약값’이 저렴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 서비스에서 이탈리아가 세계 2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06%에 이르는 공공부채나, 여성 1인당 1.3명이라는 유럽 최저의 출산율 등이 복지 혜택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다.

한 보험사가 26개국 1만 5천명을 조사한 결과, 은퇴 뒤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뽑혔다. 느긋한 삶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호평을 받았다. 은퇴한 오스트레일리아인 90%가 ‘행복하다’고 대답했다는 조사도 있다.

인구 5분의 1 이상이 노년층인 일본에선, 일과 소비·학문 영역에서 ‘시니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편의점의 상품 진열대 높이가 낮아지고, 가격표의 글자가 커지는 등 생활문화도 이들 위주로 재편되고 있

다. 보건분야 지출 가운데 80%가 정부 지출일 정도로 공적 관심도 크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는 이미 한참 불어났다. 2050년이면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3분의 1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복지 재정의 원천인 세금수입 감소를 경고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8-03-04]

일, 국가부채 838조엔 사상 최고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국가부채가 838조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일본 재무성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국민 1인당 부채액은 656만엔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록적인 부채 급증은 차입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국채 발행액이 상환액을 크게 넘어선 것이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KBS 2008-02-26]

칸 IMF총재 “세계 경제성장률 4.1% 밑돌 수도”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미국과 유럽에서 추가로 서브프라임 손실이 드러난다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상치 4.1%를 밑돌 수 있다”고 말했다.

칸 IMF 총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올해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해 배럴당 평균 100달러 이하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머징 시장이 선진국 경제와 디커플링(탈동



조화)할 것이란 의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칸 총재는 이머징 시장이 미국과 유럽 등 국가의 경기 하강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하겠지만 2008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데일리 2008-02-26]

한국조세연구원

정책 흐름

한국조세연구원



-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 예산 10%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을 적극 지원
-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도입 관련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상 조치 마무리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 「국가회계법」 시행을 위한 후속업무 본격 추진
-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출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 2008년 실천계획(Action Plan)-

* 이 자료는 2008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에서 발표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MB노믹스의 실천기초

- 비전 : 선진일류국가 건설
 -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건설
- 목표 :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 투자 활성화, 소비기반 확충, 대외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 철학과 원칙 :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

7대 원칙

- ①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보장
- ② 약자는 보호, 탈락자는 재기 지원
- ③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 우선
- ④ 수요통제보다 공급 확충 우선
- ⑤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 개선
- ⑥ 법의 지배(Rule of Law) 확립
- ⑦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 실천과제

경기회복 (투자소비기반 확충)	지속성장 (기업환경 개선)	장기성장 (신성장동력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세와 경기보완적 재정운용 • 규제개혁과 공기업 혁신 • 금리환율의 안정적 운용 • 사회기반시설 확대 • 서민생활서민경제 안정 • 경상수지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최소화 • 세율 최저화 •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노사관계 법치화 • 정부효율 10%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투자 확대 • 신성장산업 발굴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인적자본 확충

II. 우리 경제 현황과 평가

- ◇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대외 불안요인도 확대되는 상황

1. 성장 역량의 급속 둔화

-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는 모습
 - 1990년대 중반까지 6~7%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에는 4%대로 둔화

* GDP 성장률(연평균, %) : (1970~79)8.3→(1980~89)7.6→(1990~99)6.1→(2000~07)5.1→(2003~07)4.4

- 특히, 주요 선진국과 달리 투자와 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내수 기반이 취약해진 데 기인

1만~2만달러 기간중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율(%)

	미국 (78~87)	영국 (87~95)	일본 (84~97)	싱가포르 (89~93)	한국 (95~07)
성장률	3.2	2.3	3.8	8.9	4.9
고정투자(설비+건설)	3.8	3.1	5.7	12.3	2.6
민간소비 증가율	3.3	2.8	3.5	8.0	3.6
1만\$→2만\$ 소요기간	10년	9년	14년	5년	13년

-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연평균 2.6% 증가에 그쳐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이 크게 약화

* 설비투자(실질, %, 연평균): (1987~96)13.1→(1998~2007) 2.6
 설비투자(명목 금액, 조원) : (1987)16→(1996)63→(2002)71→(2007e)79

-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내부유보 확충에 주력

* 사내유보비율(% , 상위 1,000대 기업) : (1996)248→(2002) 230→(2006)619
 - '06년 상위 10대 기업 1,480%, 삼성전자 5,663%

* 상장제조업체 현금보유금액('07. 3/4 말) : 57조원

-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나 생산성 향상 유인을 저하시켜 보수적인 경영에 안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WB 기업환경지수('08) : 30위(178개국 중), 창업 110위, 고용·해고 131위, 조세 106위

* 법인세율(% , '08) : 한국 25, 대만 17.5, 홍콩 16.5, 아일랜드 12.5, OECD 평균 24.4

* 조세부담률(%) : 한국('06) 21.2, 일본('05) 17.3, 미국('05) 20.6, OECD 평균 26.9

-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주식·채권 신규 발행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재무적 건전성은 높아졌으나 기업 활력은 약화

* 주식·채권 발행실적(조원) : (2002년) 87→(2007년) 62
 (GDP 대비, %) 12.8 6.9

• 미국 주식·채권 발행실적('06년, GDP 대비, %) 33.4

* 제조업 기업부채비율(%) : (1996년) 317→(2002년)135→(2006년) 99

• 미국('06년) 131, 일본('06년) 134, 독일('04년) 254

- 민간소비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연평균 2.8% 증가에 그치면서 내수를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이 크게 둔화

* 민간소비(실질, %, 연평균) : (1987~96)8.1→(1998~2007) 2.8

- 가계소득 부진에 따른 소비여력 부족에 주로 기인
 - 지난 5년간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연평균 4.4% 증가하였으나, 실질 GNI(국민총소득)는 연평균 2.5% 증가에 그쳤고

- 세금·연금 등 국민부담액이 연평균 9.0% 증가하면서 실질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1.5% 증가에 불과했음

- 특히 자영업자 등 서민계층의 소득부진 현상이 심각

- 서민계층인 자영업자 소득은 2003~06년중 연평균 1% 증가(전체소득 연평균 5% 증가)에 그치면서 실질적으로 감소

◇ 규제완화, 가계소득여건 개선 등을 통해 투자·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 제고 필요

2. 서민생활·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 물가 상승,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 어려움이 가중

-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3%대 상승세 지속

- 특히,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 대비 식료품비·유류비 등 생활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

* 소비자물가(%) : ('07.1/4~3/4)2.3→('10)3.0→('11)3.5→('12)3.6→('08.1)3.9→('2)3.6

* 08. 3. 7일까지 국제 밀 가격 24.9%↑, 2월중 후라면 가격 인상(650원→750원, 15%↑)

* 기초생활과 직결된 보건·의료비, 광열·교통비, 식료품비 월지출금액 및 비중(%) : (전체 가계) ('06) 97만원(44.6)→('07.4/4) 102만원(45.2, 0.7%p↑)(소득2분위(월소득 247만원 이하) ('06) 64만원(46.5)→('07.4/4) 69만원(48.3, 1.8%p↑)

• 취업자 증가규모가 '05년 이후 20만명대 후반에서 정체

* 취업자 증가(만명) : ('03)△3→('04)42→('05)30→('06)29→('07)28, (08. 1)24

* 취업자 증가율(%), 연평균) : ('87~96)3.0→('98~07)1.0

■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상황도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

•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대형 마트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 중심의 전통시장 매출 감소세

* '03~'07년중 매출 증가(연평균, %, 실질) : 전통시장 △0.3, 대형마트 8.2

* 전통시장 매출(조원) : ('01) 40.1→('03) 36.0→('05) 32.7

* 대형마트 매출(조원) : ('01) 13.8→('03) 19.5→('05) 23.5

* 온라인시장 (조원) : ('01) 5.4→('03) 11.5→('05) 15.3

•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지속 축소(중소기업 수출 비중 : '03년 42.2% → '07년 32.8%)

■ 이러한 결과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에 따라 분배 상황도 나빠지는 모습

* '02~'07년중 계층별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연평균, %) : 1분위 1.5 / 평균 2.1

* Gini 계수(전국가구) : ('03)0.341→('04)0.344→('05)0.348→('06)0.351→('07)0.352

◇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 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 필요

3. 대외 불안요인 확대

■ 최근 대외여건 측면에서 하방위험요인들이 확대되는 모습

① (세계 경제) 미 서브프라임 사태 등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금년 세계 및 미국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IMF)

* 세계 경제(%) : ('07. 10)4.4→('08. 1. 29)4.1,

미국 경제(%) : ('07. 10)1.9→('08. 1. 29)1.5

- 다만, 중국 등 신흥 개도국들의 견실한 성장세는 지속 예상

② (국제 유가) 작년 4/4분기 이후 상승세가 재연되고 있어 하반기에 다소 안정되더라도 Dubai 유 기준 연평균 가격은 당초 예상(75\$ 수준)보다 높은 80\$ 이상이 될 전망

* Dubai(\$/B, 기간평균) : ('07. 3/4)70→(4/4)83→('08. 1. 1~

3. 7)89.2, ('08. 3. 7)96.3WTI(\$/B, 기간평균) : ('07. 3/4)75

→(4/4)90→('08. 1. 1~3. 7)94.6, ('08. 3. 7)105.1

③ (국제금융시장) 미 서브프라임 사태 확산 등으로 글로벌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불안한 모습

* '07말 대비 DOW 10.3%(13,265→11,894), NIKKEI 16.5% (15,308→12,783), KOSPI 12.3%(1,897→1,664) 하락('08. 3. 7)

④ (중국 인플레이 및 긴축조치) 중국의 높은 물가 상승은 작년 4/4분기 이후 우리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는 모습

* 中 소비자물가(%) : ('07)4.8, (1/4)2.7→(2/4)3.6→(3/4)6.1→(4/4)6.6→('08.1)7.1

* 우리나라 수입물가(%) : ('07.1/4)1.5→(2/4)2.8→(3/4)1.5→(4/4)2.2→('08. 1)2.2

- 중국 정부는 지난 연말 이후 물가 안정과 긴축정책을 정책방향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성장기조를 훼손할 정도의 과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07. 12 중앙경제공작회의, '08. 3 전국인민대표회의 등에서 긴축정책 천명

■ 경상수지, 외채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① (경상수지) '04년 이후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고유가 등으로 08. 1월 적자는 '07. 12월의 3배 수준(07. 12월 $\Delta 8$ 억불 \rightarrow 08.1월 $\Delta 26$ 억불)

* '08. 1~2월 무역수지 적자는 $\Delta 45.1$ 억\$이며, '07. 1~2월 대비 원유수입액이 55.4억\$ 증가

* 경상수지(억불) : (04)282 \rightarrow (05)150 \rightarrow (06)54 \rightarrow (07)60 \rightarrow (08. 1) $\Delta 26.0$

- 여행수지(억불) : (04) $\Delta 63$ \rightarrow (05) $\Delta 96$ \rightarrow (06) $\Delta 131$ \rightarrow (07) $\Delta 151$ \rightarrow (08. 1) $\Delta 14.1$

* 원/달러(기말) : (03)1,192 \rightarrow (04)1,035 \rightarrow (05) 1,012 \rightarrow (06) 930 \rightarrow (07) 936

- 고유가와 함께 수출품목 편중·수입유발적 수출 구조·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경상수지 악화의 주된 원인

* 10대 수출품목 비중(%) : (00)56.6 \rightarrow (05)60.0 \rightarrow (06)60.6 \rightarrow (07)61.1 \rightarrow (08.1)60.6

(註) 10대 품목(07년) :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류,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컴퓨터,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철강판

* 수출에 의한 수입유발계수(2003 산업연관표, 한은)가 0.353으로 상품 1,000원 수출시 353원의 상품을 수입해야 하는 구조(일본은 0.115)

* 서비스수지(억불) : (04) $\Delta 80$ \rightarrow (05) $\Delta 137$ \rightarrow (06) $\Delta 190$ \rightarrow (07) $\Delta 206$ \rightarrow (08. 1) $\Delta 21$

② (외채) '06년 이후 조선업체 선물환 매도, 국내 외 금리차로 인한 외국인 채권투자 등으로 외채 규모가 급속히 증가

* 총외채(억불) : (03)1,574 \rightarrow (04)1,723 \rightarrow (05)1,879 \rightarrow (06)2,601 \rightarrow (07)3,804(추정) 단기외채

비중(%) : (03)32.3 \rightarrow (04)32.7 \rightarrow (05)35.1 \rightarrow (06)43.7 \rightarrow (07)41.7

* 국내외 금리차(%) : (05말) $\Delta 0.50$ \rightarrow (06말) $\Delta 0.75$ \rightarrow (07말) 0.75 \rightarrow (현재)2.00

(註) 우리나라 콜금리 목표 - 미국 FRB 기준 금리

◇ 대외 균형과 안정적 성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 필요

Ⅲ.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전략

◇ 우리 경제를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

※ 현재 4%대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기초법·질서준수(1.0%p), 감세와 규제개혁(0.5%p), 정부혁신과 인프라 확충(1.0%p) 등을 통해 7%대로 제고

◇ 그러나, 최근 국내의 경제여건은 우리에게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

• 대다수 주요 전망기관이 금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4%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고, 일부 기관은 고유가 등 대외 불안요인을 감안하여 추가하향 조정 움직임

※ 국내외 주요기관의 '08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

한은('07. 12) 4.7, JP 모건('08. 2) 4.8

삼성연구('07. 12) 5.0 \rightarrow ('08. 3) 4.7,

Lehman('07. 12) 4.6 \rightarrow ('08. 2) 4.3

- 美 서브프라임 부실 등으로 세계 경제가 10년간의 호황을 마감하고 침체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등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상수지와 외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

◇ 따라서, 새 정부는 경기회복을 통해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도 경주

- (투자활성화) 중견기업 이상에 대해서는 자율과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 취약자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며 경쟁 탈락자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
- (소비기반 확충) 중산층 이상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서민계층의 소득 창출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신용회복을 지원
- (대외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 등 4대 과제를 추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예산 10% 절감 등 정부효율을 10% 제고
- (신성장동력 발굴) R&D 투자 확대를 통해 차세대 첨단산업을 발굴하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추진

1. 경기회복 : “투자·소비 등 내수 확충”

- ◇ 거시경제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조기 규제개혁·감세 등을 통해 투자·소비 등 내수기반 확충
- 감세와 경기보완적 재정 운용
 - 규제개혁과 공기업 혁신
 - 금리·환율의 안정적 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 경상수지 안정

가. 내수 확충

(1) 감세와 경기보완적 재정 운용

- (감세) 조속한 감세를 통해 투자 촉진
 - 조기 추진이 가능한 감세는 3월 내 추진 완료(임투세액공제·유류세 인하는 '08. 3. 10일 공포 예정)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7%)

를 1년 연장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p 증가시 신규 설비투자가 1.3조원 ~1.5조원(07년 설비투자의 1.8%) 증가 예상('04. 11 조세연구원)
- 유류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08. 3~12월)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3.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
 - * 유류세 인하효과 점검을 위해 4개 정유사 및 12,000여개 주유소 판매가격 전수조사 실시(3. 3~4. 15)
- 법인세율 인하 등은 6월 국회시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법인세율(현행 13%, 25%)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 * 법인세율 - (높은 세율) : (현행)25%→('09)22%→('13)20%, - (낮은 세율) : (현행)13%→('09)11%→('13)10%

▶ 낮은 세율(현행 13%)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확대(현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09년 2억원 이하)

▶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최저한세율)을 인하(현행 10% → 09년 8%)

* 상gi조치의 세수효과 : △8.6조원

* 투자 및 성장효과(조세연구원, '08. 1월) : 법인세율 1%p 인하시 국내투자 2.8% 수준 증가, 고용 4만명 증가, 외국인투자 0.4조원 증가, 명목 GDP 0.2% 증가 예상

- 기업의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현행 7% → 10%, 조특법 개정, '08. 6월 국회)

▶ “제조업 중심”인 R&D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문화산업 등 서비스업 관련 R&D까지 확대

▶ R&D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 확대

*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과학기술관련 도서구입비 추가 등

■ (세계잉여금 서민지원) 재정여유분 등을 경제활성화와 감세재원으로 활용

• 중앙정부 세계잉여금 4.8조원을 감세재원 등으로

로 활용

-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조기배정(4월 중순)하여 지자체가 1시장 1주차장, 직거래장터 개설, 중소기업전용 TV, 장학금 확대 등 서민 지원사업에 사용토록 유도
- 예산 10%를 절감하고 절감분이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감 재원을 주요 공약사업 추진, 감세 및 국가 채무 상황 등에 활용

- (공기업 투자 확대) SOC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투자를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 금년 공기업 투자 규모 : 40.3조원

(2) 규제개혁과 공기업 혁신

- (출중제 폐지 등)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조기 폐지('08. 6월)하고, 지주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 추진
 -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08. 6월)
 -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현재 200%)을 폐지하고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를 폐지('08. 6월)
- (금산분리 완화) 기업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는 방법(PEF,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제한 완화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
 -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EU 등)에서 시행중인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 역할 강화
- (공기업 혁신) 공공부문에도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분야는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 활력 제고('08.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추진)

(3) 금리·환율의 안정적 운용

- (통화정책) 전반적인 경제상황, 국내외 금리차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이 신축적으로 운영
- (외환정책) 경상수지 동향과 괴리되지 않도록 환율 안정화 노력 지속

(4) 사회기반시설 확충

- (광역경제권 개발) 광역경제권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수립 추진
 - 광역경제권 연계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를 조기 확충
 - 낙후지역도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신발전 패키지사업 추진

* 예 : 만성적 낙후지역에 초광역 협력 사업 등

- (민자사업 확대) '08년 민자사업(BTL) 집행규모를 4.2조원 수준으로 확대

* BTL 집행규모(조원) : ('06) 1.5→('07) 3.0→('08 계획) 4.2

-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고 충실한 사업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연말에 집중 고시되지 않도록 관리

나. 서민생활·서민경제 안정

(1) 서민생활 품목 물가 안정

- (음식료품 가격 안정)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를 인하('08. 4월)하고 가격상승 품목에 대해서는 쌀 라면 등 대체식품 보급 확대
- (5대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 서민생활과 밀접한 유류비·통신·통행 요금 등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서민생활 안정대책, '08. 3. 3)

- ① 유류세 10% 인하 : 3.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인하 적용 예정
- ② 통신요금 : 규제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08. 1월)
- ③ 고속도로 통행료 : 4. 20일정부토 도로공사 운영 구간 우선 시행
- ④ 전기요금 : 요금체계 조정 및 경영 합리화를 통해 일반가계·자영업자 부담 경감
- ⑤ 사교육비 : 공교육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담 경감 노력

- (유통구조 개선) 석유류·농축산물의 유통비용 축소를 통해 가격안정 도모
 - 주유소 가격정보 제공시스템을 전면 가동('08. 4월중)
 - 산지-소비자 직관장 사업(예 : 서울시-전남)을 확대하고 농협의 유통기능을 대폭 강화

- (가격담합·매점매석 감시 강화) 가격담합 등을 중점 단속하여 물가불안심리 차단
 - 1~2월중 '07년 말 대비 2% 이상 오른 83개 품목(예 : 밀가루 등)에 대해 상시 합동점검반(각 지자체 설치)에서 중점 점검
 - 지자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가격감시 체계도 기존 "일회성"에서 업체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집중적" 지도·단속시스템으로 전환
 - 고철·철근을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3.11일)하고 밀가루, 중간재 등 매점매석 우려 품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사전 실태조사 실시

-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생활 안정 지원
 - '08년 계속비 대상 SOC 사업(1,9조원)에 대해 필요시 민간자금을 활용한 시공물량 확대를 유도

함으로써 토목·건축분야의 일자리 창출 지원

- * '08년 계속비 대상 SOC 사업 : 국도·철도·항만 등 109개 사업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재정 집행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
- 정부·공기업으로 구성된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정례화(월 1회)하여 집행 애로요인 해결

(2)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창업 촉진) 창업 환경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소요기간 단축, 비용을 최소화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등을 구축('09년)
 - * 현행 창업소요기간 17일을 12일로 단축하고 창업소요비용(인당 소득대비 비중)은 17%(2,990\$)에서 1.4%(248\$)로 축소
- 우수 아이디어 및 특허개발에서 상업화 지원까지 종합창업 기능을 갖는 "one-stop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설립(중기청)

- (중소기업 활력 제고)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 기업인·전문가 및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운영('08. 상반기)

- * 중소기업 지원제도('08. 1): 중앙정부 487개, 지자체 409개
-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상시점검을 위해 중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지원단' 운영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으로 확대

* 중소기업제품(조원) : ('06)58.5→('07)61.5(잠정)→('12)100 이상

* 기술개발제품(조원) : ('06) 1.3→('07) 1.5(잠정)→('12) 3조원 (10%) 이상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남

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08. 6월, 하도급법 개정)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투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익금불산입('08. 6월, 조특법 개정)

* 현재 일반기업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30~100% 익금불산입

- 네트워크론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30일 이내 결제분 : 중소기업(0.4%→0.5%), 대기업(0.3%→0.4%)

-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사업 등 공동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 1시장 1주차장, 화장실, 공동 주문 및 배송 시스템 구축 등 전통시장 공동기반시설 확충
- 문화와 테마, 관광 등을 전통시장과 결합하여 “테마와 문화가 숨쉬는 전통시장” 육성('08년중 시범사업 추진)
- 전통시장·상업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08. 10월)
- 소상공인의 유망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센터 설치 및 전용케이블 채널 구축·운영('09년)

- (금융소외자 회복지원 등)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금융소외자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 사금융시장 및 금융소외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08. 3월)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 이자제한법 등의 최고이율(등록대부업자 연 49%, 무등록대부업자 및 사인간 거래 연 30%)을 초과하는 폭리행위에 대한 엄단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08. 2. 19. 국회 통

과)의 철저한 시행으로 호의보증의 폐해 및 보증인의 연쇄파산 방지

(3) 서민주거생활 지원

- (부동산시장 안정)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유지

- 이미 지정된 신도시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소규모 공공택지의 지속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

- 분양가 상한제·택지비 절감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는 한편,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국민임대주택 : 2012년까지 매년 10만호, 총 50만호)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분양·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및 지분형 분양주택 등의 공급물량 중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

* 공급물량 및 시행방안을 확정하여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청약대상·자격 등을 확정하여 주택공급규칙 개정('08. 6월)

- 특별공급대상이 아닌 일반 신혼가구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 융자

* 융자조건 : 연리 5.2%, 1년거치 19년상환, 5천만~1억원

- 현행 수요관리 정책의 기본틀은 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유지

- 시장 안정을 전제로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측면의 개선방안 검토

- (서민 주택대출 부담 완화) 공적주택금융 확충 등을 통해 서민의 대출 부담 완화

-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5.2%) 및 전세자금(2.0~4.5%) 대출('07말 잔액 17조원, '08 신규계획 5.0조원) 금리 동결

-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확충('08. 1월 500억원 이미 확충, 현재 자본금 4,766억원)하여 대출여력을 확대
- 영세 주택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한도를 인상하여 서민 임차권 강화
- * 현행 1,200만~1,600만원에서 최근 7년간 전세보증금 인상을(43%)을 반영

다. 경상수지 안정

(1) 경상수지 안정

- (수출지원체제 강화) 민관합동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하여 수출애로를 발굴·해소
 - 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의 대출·보험·대의 채무보증 지원 등 확대
- 고유가로 수요가 급증하는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수주를 지원
 - * 금융지원('07년→'08년, 조원) : (대출)2.9→3.6, (보험)14.4→19.8(대외채무보증) 0.2→0.5
- KOTRA와 중소기업의 협력체제 확대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및 현지 경영 지원
 - * 현재 7곳(베이징, 상하이 등)→3개소 추가 설치(마닐라 등)
-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체제 구축
 - * ODA규모(조원) : ('07) 0.7→('08) 1.0→('10) 1.2→('11) 1.4
 - ODA/GNI(%) : 0.080 0.108 0.121 0.128
- 「Plant Industry Forum 2008」 개최, 수주거점 지역(중동 등)에서 수출상담회 개최 등 수주지원 강화
- 해외 플랜트 주요 발주처 CEO, 정부 인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플랜트 업계의 역량 홍보

- (수출 주력산업 발굴)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 등을 통해 차세대 수출 주력산업 발굴
 - 미래자동차 개발, 고부가 선박 핵심기술 확보, 메모리 산업 원천기술 개발, 선도형 핵심첨유기술 분야 개척 등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 R&D 지원 확대('08년 400억원), 차세대 메모리 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 등
 -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부품·소재, 기계 등 기초산업의 경쟁력 강화
- 수입상위 부품·소재(예 : 정밀기기부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12년까지 부품소재 대일의 존도를 20% 이하로 개선('06년 25.6%)
- 수입의존도 상위 20대 생산설비(예 : 반도체 제조 장비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추진
- 일본기업의 국내유치 등 부품·소재 산업의 협력 강화
 - 한류상품을 포함한 문화·서비스 품목 및 차세대 성장동력 제품 등을 세계 일류상품으로 신규 발굴
- (해외소비 국내전환) 서비스산업의 고급화,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및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서비스수지 개선 대책 마련
 - (의료)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전환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 마련('08. 10월 의료법 개정안 제출)
 - *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 추진
 - (교육) 외국 교육기관 규제 완화(과실송금 허용 등) 및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자유화(외국인→국내법인),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요건 완화(현행 해외거주 5년→3년) 추진
 - (관광) 감세 등 정부지원과 이에 상응하는 경영개선 노력을 병행 추진하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매력 있는 볼거리 확충, 영어 FM 라디오 방송 신설, 비자제도 개선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08. 3월)

* 서울중심지 내 전통적인 복합 문화·관광공간, 현대적인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 등

* 복수시증, 무비자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중국 등 관광객 유치지원 등

- 중·저가 인증 숙박업소(베니키아, 굿스테이 등) 확충을 위해 기존시설 개보수 자금 융자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08. 4월)

• (골프장)·저렴한 골프장·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와 부담금 감면을 통해 해외골프 소비를 국내로 흡수

* 해외골프소비 추정(억달러): ('03)6.5→('04)8.6→('05)10.7→('06)11.8

- 골프장 설립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입지관련 규제 간소화 추진

- 농지출자 방식의 골프장 건설시 농지보전부담금 (㎡당 개별공시지가의 30%, 상한 5만원)을 감면

■ (소득수지) 해외투자 활성화로 배당금·이자 등 안정적인 대외 소득원을 확보하여 소득수지 흑자구조 정착

•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지분투자에 대해서도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3%) 실시('08. 1월 시행)

* '07년 현재 총투자실적 : 135.7억달러 (81.4%인 110.5억달러는 회수)(~01)52.6→(02)5.0→(03)6.5→(04)7.7→(05)11.1→(06)20.9→(07)31.9

• 사모펀드(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과 자산운용 규제완화 등 해외 M&A 규제완화('08. 1월 시행)

* 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여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자산운용 규제완화, PEF의 해외부실채권 투자 허용 등

(2) 대외위험요인 관리

■ (금융시장) 美 서브프라임 등 대외 불안요인이 국내 실물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관리

• 국내 펀드 환매요구 등에 대응하여 필요시 유동성 지원

•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자금의 일시적인 회수가 능성에 대비하여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일방적인 기대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위험관리체계 구축)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간 긴밀한 협조하에 체계적인 위험요인 관리체계 구축

• 이미 구축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의 예측력과 속도성 제고 노력도 지속

* 선행성이 높은 변수 추가, 계절적 요인의 통제, 변수별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부문별 예측모형의 현실적합성 제고

2. 지속성장 : “세계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4대 원칙(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에 따라 “세계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정부효율을 10% 제고하여 지속성장을 뒷받침

(1) 규제의 최소화

■ (규제의 최소화) 경쟁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철폐하고 규제 방식을 Negative 방식(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전환

• 외국 규제체계(美 관리예산처의 규제관리체계, 호주 일몰제 등)를 벤치마킹하여 제도적인 규제 개혁 시스템 도입

- (규제개혁 추진) 규제를 존치하는 경우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
 -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매뉴얼 발간('08. 5월)
 - 국회와 협의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자체 심사체계 마련('08. 9월)

※ 의원입법 규제심의 사례

- 미국 : 의회 내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각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특정규제에 대해 심사
- 영국 : 의회에 규제개혁위원회와 NAO(National Audit Office)을 두어 규제법안 심사 수행

- (규제 사후관리) 법령과 규정을 고치는 수준에서 벗어나 규제개혁이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 (핵심 규제의 개선) 기업의 체감효과가 큰 핵심적 규제의 중점 개선

- (수도권 규제 합리화) 광역경제권 개발과 병행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경쟁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가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내 상대적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 규제 합리화 추진
- (토지이용규제 완화) 농지 및 산지 등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가능용지(산업용지 및 택지)의 공급을 확대

- 한계농지의 소유·이용 제한 및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산지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전용허가권한 확대(현재 농지 20ha 이하, 산지 200ha 이하만 가능) 등 추진

* 한계농지 제도 : 관리지역 내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혹은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고시(전국에 약 20만 6천ha로 추정)

- 개발과정에서 보전산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 준보전산지로 전환을 허용하는 한편 분산된 준보전산지는 규모화하고, 개발대상지 주변 보전산지에 대한 이용 제한을 완화

* 보전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 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임업용 산지) 및 재해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등 공익기능(공익용 산지)을 위해 필요한 산지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 임업진흥권역 내 개발 추진시 대체산지 지정의무 완화
- 현행 용도지역·지구(총 400여개) 중 유사 지역·지구 통합합 주기를 단축(5년→2년)하는 한편, 난개발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규제를 완화

* 연접개발규제 : 토지 중 보전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관리, 농림, 녹지지역) 내에서는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개발하는 면적이 기존 개발면적과 합해 3만㎡(녹지는 1만㎡)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도록 규제

(2) 서울의 최저화

- (지속적인 감세) 법인세율 인하 등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 법인세율 인하('08. 6월 국회 추진 계획) 이후에도 경쟁국 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속적인 세율 인하 추진
- 특히, 일자리 창출,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사실상 실효세율이 지속 인하될 수 있도록 추진

※ 주요국의 최근 법인세 인하 동향('08년기준, 싱가포르는 '07년)

- (영국) 30%→28% (독일) 38.65%→29.83% (싱가포르) 20%→18%(홍콩) 17.5%→16.5% (중국) 33%→25%
- 대만도 25%인 현행세율을 '10년부터 17.5%로 인하 계획 발표

- (근본적 세계개편) 세율 인하와 병행하여 “넓은 세

원, 낮은 세율” 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 세계개편을 검토

- “단순하면서도 효율과 형평이 조화된 세제”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마련
- 조세체계의 왜곡을 시정하고 조세원리·국제적 기준에 맞는 조세체계 구축
- 복잡한 조세체계(현재 30개 세목(국세 14개)) 정비

■ (세무행정 개선)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표본 세무행정체제 강화

- 국세청의 기능·조직·인력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국세청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 상반기 중 외부컨설팅 기관에 의한 조직진단 실시, 공청회 개최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과학적 방법에 따른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

- 세무관련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도입 등 검토

* 사전답변제도 : 미국의 Private Letter Ruling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기업 등이 사전에 과세 여부를 질의하면 국세청이 구속력 있는 답변을 하는 제도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편 조사’를 활성화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병행 추진

(3)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Key Player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부문의 Key Player 육성

- 아시아 선도은행과 투자회사 육성 방안 추진

*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육성 가능성 및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내 T/F를 구성하고 세계 유수의 컨설팅 회사에 용역의뢰('08. 3월)

- 외환보유액, 연기금 등의 위탁 확대를 통해 국부펀드(KIC) 활성화

■ (금융 선진화) 금융 투자업의 칸막이 규제 철폐 등 금융규제·감독·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

* 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對GDP 비중 : 현재 20%에서 선진국 수준인 30% 이상으로 제고

- 네거티브 방식 규율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설계·취급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상품 개발능력을 제고

-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 규제만을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

* 적격투자자 헤지펀드 허용(1단계, 09년 말)→일반투자자 헤지펀드·공모형 재간접헤지펀드 허용(2단계)→PEF와 헤지펀드 통합(3단계)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을 위해 최소자본금 요건(전국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을 완화(6월중 방안 마련)하는 등 진입관련 인허가 요건을 완화

- 감독당국이 금융시장의 조인자(facilitator)로서 시장친화적·예방적인 컨설팅 위주의 수요자 중심 감독체제로 전환

-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적 현장검사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검사매뉴얼 공개 및 매뉴얼에 의한 검사 관행 확립

■ (금융허브 구축) 「금융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 수립('08. 6), 추진

- 국제적인 금융허브로서의 랜드마크인 금융클러스터의 조성, 금융선진화의 동력인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기술금융 활성화)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기술혁신

투자로 유도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기술금융시스템을 조성('08. 6월 방안 확정)

- IT, BT, 로봇 등 고위험 신성장산업 투자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R&D 투자펀드」 조성

* 신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연구소·대학·기업 등에 대해 R&D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형태로 투자하고, 제품화, 라이선싱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해 은행 대출시 정부의 정책자금을 연계지원하는 협조융자(co-finance) 도입

* 기술평가기관(기보)과 은행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출심사시 기술평가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시중은행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평가 역량 보완

(4) 노사관계 법치화

- (법과 원칙의 준수관행 확립) 법을 지키는 노사간 자율협상을 유도하되,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행위 및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

-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로 개편

* 현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현황 : 총 80개(광역 16개, 기초 64개)

-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노사안정 및 고용창출 관련사업 등에 대해 고용보험기금 지원

-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 노사분규 취약사업장('08년 367개 선정)에 대한 전담지도 강화 등 노사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기반을 구축

(5) 정부 효율 10% 제고

- (정부효율 10% 제고) 예산 절감, 재정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정부부문 효율 제고 추진

- 예산 10% 절감, 건설공사비 절약·품질 제고, 유희 국공유 재산 활용 및 수익성 제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추진

* 일본의 건설비용 감축을 위한 Action Program('94), 영국의 Rethinking Construction('98) 등을 벤치마킹

- (정부효율 10% 제고 실행계획 마련) 정부통합에 따른 각 부처 정원 초과인력을 활용하여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08. 6 말)·추진

3. 장기성장 : “신성장 동력 확충”

◇ R&D 투자 확대, 신성장 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성 제고

(1) R&D 투자확대 및 신성장산업 발굴

- (R&D 투자 확대) R&D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06년 GDP의 3.2%→'12년 5%) 하고 지원체계 효율화

* R&D 규모(억달러, 06) : 한국 286.2, 미국 3,437.5, 일본(05) 1,512.7

- 공공부문의 R&D 지원('08년 10.8조원)을 강화하고 세제·금융 등 유인체계를 개선하여 민간의 R&D를 촉진

- (개방형 R&D 추진) 선진국과의 글로벌 R&D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외국기관에 컨설팅 등 아웃소싱 지원(관계부처 T/F 구성·발족 : '08. 3월중)

- (신성장산업 발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실천전략 마련

- 환경, 신재생 에너지, 첨단 보건의료 등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08. 9월)

(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경쟁촉진)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 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영업규제 등을 정비('08년중)
- IT서비스, 물류 등 기업지원 서비스업의 시장 확대 및 경쟁촉진을 위해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을 추진
- IPTV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IPTV를 허가('08. 하반기)하는 등 신규 융합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 (부담금 완화) 산업단지과 관광단지 간 부담금 격차 완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적 부담체계를 개선
 - * 농지보전부담금 : 산업단지는 전액 감면, 관광단지는 50% 감면 등
- (R&D·IT활용 촉진)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방법론 개발·보급 등 서비스분야에 맞는 R&D지원을 확대
 - * 서비스 R&D사업(05년 전체 R&D투자의 1%, 801억원) 지원 강화('12년 2%)
- 조달·생산·유통·물류 등에서 RFID/USN 확산을 추진하고, 신규 IT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업의 IT 활용도 제고
 - * 전시·박람회 산업용 e-CRM 구축, 자동주문(u-Bill) 시스템 등
-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 디자인·S/W·전시 등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유망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 중소기업·디자인 도우미 사업·시행, 공공 S/W 사업의 하도급 관리 강화 등 건전한 S/W 시장환경 조성

- 전시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전시산업발전법 제정, 하위규정 제정중)

(3) 해외자원개발

- (신재생에너지 비중 제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제고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제고('06년 2.2%→'30년 9%)하고, 원자력 발전의 적정비중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 * 원자력 발전비중 비교(%) : 한국 39, 독일 31, 프랑스 77
- (해외자원 개발) 다각적인 자원외교 추진
 - 다각적인 자원외교를 통해 에너지와 곡물 등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
 -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된 세제(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확대)·예산(예특회계)·금융(수은 자원개발금융) 지원을 확대

(4) 인적자본 확충

- (잠재인력의 경제활동 촉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유도
 -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연장장려금 시행('08년) 등을 통해 고령자의 근로유인 제고
 - *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방안을 마련('08. 6월)하고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외국인력 활용 확대) 비자·영주권 제도개선 등 전문외국인력 유치전략 마련('08. 6월)
 - 단순기능 외국인력은 노동시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도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08. 6월)

- (대학 경쟁력 강화) 인력 양성의 핵심인 대학 경쟁력을 강화
 - 대학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시장개방, 산학협력 등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마련('08. 10월)
 -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한 대학교육 발전유도('08. 하반기 금융·건설·자동차·조선·반도체·철강분야 사업 실시)
- (노동시장 선진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
 - 고용보호법제 개선, 비정규직법 보완 등을 통해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고용경직성을 완화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연간 인건비 증가액에 대해 세액공제 추진('08. 6월) ('09년 말까지 연간 인건비 증가액의 5%(1인당 30만원))

(5)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 (국경 간 자본이동) 자본의 보다 원활한 이동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외환관련 규제 조기 완화
 - 외환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 신고절차 제한 완화(재정부·한은 신고 → 은행 신고 또는 면제)
- (FTA 확대) FTA 확대 등 적극적인 대외 개방 추진
 - 한·미 FTA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비준을 추진
 - 현재 협상중인 EU, 인도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조기 타결 노력을 가속화하고 중국·일본과의 FTA도 신중히 검토
 - GCC와의 FTA는 자원협력, 시장확보 차원에서 우선 추진하고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도 추진 검토

- (외국인 투자) 수요자 중심의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3개년 계획('08~'10)」을 마련·시행
 - 외국인 투자대상 제한 업종(방송업 등 29종)에 대한 추가 개방과 기업경영 및 학교·세금 등 외국인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전략적 타깃팅(Targeting) 등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 기여형 외국인 투자 중점 유치
- (경제협력)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호혜적 남북경제공동체 전략을 구체화하고,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 북핵 폐기시의 남북협력을 위한 400억달러 조성 방안 등 「비핵·개방·3000 구상」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08. 12월)

IV. 2008년 실천계획(Acti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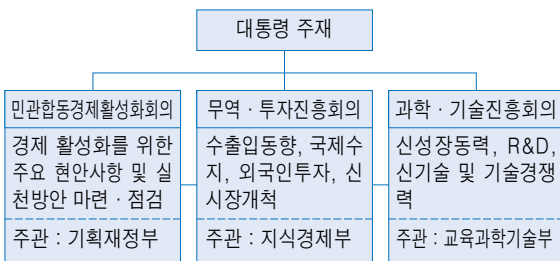
- 이상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새 정부 임기 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 기대
- 다만, 금년의 경우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이므로 올해는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음

2008년 우리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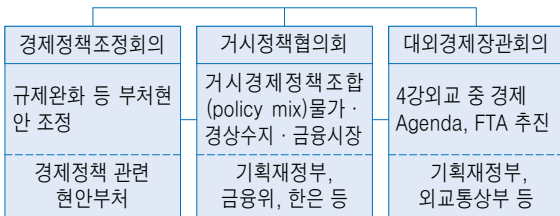
	2007년	2008년 ^e
■ 성장률	4.9%	6% 내외
■ 취업자 증가	28만명	35만명 내외
■ 소비자 물가	2.5%	3.3% 내외
■ 경상 수지	59억달러	△70억달러 내외

* 금년중 유가상승(07년 68\$→08년 80\$ 전제)에 따른 경상수지 약화규모 : △65억달러

- 각 부처가 보다 세부적인 실천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고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재정에서 뒷받침
- 실천체계를 구축하여 과제별로 실천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상황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
 -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국가적 과제 정책 방향 정립



- 관계부처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대내외 현안 대응책 마련



한국경제연구원

예산 10%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을 적극 지원

* 이 자료는 2008년 3월 11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에서 발표한 「예산 10%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을 적극 지원」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08년 및 '09년 예산을 대상으로 정부예산의 10% 수준 절감을 위해 노력
 - '08년은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 우선절감과 집행과정 효율화를 통해 2.0조원 수준 절감 목표
 - '09년은 숏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18.0조원 수준 절감 목표
- 절감된 재원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관련 사업추진에 활용
 - 추가 국민부담 없이 감세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 소요에 충당

1. 예산절감 추진의 목적

-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조기에 구현
- 민간경영기법 도입, 원가의식 제고, 인센티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창의와 혁신을 촉발
- 공공부문 전반의 군살을 제거하여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
- 감세와 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

2. 예산절감의 기본방향 및 10대 원칙

- 기존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유지하면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프로세스 개선 등 집행 효율화를 통해 투입비용을 축소
- 예산절감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인 절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에 중점
 - ⇒ 각 부처가 절감계획 수립시 예산절감 10대 원칙을 준수
 - ※ 예산절감 10대 원칙
 - ① 제도개선 우선, ② 정부역할 명확화, ③ 민간의 효율성 활용, ④ 자원봉사 활성화, ⑤ 타당성 검증 강화, ⑥ 최소비용 원칙, ⑦ 유사·중복 금지, ⑧ 우선순위 조정, ⑨ 성과평가 강화, ⑩ 정부의 솔선수범

3. 2008년도 예산절감 실천방안

- '08년 예산이 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점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속적으로 추진
-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거나 경제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인건비, 경상비 등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우선 절감
 - ① 인건비 : 조직 개편에 따른 잉여인력(3,4천명) 활용을 통한 신규증원 최소화
 - ② 경상비 : 10% 축소(예년의 2배 수준)

- ③ 사업비 : 조직개편으로 유사·중복이 발생하는 사업 및 집행 효율화 위주 절감 추진

4. 2009년도 예산절감 실천방안

- 손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 새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맞추어 기존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중단
 - ① 인건비 : '08년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09년에도 지속 유지
 - ② 경상비 : '08년 예산 대비 10% 축소
 - ③ 사업비 : 재량적 지출 이외에 의무적 지출도 제도개선을 통해 절감

【제도개선 추진(예시)】

- (복지분야) 부정수급자 관리강화, 중복수혜 방지 등
- (SOC분야) 입찰제도 개선, 원가관리 강화 등
- (R&D분야) 유사·중복사업 배제, 연구개발 성과 관리 강화 등
- (농림수산분야)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
- ④ 세입 확충 및 집행단계에서 절감
 - 민간경영기법 활용,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정 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통해 추가 세입 확보
 - 예산 집행과정에서 현장여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절감 추진

5. 모든 공무원이 자발적·창의적으로 예산절감에 적극 나서도록 예산절감 인센티브를 강화

- ① 절약된 예산을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
- ② 정부업무평가 중 예산절감 실적 등 재정부문 평가 항목 비중을 확대

- ③ 예산성과금 확대,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 시 주요 평가항목에 예산절감을 신규 반영하는 등 개인 인센티브 강화

6. 금번 결정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 「부처별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 31일까지 「2008년도 예산절감 종합방안」을 확정할 계획
- 2009년도 예산절감 방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

한국조세연구원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도입 관련

* 이 자료는 2008년 3월 3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서 발표한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도입 관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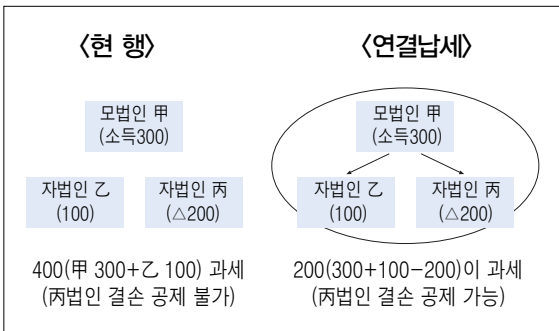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 현행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임

②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함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

-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행시기는 추가 검토중에 있음

※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경우 '07년 도입, '09년 시행

한국조세연구원



-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등 21개국*에서 시행중
 - * 미국(1917 도입), 프랑스(66), 영국(67), 독일(67), 네덜란드(69), 일본(2002)
 - **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등 9개국 미시행
- 도입 효과
 - ① 기업구조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 부여
 - 사업부분을 분할하더라도 분할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와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상 조치 마무리

* 이 자료는 2008년 3월 7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에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상 조치 마무리」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3. 7일자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상 필요한 조치가 마무리되었음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7개 부처에 대해 예산이체가 필요하였는바
 - 이 중 13개 부처는 2. 29일, 2개 부처는 3. 3일에 이체 완료되었으며
 - 금일(3.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예산이체 조치가 마무리됨으로써
 - 4천여개 사업, 이체대상 135.2조원의 예산집행이 새로운 조직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되었음
- ※ 예산이체 :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된 부처의 예산으로 재배분하는 작업으로, 예산이 이체된 이후에 신설 기관에서는 예산집행이 가능하게 됨
- 금번 예산이체는 정부수립 이후 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이체로서
 - 소요된 인력이 예산·회계직 관련 공무원 4만여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며
 - 약 40여일이 소요되고,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예산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음

- 금번 예산이체의 특징을 보면,
 -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단위인 부처소관이 60개에서 50개로 10개 소관이 축소되었으며
 - 예산소관 축소에 따라 전반적으로 부처당 예산규모가 증가하여 대부처·대국체계로 전환하는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취지가 예산규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예 시)

(단위 : 억원)

이체 전 '08예산규모		개편 후 '08예산규모	
건설교통부	287,723	국토해양부	328,746
해양수산부	51,355		
행정자치부	319,353	행정안전부	323,408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40,052 70,346	기획재정부	107,809

-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우리부가 개발하여 운영개시된 예산·집행·결산을 담당하는 전산프로그램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방대한 규모의 예산이체 작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지원함으로써, 동 시스템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
- 이에 따라 동 시스템 운영에 경쟁력을 더욱 확보하게 되었음

- 그간의 진행 현황은,
 - 1월 중순,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 내에 「예산이체 사전준비 T/F」를 구성
 - 2월 초순, 재정기획관 회의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 이체방안을 확정
 - 새정부 출범 및 정부조직법 시행 이전에 제반 준비작업을 완료
 - 2. 29일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예산이체 실시
- 향후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이체에 따른 각 부처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예산이체 대상 및 규모

(단위 : 억원)

부처명 (이체받는 소관)	이체액	내역(이체주는 소관)
계	1,352,117	
대통령실	1,348	경호실(750), 비서실(572), NSC(14), 국민경제(12)
국무총리실	80	재경부(72), 행자부(8)
기획재정부	88,858	과기부(30), 총리실(25), 국민경제(4), 기획처(53,106), 재경부(35,678), 행자부(15)
교육과학기술부	300,949	과기부(17,259), 교육부(283,087), 산자부(603)
통일부	1	NSC(1)
행정안전부	274,950	NSC(7), 총리실(73), 국민경제(3), 정통부(2,489), 인사위(1,065), 행자부(270,953)
문화체육관광부	16,244	홍보처(537), 문광부(15,471), 정통부(236)
농림수산식품부	130,545	농림부(120,968), 해수부(9,577)
지식경제부	111,099	과기부(4,057), 국민경제(1), 산자부(53,364), 재경부(1,320), 정통부(52,358)
보건복지가족부	126,199	청소년위(737), 기획처(36), 복지부(113,310), 여가부(12,116)
여성부	457	여가부(457)
국토해양부	297,531	건교부(263,513), 국민경제(1), 해수부(33,944), 행자부(73)
방송통신위원회	2,370	방송위(129), 정통부(2,241)
공정거래위원회	6	재경부(6)
금융위원회	1,037	총리실(107), 재경부(930)
국민권익위원회	484	청렴위(218), 고충위(231), 법제처(36)
통계청	319	농림부(282), 해수부(37)

개편 전 · 개편 후 주요 부처별 '08예산 규모

(단위 : 억원)

개 편 전		개 편 후	
소 관 명	'08예산	소 관 명	'08예산
재정경제부	40,052	기획재정부	107,809
교육인적자원부	358,974	교육과학기술부	380,034
행정자치부	319,353	행정안전부	323,408
문화관광부	16,766	문화체육관광부	17,694
농림부	133,573	농림수산식품부	143,589
산업자원부	61,356	지식경제부	127,326
보건복지부	144,377	보건복지가족부	160,115
여성가족부	15,565	여성부	539
건설교통부	287,723	국토해양부	328,746

한국조세연구원

개편 전 · 개편 후 예산편성 소관 비교

개 편 전

연번	소관명	연번	소관명
1	대통령비서실	31	기획예산처
2	대통령경호실	32	법제처
3	국회	33	국가보훈처
4	대법원	34	중앙인사위원회
5	국가안전보장회의	35	공정거래위원회
6	국가정보원	36	국정홍보처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7	국세청
8	국민경제자문회의	38	관세청
9	감사원	39	조달청
10	헌법재판소	40	통계청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	병무청
12	국무총리실	42	경찰청
13	재정경제부	43	소방방재청
14	교육인적자원부	44	기상청
15	통일부	45	문화재청
16	외교통상부	46	농촌진흥청
17	법무부	47	산림청
18	국방부	48	중소기업청
19	행정자치부	49	특허청
20	과학기술부	50	식품의약품안전청
21	문화관광부	51	해양경찰청
22	농림부	52	방송위원회
23	산업자원부	53	국가인권위원회
24	정보통신부	54	국가청렴위원회
25	보건복지부	55	국가청소년위원회
26	환경부	5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7	노동부	5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8	여성가족부	5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9	건설교통부	5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0	해양수산부	60	방위사업청

개 편 후

연번	소관명	연번	소관명
1	대통령실	31	공정거래위원회
2	국회	32	금융위원회
3	대법원	33	국민권익위원회
4	헌법재판소	34	국세청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5	관세청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6	조달청
7	감사원	37	통계청
8	국가정보원	38	병무청
9	국무총리실	39	방위사업청
10	기획재정부	40	경찰청
11	교육과학기술부	41	소방방재청
12	외교통상부	42	문화재청
13	통일부	43	농촌진흥청
14	법무부	44	산림청
15	국방부	45	중소기업청
16	행정안전부	46	특허청
17	문화체육관광부	47	식품의약품안전청
18	농림수산식품부	48	기상청
19	지식경제부	49	해양경찰청
20	보건복지가족부	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1	환경부		
22	노동부		
23	여성부		
24	국토해양부		
25	법제처		
26	국가보훈처		
27	국가인권위원회		
2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9	방송통신위원회		
30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 이 자료는 200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소비세제과에서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08. 1. 1~'08. 12. 31) 연장하고,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서민·중산층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할 계획
- 이르면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휘발유·경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LPG 부탄) 개정안을 의결하여 시행할 예정임
- 이번 조치로 인한 조세지원규모는 총 3.3조원임(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2.0조원, 유류세 인하 1.3조원)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 아울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투자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설비투자시 세

액공제를 해주는 제도

- 세액공제액 : 설비투자액 × 7%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큰 제도로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해 왔음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으로 기업의 법인세율이 약 1.7%p, 기업의 세부담은 약 2조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 지원금액(억원) : ('05) 25,439 ('06) 20,681 ('07p) 18,238

- 아울러, 기업의 투자심리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2.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 ①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하여
- ② '08. 3~12월간 한시적으로
- ③ 유류세(휘발유·경유 : 교통에너지환경세+주형세+교육세, LPG 부탄 : 개별소비세+교육세)가 현행세율 대비 10% 수준 인하되도록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것임

* 경기조절·가격안정·수급조정 등을 위하여 법정세율의 30% 이내에서 가감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

- 금번 유류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 82원/ℓ, 경유 58

원/ℓ, LPG부탄 17원/ℓ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

- ※ 가격인하 효과(원/ℓ, 서울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 휘발유 : ('08. 2월 3주 전국평균 기준) 1,650→1,568(5.0% ↓)
(서울평균 기준) 1,710→1,628(4.8% ↓)
 - 경유 : ('08. 2월 3주 전국평균 기준) 1,452→1,394(4.0% ↓)
(서울평균 기준) 1,513→1,455(3.8% ↓)
 - LPG부탄 : ('08. 2월 3주 전국평균 기준) 952→935(1.8% ↓)
(서울평균 기준) 965→948(1.8% ↓)

<유종별 세율 변동 내역>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부탄	
	현행	개정 후	현행	개정 후	현행	개정 후
단위	원/ℓ		원/ℓ		원/kg	
현행 유류세	745	670	528	476	316	290
(교통에너지환경세)	(505)	(472)	(358)	(335)	-	-
(개별소비세)	-	-	-	-	(275)	(252)*
(주행세)						
* 교통세의 32.5% →27%	(164)	(127)	(116)	(91)	-	-
(교육세)						
* 교통세 또는 개별 소비세의 15%	(76)	(71)	(54)	(50)	(41)	(38)
유류세 인하폭	△75 (10%)		△52 (10%)		△26 (8%)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 (부가세 인하효과 포함)	△82원/ℓ		△58원/ℓ		29원/kg (17원/ℓ)	

- 금번 탄력세율 인하로 인한 지원 규모는 약 1.3조 원 수준

한국조세연구원

「국가회계법」 시행을 위한 후속업무 본격 추진

* 이 자료는 2008년 2월 25일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에서 발표한 「국가회계법」 시행을 위한 후속업무 본격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가회계법이 07. 10. 17일 제정· 공포되어 09. 1. 1일부터 국가회계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전면 도입
-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 /공동위원장: 재경부차관, 김경호위원)를 07. 10월 설치하고 그 허부기관으로서 '실무추진반' 을 운영
 -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조기 정착 및 새로운 국가회계제도 정립을 위한 후속업무를 수행하여 그간 준비해 온 재정개혁 과제를 마무리
- * 제1차 실무위원회(07. 10. 24) 및 제2차 실무위원회(08. 2. 19)를 개최하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세부사업추진계획서 등 승인
-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 운영
 - '삼일· 삼정· 율촌컨소시엄' 과 08. 2. 25. 용역계약 체결하여 '실무위원회' 의 후속업무를 지원토록 하여
 - 국가회계법(복식부기· 발생주의 도입 등)이 09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

국가회계법 주요 내용 및 후속업무

가. 제정 목적

- 국가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재정관리 기반을 구축
- 국가 전체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 생산· 제공
- 원가정보 산출로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체계 구축 기반 마련

나. 주요 내용

- 재정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전면 도입
- 재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국가회계처리 준거가 될 '국가회계기준' 의 제정근거 마련
- 후속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 및 '실무추진반' 설치근거 마련

다. 후속업무 주요 내용

- 재정· 회계 관련 법제도 점검· 보완 등(금년 상반기)
- 프로그램 예산제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과 관련한 법제도 점검· 보완
- 국가회계업무 위탁기관 설립방안
- 자산· 부채 실사방안 마련, 실사 및 개시재무제

- 표 작성 등
- 정보화시스템 산출물 점검 및 유관기관 교육(하반기)
 - 결산보고서, 개시재무제표 등 정보화시스템 산출물 검증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 모색

한국조세연구원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이 자료는 2008년 2월 21일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08. 2. 21(목)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안상수의원 입법안 등 5건의 의원입법안을 의결하였음
- 동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08. 2. 26 예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1.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 설치(국세기본법)

현행	개정안
□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의 국세 심판원	□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 ○ 심판업무 독립성 규정 명시

개정이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심판처리 기구 단일화

2.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소득세법)

현행	개정안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제율 : 연간 3% *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 한도 : 15년 이상 보유시 45%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공제율 : 연간 4% *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 한도 : 20년 이상 보유시 80%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택거래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택시용 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현행	개정안
<신설>	□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08. 5~'10. 4(2년간) 기간중 한시적으로 면제 ○ 택시업계 구조조정과 병행 추진

개정이유 택시운송업종사자 지원 및 택시요금 인상 억제

적용시기 '08. 5. 1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

4. 경차 소비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조세특례제한법)

현행	개정안
<신설>	□ '08. 5~'09. 12월간 경차 소유자에 대해 경차 소비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환급 대상> ○ "경형승용·승합차"(1,000cc 미만) 소유자 ○ 동일세대 내 승용·승합차량 합계가 1대인 자 ○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제외 <환급 금액> ○ (휘발유·경유차) 300원/ℓ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차) 개별소비세 전액(161원/ℓ) ※ 연간 환급액 한도는 10만원으로 대통령령에서 별도규정

개정이유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08. 5. 1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

5. LPG프로판 개별소비세 법정세율 50% 인하(개별소비세법)

현행	개정안
□ LPG 프로판 개별소비세 ○ 법정세율 : 40원/kg	□ 법정세율 50% 인하 ○ 40원/kg→20원/kg

개정이유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한국조세연구원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출범

* 이 자료는 2008년 2월 29일 조세심판원에서 발표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출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08. 2. 29.(금) 국세기본법 등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세(관세 포함)와 지방세에 대한 조세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공식 출범하였다.
 -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에서 출범 직전 국세심판원 직원은 자동적으로 조세심판원 직원으로 이체 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 과거 국세 심판청구는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이 수행하고, 지방세 심사청구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담당함으로써 조세불복절차가 이원화되었으나,
 - 양 기관을 통합한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이 신설되면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최종적인 행정심이 일원화되어 납세자가 두 기관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 그동안 국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였던 국세 심판청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하였던 지방세 심사청구는 앞으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 * 기타 조세불복절차(이의신청, 시·도지사에 대한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는 종전 절차와 동일함
- 한편, 이미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한 사건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기한 지방세 심사청구사건으로서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승계하여 처리하도록 관련 개정법률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었다.

- 따라서, 국세심판원장이나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미 제기한 국세 심판청구 또는 지방세 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자료 제출 등을 원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에 제출하면 된다.

- 조세심판원 청사는 그동안 국세심판원이 사용하던 건물(캠코 양재타워 6·7층)에 계속 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도 종전 국세심판원 홈페이지 주소와 동일하며,
 - 추후 변동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위치·연락처

-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1 캠코양재타워 6·7층
- * 대표전화번호 : 561-1225
-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ntt.go.kr/>

- 현판식을 포함한 조세심판원 출범 공식 기념행사는 3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설립 및 기대효과

■ 설립 개요

- 국세 심판청구는 재경부 국세심판원이, 지방세 심사청구는 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처리함에 따라
- 권리구제절차가 번잡하고 정부의 행정력 낭비 문제 제기
- 재경부 국세심판원과 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조세심판원』 신설
- 국세 심판기능과 행자부 지방세 심사기능을 일원화
-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국세기본법 §67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 조세불복사건의 조사·심리·결정을 위해 6개 심판부(국세 5, 지방세 1)와 12개 조사관실 등으로 구성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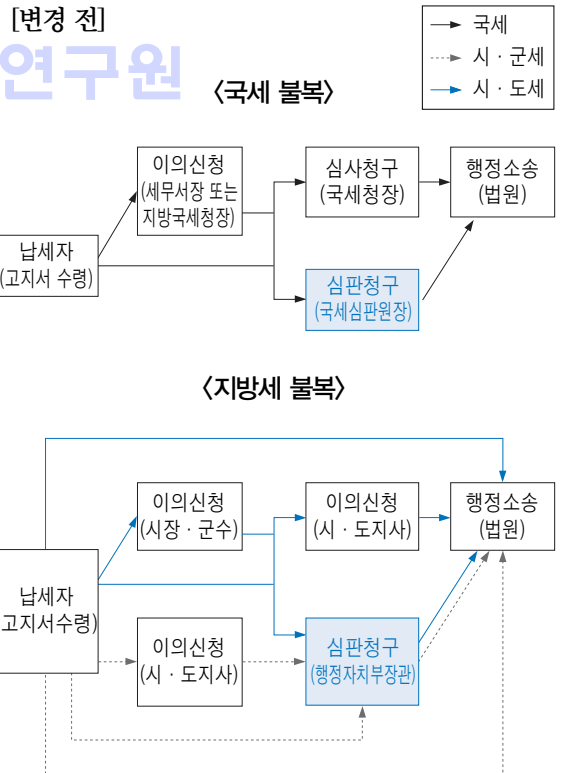
- 제3자적 재결기관인 조세심판원 설립에 따라 심판결정의 독립성·공정성이 제고되어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합·일원화하여 권리구제 행정의 효율성 증대

조세심판원 연혁

- '74. 12월 국세기본법 제정시 내국세에 관한 최종심의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도록 국세심판소를 설립하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시켜 재무부 소속하에 둠
- '75. 4월 국세심판소(초대소장: 황하주) 개소
- '76. 5월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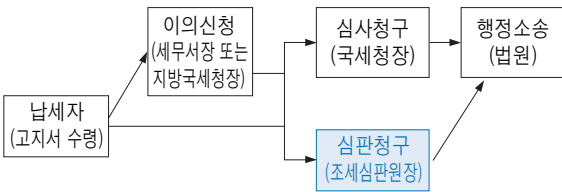
- '78. 12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심판소에서 관세 심판청구도 관장
- '94. 12월 직제변경으로 재무부 장관 소속 국세심판소에서 재정경제원 소속 국세심판소로 변경
- '98. 2월 재정경제원 장관 소속 국세심판소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으로 직제 변경
- '00. 1월 “국세심판소”를 “국세심판원”으로 명칭 변경
- '08.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세심판원과 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출범

달라진 조세불복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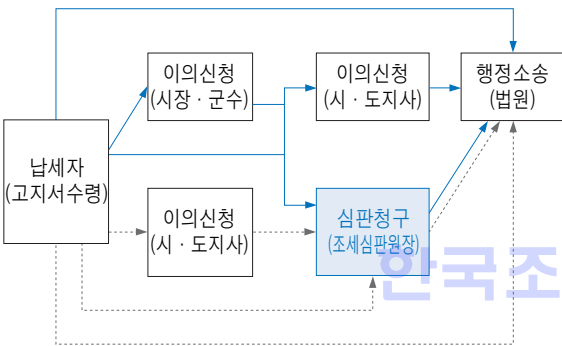


[변경 후]

〈국세 불복〉



〈지방세 불복〉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통계

한국조사연구원



- 국세·지방세 비중 추이
- 내국세 세목별 구성 추이

0%

1. 국세·지방세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조세 계		국세 계		지방세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965	703	100.0	591	84.1	112	15.9
1966	1,126	100.0	966	85.8	159	14.2
1967	1,530	100.0	1,392	91.0	138	9.0
1968	2,300	100.0	2,107	91.6	193	8.4
1969	3,137	100.0	2,871	91.5	266	8.5
1970	3,981	100.0	3,648	91.7	332	8.3
1971	4,929	100.0	4,531	91.9	398	8.1
1972	5,229	100.0	4,763	91.1	466	8.9
1973	6,526	100.0	5,785	88.6	741	11.4
1974	10,217	100.0	9,137	89.4	1,080	10.6
1975	15,498	100.0	13,910	89.8	1,588	10.2
1976	23,133	100.0	20,927	90.5	2,206	9.5
1977	29,593	100.0	26,227	88.6	3,366	11.4
1978	40,955	100.0	36,523	89.2	4,433	10.8
1979	53,607	100.0	47,617	88.8	5,990	11.2
1980	65,754	100.0	58,077	88.3	7,677	11.7
1981	81,724	100.0	72,579	88.8	9,144	11.2
1982	95,156	100.0	83,964	88.2	11,192	11.8
1983	114,479	100.0	100,507	87.8	13,972	12.2
1984	124,082	100.0	108,997	87.8	15,085	12.2
1985	135,314	100.0	118,764	87.8	16,549	12.2
1986	154,160	100.0	136,063	88.3	18,097	11.7
1987	185,361	100.0	163,437	88.2	21,924	11.8
1988	225,842	100.0	194,842	86.3	31,000	13.7
1989	261,949	100.0	212,341	81.1	49,608	18.9
1990	332,148	100.0	268,474	80.8	63,674	19.2
1991	383,550	100.0	303,198	79.1	80,352	20.9
1992	446,805	100.0	352,184	78.8	94,621	21.2

1. 국세·지방세 비중 추이 (계속)

(단위: 억원, %)

연도	조세 계		국세 계		지방세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993	502,867	100.0	392,606	78.1	110,261	21.9
1994	604,928	100.0	472,617	78.1	132,311	21.9
1995	720,905	100.0	567,745	78.8	153,160	21.2
1996	823,549	100.0	649,602	78.9	173,947	21.1
1997	883,334	100.0	699,277	79.2	184,057	20.8
1998	849,474	100.0	677,977	79.8	171,497	20.2
1999	942,442	100.0	756,580	80.3	185,862	19.7
2000	1,135,353	100.0	929,347	81.9	206,006	18.1
2001	1,224,577	100.0	957,928	78.2	266,649	21.8
2002	1,354,935	100.0	1,039,678	76.7	315,257	23.3
2003	1,477,969	100.0	1,146,640	77.6	331,329	22.4
2004	1,519,974	100.0	1,177,957	77.5	342,017	22.5
2005	1,634,431	100.0	1,274,657	78.0	359,774	22.0
2006	1,793,374	100.0	1,380,443	77.0	412,931	23.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2. 내국세 세목별 구성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1966		1967		1968		1969		1970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70,011	100.0	103,828	100.0	156,407	100.0	218,099	100.0	283,799	100.0
직접세 계	33,801	48.3	51,099	49.2	77,702	49.7	110,423	50.6	138,605	48.8
소득세	20,305	29.0	30,950	29.8	47,600	30.4	69,609	31.9	84,452	29.8
신고분	-	-	-	-	-	-	-	-	-	-
원천분	-	-	-	-	-	-	-	-	-	-
법인세	10,882	15.5	15,948	15.4	24,582	15.7	33,122	15.2	42,351	14.9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	-
상속세	407	0.6	503	0.5	681	0.4	833	0.4	1,501	0.5
상속	77	0.1	175	0.2	263	0.2	370	0.2	870	0.3
증여	330	0.5	328	0.3	417	0.3	463	0.2	631	0.2
자산재평가세	334	0.5	724	0.7	800	0.5	870	0.4	716	0.3
부당이득세	-	-	-	-	-	-	-	-	-	-
등록세	1,873	2.7	2,974	2.9	3,995	2.6	5,705	2.6	7,153	2.5
부동산투기억제세	-	0.0	-	-	44	0.0	284	0.1	2,432	0.9
간접세 계	33,671	48.1	49,190	47.4	75,239	48.1	102,932	47.2	141,558	49.9
부가가치세	-	-	-	-	-	-	-	-	-	-
특별소비세	-	-	-	-	-	-	-	-	-	-
주세	6,345	9.1	8,105	7.8	11,147	7.1	16,069	7.4	21,741	7.7
전화세	-	-	-	-	-	-	-	-	-	-
증권거래세	21	0.0	46	0.0	33	0.0	76	0.0	80	0.0
영업세	7,282	10.4	11,550	11.1	17,500	11.2	23,031	10.6	31,022	10.9
통행세	2,758	3.9	4,907	4.7	6,666	4.3	9,805	4.5	13,402	4.7
물품세	10,346	14.8	15,372	14.8	22,223	14.2	30,658	14.1	31,692	11.2
직물류세	-	-	-	-	-	-	-	-	10,689	3.8
석유류세	3,656	5.2	4,631	4.5	11,366	7.3	14,787	6.8	21,262	7.5
전기가스세	2,206	3.2	2,936	2.8	4,068	2.6	5,315	2.4	7,050	2.5
입장세	1,056	1.5	1,643	1.6	2,236	1.4	3,191	1.5	4,620	1.6
유흥음식세	-	-	-	-	-	-	-	-	-	-
인지세	1,512	2.2	2,267	2.2	2,606	1.7	3,114	1.4	1,654	0.6
과년도수입	1,027	1.5	1,272	1.2	860	0.5	1,630	0.7	1,983	0.7

2. 내국세 세목별 구성 추이 <계속>

(단위: 백만원, %)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355,496	100.0	374,340	100.0	439,121	100.0	717,976	100.0	1,012,291	100.0	1,370,532	100
178,456	50.2	175,363	46.8	198,544	45.2	313,072	43.6	380,906	37.6	548,081	40
107,615	30.3	104,697	28	123,710	28.2	164,660	22.9	198,619	19.6	319,021	23.3
-	-	-	-	-	-	-	-	-	-	135,159	10
-	-	-	-	-	-	-	-	-	-	183,862	13
56,699	15.9	54,824	14.6	49,779	11.3	110,291	15.4	130,480	12.9	171,172	12.5
-	-	-	-	-	-	-	-	-	-	-	-
1,967	0.6	1,529	0.4	1,828	0.4	2,825	0.4	10,795	1.1	9,904	0.7
1,036	0.3	955	0.3	877	0.2	1,601	0.2	4,234	0.4	5,687	0.4
931	0.3	574	0.2	951	0.2	1,224	0.2	6,561	0.6	4,217	0.3
1,315	0.4	1,429	0.4	1,041	0.2	2,421	0.3	5,077	0.5	7,881	0.6
-	-	-	-	-	-	833	0	226	0	85	0
8,358	2.4	12,078	3.2	21,641	4.9	30,618	4.3	33,491	3.3	40,018	2.9
2,502	0.7	806	0	545	0	1,424	0.2	2,218	0.2	-	-
172,604	48.6	186,589	49.8	229,539	52.3	383,745	53.4	568,652	56.2	769,648	56.2
-	-	-	-	-	-	-	-	-	-	-	-
-	-	-	-	-	-	-	-	-	-	-	-
27,650	7.8	28,115	7.5	34,039	7.8	53,245	7.4	81,422	8	93,020	6.8
-	-	-	-	-	-	5,261	1	9,764	1	13,829	1
63	0.0	-	-	-	-	-	-	-	-	-	-
37,935	10.7	48,736	13	59,773	13.6	97,040	13.5	198,163	19.6	261,404	19.1
17,113	4.8	14,551	3.9	21,831	5	14,164	2	16,868	1.7	21,262	1.6
34,891	9.8	36,882	9.9	50,117	11.4	79,432	11.1	117,639	11.6	166,422	12.1
10,099	2.8	8,081	2	8,078	2	13,479	2	22,623	2	54,056	3.9
31,757	8.9	34,818	9.3	37,438	8.5	103,091	14.4	106,724	10.5	142,276	10.4
8,176	2.3	9,953	2.7	12,218	2.8	8,877	1.2	5,104	0.5	6,038	0.4
4,920	1.4	5,453	1.5	6,045	1.4	9,156	1.3	10,345	1.0	11,341	0.8
-	-	-	-	-	-	-	-	-	-	-	-
2,400	0.7	7,855	2.1	8,293	1.9	13,709	1.9	12,772	1.3	14,603	1.1
2,036	0.6	4,533	1.2	2,745	0.6	7,450	1.0	49,961	4.9	38,200	2.8

2. 내국세 세목별 구성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1977		1978		1979		1980		1981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1,675,179	100	2,252,546	100	3,037,510	100	3,675,795	100	4,595,782	100.0
직접세 계	606,710	36.2	842,036	37.4	1,124,965	37	1,178,835	32.1	1,546,662	33.7
소득세	352,715	21.1	467,759	20.8	614,679	20.2	661,374	18	886,150	19.3
신고분	154,900	9	258,817	11.5	286,280	9.4	298,758	8.1	314,718	6.8
원천분	197,815	12	208,942	9.3	328,399	10.8	362,616	9.9	571,432	12.4
법인세	234,955	14.0	358,715	15.9	493,207	16.2	485,206	13.2	594,062	12.9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	-
상속세	10,741	0.6	8,744	0.4	6,583	0.2	9,623	0.3	26,216	0.6
상속	4,917	0	3,799	0.2	2,240	0.1	2,913	0.1	11,975	0.3
증여	5,824	0	4,945	0.2	4,343	0.1	6,710	0.2	14,241	0.3
자산재평가세	7,746	0.5	6,763	0.3	10,389	0.3	22,418	0.6	40,178	0.9
부당이득세	553	0	55	0	107	0	214	0	56	0.0
등록세	-	-	-	-	-	-	-	-	-	-
부동산투기억제세	-	-	-	-	-	-	-	-	-	-
간접세 계	1,028,015	61.4	1,382,837	61.4	1,873,439	61.7	2,403,957	65.4	2,916,841	63.5
부가가치세	241,573	14	838,907	37.2	1,088,675	35.8	1,471,194	40	1,804,760	39.3
특별소비세	99,865	6	327,021	14.5	484,627	16	582,471	15.8	665,204	14.5
주세	123,249	7.4	193,989	8.6	265,848	8.8	297,717	8.1	374,761	8.2
전화세	20,328	1	22,920	1	30,972	1	49,996	1.4	66,739	1.5
증권거래세	-	-	-	-	3,317	0.1	2,579	0.1	5,377	0.1
영업세	207,852	12.4	-	-	-	-	-	-	-	-
통행세	15,050	0.9	-	-	-	-	-	-	-	-
물품세	132,020	7.9	-	-	-	-	-	-	-	-
직물류세	43,906	2.6	-	-	-	-	-	-	-	-
석유류세	101,950	6.1	-	-	-	-	-	-	-	-
전기가스세	16,048	1	-	-	-	-	-	-	-	-
입장세	7,296	0.4	-	-	-	-	-	-	-	-
유흥음식세	18,878	1	-	-	-	-	-	-	-	-
인지세	19,328	1.2	24,897	1.1	37,317	1.2	33,890	0.9	49,678	1.1
과년도수입	21,127	1.3	2,776	0.1	1,789	0.1	59,113	1.6	82,601	1.8

2. 내국세 세목별 구성 추이 <계속>

(단위: 백만원,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5,250,666	100.0	6,188,424	100.0	6,697,372	100.0	7,496,924	100.0	8,463,984	100.0	10,011,971	100.0
1,879,903	35.8	2,092,763	33.8	2,234,725	33.4	2,671,368	35.6	3,046,378	36.0	3,924,458	39.2
1,005,516	19.2	1,136,116	18.4	1,229,093	18.4	1,481,558	19.8	1,784,559	21.1	2,158,867	21.6
373,703	7.1	436,041	7.0	453,748	6.8	526,922	7.0	625,905	7.4	717,651	7.2
631,813	12	700,075	11.3	775,345	11.6	954,636	12.7	1,158,654	13.7	1,441,216	14.4
781,303	14.9	863,691	14	923,535	13.8	1,126,731	15	1,191,401	14.1	1,682,444	16.8
-	-	-	-	-	-	-	-	-	-	-	-
35,454	0.7	42,662	0.7	47,065	0.7	46,387	0.6	64,369	0.8	69,695	0.7
17,889	0.3	18,107	0.3	19,946	0.3	17,821	0.2	33,382	0.4	32,724	0.3
17,565	0.3	24,555	0.4	27,119	0.4	28,566	0.4	30,987	0.4	36,971	0.4
57,629	1.1	50,293	0.8	35,032	0.5	16,686	0.2	6,049	0.1	13,452	0.1
1	0.0	1	0.0	-	-	6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60,133	62.1	3,922,154	63.4	4,256,193	63.6	4,556,995	60.8	5,127,914	60.6	5,735,751	57.3
2,094,383	39.9	2,559,277	41.4	2,704,272	40.4	2,901,197	38.7	3,272,210	38.7	3,650,479	36.5
664,874	12.7	793,315	12.8	898,110	13.4	980,807	13.1	1,085,500	12.8	1,189,665	11.9
394,708	7.5	441,027	7.1	493,393	7.4	501,187	6.7	555,805	6.6	581,501	5.8
101,574	1.9	123,775	2	153,936	2.3	166,551	2.2	195,463	2.3	235,737	2.4
4,594	0.1	4,760	0.1	6,482	0.1	7,253	0.1	18,936	0.2	78,369	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227	1.0	64,212	1.0	68,840	1.0	75,670	1.0	83,529	1.0	99,772	1.0
56,403	1.1	109,295	1.8	137,614	2.1	192,891	2.6	206,163	2.4	251,990	2.5

2. 내국세 세목별 구성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12,540,239	100.0	15,208,395	100.0	19,130,227	100.0	24,089,183	100.0	30,080,065	100.0
직접세 계	5,353,473	42.7	6,897,428	45.4	8,340,457	43.6	11,627,276	48.3	14,573,333	48.4
소득세	2,964,061	23.6	3,556,892	23.4	4,723,114	24.7	6,459,371	26.8	8,008,357	26.6
신고분	984,183	7.8	1,299,917	8.5	2,017,230	10.5	2,618,269	10.9	2,758,288	9.2
원천분	1,979,878	15.8	2,256,975	14.8	2,705,884	14.1	3,841,102	15.9	5,250,069	17.5
법인세	2,247,429	17.9	3,107,894	20.4	3,226,128	16.9	4,585,547	19	5,941,051	19.8
토지초과이득세	-	-	-	-	-	-	190,171	0.8	121,776	0.4
상속세	109,260	0.9	142,971	0.9	295,933	1.5	326,201	1.4	433,273	1.4
상속	36,007	0.3	39,472	0.3	71,033	0.4	104,372	0.4	175,030	0.6
증여	73,253	0.6	103,499	0.7	224,900	1.2	221,829	0.9	258,243	0.9
자산재평가세	32,723	0.3	89,671	0.6	95,282	0.5	65,899	0.3	68,876	0.2
부당이득세	-	-	-	-	-	-	87	0.0	-	-
등록세	-	-	-	-	-	-	-	-	-	-
부동산투기억제세	-	-	-	-	-	-	-	-	-	-
간접세 계	6,852,269	54.6	8,063,177	53	10,384,159	54.3	12,085,207	50.2	15,000,208	49.9
부가가치세	4,205,215	33.5	5,260,229	34.6	6,964,419	36.4	8,252,627	34.3	10,076,296	33.5
특별소비세	1,333,176	10.6	1,256,966	8.3	1,911,791	10	2,246,526	9.3	3,068,615	10.2
주세	780,470	6.2	893,033	5.9	1,022,417	5.3	1,145,342	4.8	1,329,041	4.4
전화세	283,462	2.3	237,437	1.6	261,522	1.4	311,387	1.3	360,431	1.2
증권거래세	249,946	2.0	415,512	2.7	224,010	1.2	129,325	0.5	165,825	0.6
영업세	-	-	-	-	-	-	-	-	-	-
통행세	-	-	-	-	-	-	-	-	-	-
물품세	-	-	-	-	-	-	-	-	-	-
직물류세	-	-	-	-	-	-	-	-	-	-
석유류세	-	-	-	-	-	-	-	-	-	-
전기가스세	-	-	-	-	-	-	-	-	-	-
입장세	-	-	-	-	-	-	-	-	-	-
유흥음식세	-	-	-	-	-	-	-	-	-	-
인지세	120,692	1.0	162,305	1.1	193,077	1.0	224,223	0.9	214,983	0.7
과년도수입	213,805	1.7	85,484	0.6	212,534	1.1	152,477	0.6	291,541	1.0

2. 내국세 세목별 구성 추이 <계속>

(단위: 백만원,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34,174,562	100.0	38,449,032	100.0	44,381,993	100.0	49,202,309	100.0	52,153,147	100.0	51,237,792	100.0
16,413,477	48.0	19,645,246	51.1	23,427,270	52.8	25,319,879	51.5	25,620,082	49.1	29,111,751	56.8
9,462,850	27.7	11,207,767	29.1	13,618,190	30.7	14,766,882	30.0	14,867,893	28.5	17,194,021	33.6
3,605,127	10.5	4,118,855	10.7	4,676,602	10.5	4,954,990	10.1	5,022,125	9.6	4,006,790	7.8
5,857,723	17.1	7,088,912	18.4	8,941,588	20.1	9,811,892	19.9	9,845,768	18.9	13,187,231	25.7
5,862,329	17.2	7,387,568	19.2	8,662,631	19.5	9,356,104	19.0	9,424,669	18.1	10,775,797	21.0
322,626	0.9	56,085	0.1	27,969	0.1	13,689	0.0	-841	0.0	5,094	0.0
667,167	2.0	907,420	2.4	1,029,374	2.3	966,530	2.0	1,161,147	2.2	679,631	1.3
346,337	1.0	523,570	1.4	605,644	1.4	565,773	1.1	604,660	1.2	309,488	0.6
320,830	0.9	383,850	1.0	423,730	1.0	400,757	0.8	556,487	1.1	370,143	0.7
98,505	0.3	86,406	0.2	89,105	0.2	216,674	0.4	167,214	0.3	457,208	0.9
-	-	-	-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368,638	50.8	18,192,059	47.3	20,124,203	45.3	22,943,240	46.6	25,364,720	48.6	20,897,047	40.8
11,687,506	34.2	13,057,973	34	14,636,893	33	16,789,539	34.1	19,487,991	37.4	15,706,805	30.7
3,606,917	10.6	2,445,573	6.4	2,617,110	5.9	3,119,253	6.3	3,036,442	5.8	2,211,453	4.3
1,367,588	4.0	1,545,787	4.0	1,824,513	4.1	2,083,563	4.2	1,789,791	3.4	1,814,408	3.5
399,722	1.2	458,696	1.2	543,051	1.2	661,012	1.3	788,624	1.5	921,887	1.8
306,905	0.9	684,030	1.8	502,636	1.1	289,573	0.6	261,872	0.5	242,494	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2,619	0.7	275,300	0.7	319,829	0.7	355,970	0.7	390,105	0.7	303,533	0.6
149,828	0.4	336,427	0.9	510,691	1.2	583,220	1.2	778,240	1.5	925,461	1.8

2. 내국세 세목별 구성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1999		2000		2001		2002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56,393,091	100.0	71,106,081	100.0	74,027,343	100.0	82,225,914	100.0
직접세 계	27,138,489	48.1	36,913,454	51.9	36,759,872	49.7	39,261,691	47.7
소득세	15,854,601	28.1	17,508,873	24.6	18,662,954	25.2	19,160,496	23.3
신고분	3,531,014	6.3	4,279,134	6.0	5,454,554	7.4	6,860,358	8.3
원천분	12,323,587	21.9	13,229,739	18.6	13,208,400	17.8	12,300,138	15
법인세	9,365,392	16.6	17,878,435	25.1	16,975,149	22.9	19,243,149	23.4
토지초과이득세	57	0.0	54	0.0	-85	0.0	-2	0.0
상속세	901,176	1.6	988,873	1.4	948,392	1.3	856,163	1.0
상속	480,670	0.9	448,711	0.6	429,955	0.6	397,819	0.5
증여	420,506	0.7	540,162	0.8	518,437	0.7	458,344	0.6
자산재평가세	1,017,263	1.8	537,219	0.8	173,462	0.2	1,885	0.0
부당이득세	-	-	-	-	-	-	-	-
등록세	-	-	-	-	-	-	-	-
부동산투기억제세	-	-	-	-	-	-	-	-
간접세 계	27,705,423	49.1	32,353,213	45.5	35,080,615	47.4	40,605,629	49.4
부가가치세	20,369,037	36.1	23,212,042	32.6	25,834,726	34.9	31,608,756	38.4
특별소비세	2,713,271	4.8	2,984,560	4.2	3,633,613	4.9	4,288,222	5.2
주세	2,077,975	3.7	1,962,493	2.8	2,468,163	3.3	2,655,001	3.2
전화세	1,191,414	2.1	1,458,176	2.1	1,346,194	1.8	17,845	0.0
증권거래세	1,353,726	2.4	2,735,942	3.8	1,797,919	2.4	2,035,805	2.5
영업세	-	-	-	-	-	-	-	-
통행세	-	-	-	-	-	-	-	-
물품세	-	-	-	-	-	-	-	-
직물류세	-	-	-	-	-	-	-	-
석유류세	-	-	-	-	-	-	-	-
전기가스세	-	-	-	-	-	-	-	-
입장세	-	-	-	-	-	-	-	-
유흥음식세	-	-	-	-	-	-	-	-
인지세	370,929	0.7	387,560	0.5	476,559	0.6	482,179	0.6
과년도수입	1,178,250	2.1	1,451,854	2.0	1,710,297	2.3	1,876,415	2.3

2. 내국세 세목별 구성 추이 <계속>

(단위: 백만원, %)

2003		2004		2005		2006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92,231,159	100.0	95,276,356	100.0	104,427,868	100.0	113,879,497	100.0
47,734,645	51.8	49,806,922	52.3	56,327,171	53.9	62,794,317	55.1
20,787,302	22.5	23,434,004	24.6	24,650,520	23.6	31,004,340	27.2
7,167,847	7.8	8,316,709	8.7	9,078,887	8.7	12,784,050	11.2
13,619,455	14.8	15,117,295	15.9	15,571,633	14.9	18,220,290	16
25,632,684	27.8	24,678,343	25.9	29,805,494	28.5	29,362,229	25.8
-	-	-	-	-	-	-	-
1,315,058	1.4	1,708,246	1.8	1,872,827	1.8	2,389,292	2.1
485,302	0.5	588,328	0.6	701,964	0.7	867,649	0.8
829,756	0.9	1,119,918	1.2	1,170,863	1.1	1,521,643	1.3
-399	0.0	-13,671	0.0	-1,670	0.0	38,456	0.0
-	-	-	-	-	-	-	-
-	-	-	-	-	-	-	-
-	-	-	-	-	-	-	-
42,514,026	46.1	43,036,743	45.2	45,483,494	43.6	47,928,135	42.1
33,447,038	36.3	34,571,755	36.3	36,118,641	34.6	38,092,857	33.5
4,732,985	5.1	4,574,032	4.8	4,399,528	4.2	4,903,453	4.3
2,726,181	3.0	2,588,795	2.7	2,595,099	2.5	2,405,598	2.1
1,361	0.0	581	0.0	-299	0.0	542	0.0
1,606,461	1.7	1,301,580	1.4	2,370,525	2.3	2,525,685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6,513	0.5	435,828	0.5	499,962	0.5	587,901	0.5
1,525,975	1.7	1,996,863	2.1	2,117,241	2.0	2,569,144	2.3

주: 1. 1967년부터는 수입제세를 포함한 수지임. 2. 내국세 중 관세, 수입분의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부의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청 세입이 아니므로 제외함.

3. 토지초과이득세는 1998. 12. 28. 폐지됨. 4. 자산재평가세는 2000. 12. 31. 폐지됨. 5. 전화세는 2001. 9. 1부터 부가가치세로 통합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국내기업 조세 역차별 없앤다

외국기업에 깎아준 세금 4년간 2조222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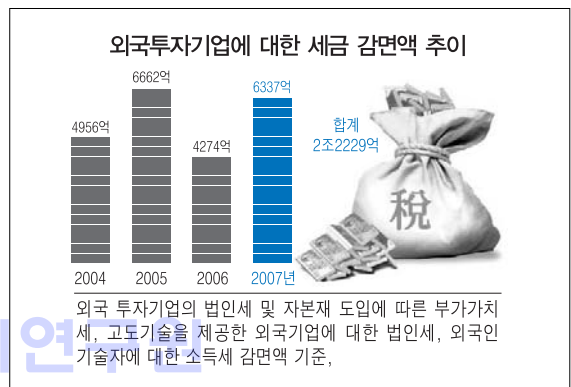
외국 기업에만 세금을 깎아줘 국내 기업이 역(逆)차별을 받는 현재의 조세감면 체계가 개편된다.

외자(外資) 유치를 위해 1999년 도입돼 매년 4000억~6000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던 외국인 대상 조세감면제도가 9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다.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산업규제를 풀기로 한 데 이어 조세의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은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 탓에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를 늘려 일자리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다. 재계는 그동안 “외국 기업과 토종 기업 간에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연구원은 ‘외국인 투자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최종 보고서를 지난달 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부가 맡길 용역과제다. 재정부는 이 보고서가 제시한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축소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될 세제개편안에 담되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단위: 원)



자료: 기획재정부

우리 정부의 외국인 대상 조세지원액은 2004년 이후 4년간만 해도 2조2229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지원액만 6337억원으로 2006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었다.

반면 중국과 대만은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줄이고 있고, 싱가포르 홍콩 영국 등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자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대한다.

재정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 외투기업 조세감면 조항에 5년 안팎의 일몰 규정을 뒤 감면 항목을 점차 줄이고, 꼭 필요한 외국인 투자에 한해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기로 했다. 현행 감면제도는 모든 외국인에게 세금을 깎아주지만 보조금으로 대체하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만 고를 수 있고 지원 액수에도 차등을 둘 수 있다.

또 법인세율을 크게 낮춰 홍콩처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책상 없애기 힘든 감면혜택은 국내 기업에도 같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중국과의 근접성 등 입지적 조건”이라며 “감면조항을 축소한다고 해서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8년 3월 7일자)

300억·100억 이익, 200억 손실 3개 기업 집단 법인세 99억에서 49억으로 줄어

정부 세금은 수조원 덜 걷히지만지주회사 활성화, 외자 유치 도움

◆ 연결납세제도 도입하면

정부가 올해 안에 도입하려는 연결납세제도는 그동안 체계의 단골 건의사항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최우선 세계 개선 과제였다. 자회사 가운데 적자기업이 있는 기업집단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세금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왜 도입하나=연결납세제도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납세 단위로 묶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예컨대 A, B, C 3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그룹이 있다고 하자. A사가 300억 원 이익, B사가 100억원의 이익을 내고, C사는 200억원의 손실을 냈다면 지금은 A사는 300억원에 대해 74억8800만 원, B사는 100억원에 대해 24억88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C사는 손실을 봤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이 기업 집단은 3개사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200억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지금보다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표 참조>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2000년 기준으로 세수가 약 5100억원에서 1조2000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시점인 2000년보다 현재 법인세 규모가 두 배 이상 늘 것을 감안하면 세수 감소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연구원 김진수 박사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초기 2~3년간

가산세(Surtax)를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부담금 얼마나 줄어나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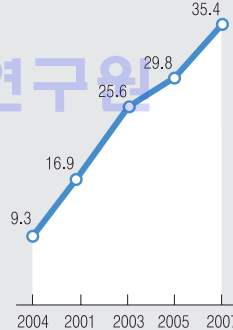
연결납세 대상 자회사	개별 납세	연결납세	감소규모
지분100% 보유 자회사만 포함할 경우	2조6179	2조6179	5169
지분 95% 이상	4조6420	4조157	6263
지분 80% 이상	5조5085	4조5620	9465
지분 50% 이상	8조4982	7조2907	1조2075

2000년 법인세수를 근거로 한 추정치

자료: 조세연구원

큰 폭으로 늘어나는 법인세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금 부담 변화

(단위: 원)

	도입 전	도입 후
A사 (300억 이익)	74억 8800만	3개사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200억원에 과세
B사 (100억 이익)	24억 8800만	
C사 (200억 손실)	74억 8800만	
총계	99억 7600만	49억 8800만

기업 입장에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법인세를 인하 못지않은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허용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세금 부담이 완화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이 제도를 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는 1999년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에 그룹 형태를 지주회사로 바꾸도록 종용했다. 지주회사가 기업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세제는 지주회사 제도를 뒤따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처음엔 의욕을 갖고 추진했으나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벽에 막혀 제

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지주회사제도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주회사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부 사업부보다 자회사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기업들도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다. 2006년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CK)가 외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연결납세제도 미비를 지적했다. 외국 기업은 흔히 자회사들이 함께 진출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대상 자회사 넓혀야 효과=전문가들은 연결납세제도에 포함하는 자회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에서는 시행 초기에는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만 연결납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대상이 너무 줄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를 살리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연결납세 대상을 지분 100% 자회사로 할 때와 지분 50% 이상 자회사로 할 때의 세금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일본에서도 2002년 도입 초기에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소극적이었던 전례가 있었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연결납세 기준인 모기업의 자회사 지분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지분이 얹힌 모회사와 자회사가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돼 각 법인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법인세를 내는 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어야 연결납세 대상으로 인정한다. 미국은 모회사가 8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를 대상에 포함하고, 일본은 100%, 독일은 5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일보 2008년 3월 4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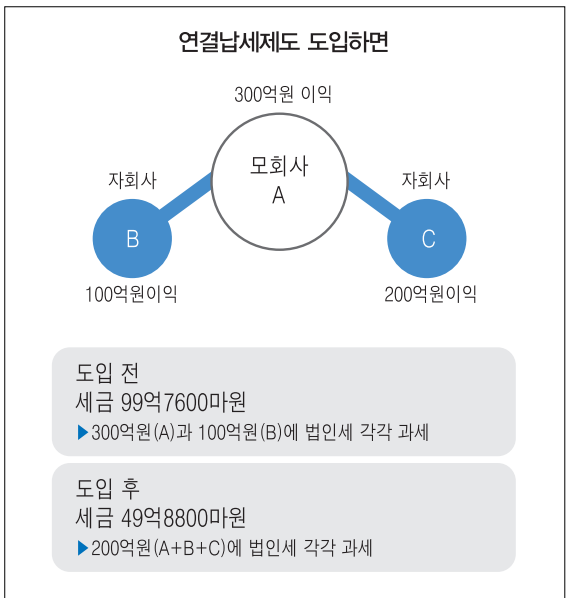
모·자회사 이익·손실 합쳐 세금 부과 기업 법인세 부담 줄어든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연결납세제 연내 도입”

올해 안에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뒤 법인세를 물리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계열사 가운데 한 기업은 이익을 내고, 다른 곳은 손실을 본 경우 전체 이익 규모가 줄면서 법인세 부담도 감소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기업 과세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21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겠다”며 “실제 시행은 2009년께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회사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개별 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예를 들어 모회사 A사가 300억원의 이익을 냈고 자회

사 B사는 100억원 이익, 자회사 C사는 200억원 손실을 냈다고 치자. 지금은 A사가 300억원, B사는 100억원에 대해 각각 법인세를 내야 한다. C사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결국 이 기업 집단은 총 99억7600만원의 세금을 낸다.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A, B사의 이익에서 C사의 손실을 뺀 뒤 20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이 기업집단의 법인세는 49억8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세연구원은 연결납세제도 도입 초기에 5100억~1조 2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조세연구원 김진수 박사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우려가 있어 초기 2~3년 가산세(Surtax)를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손영기 경제조사팀장은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8년 3월 4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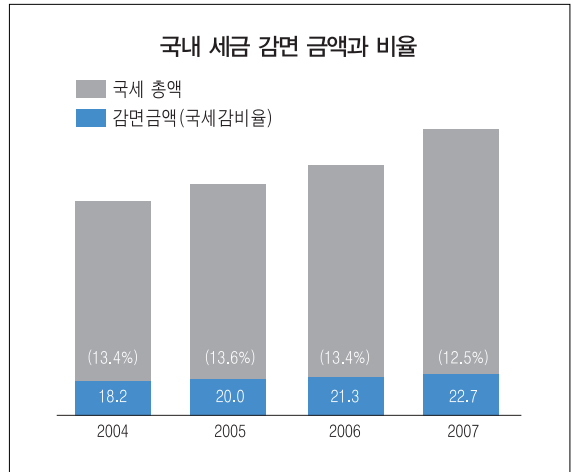
복잡한 목적세도 대폭 손질

연금 합치면 재정의 40.8% 달해
세수 미미한 도축세 등 손봐야
취지 벗어난 감면 규정도 개선

“지방세 항목 중에 도축세 같은 것은 세수가 수백억원대에 불과하다. 존재 의의가 극히 미미하다. 해당 지자체가 세수를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이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김성태 재정학회장은 국내 목적세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요약한다. 실제로 도축세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 선에 불과한 데다 사실상 수수료 성격이 짙다. 세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목적세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각종 세금 감면 규정 정비 역시 세제개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화제다.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실제로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허용석 세제실장은 “세목 수만 놓고 국제비교할 때 30개(국세 14개, 지방세 16개)인 우리나라는 미국 37개, 일본 42개 등과 비교해 많지 않다”면서도 “실효성 없는 부분에 대한 정리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전했다.

허 실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보다 다소간 논리 흠결을 감수하더라도 기존 세목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목적세 증가 억제 등을 통해 ‘간편한 세제로 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최근엔 조세연구원도 재정 대비 목적세 비중이 너무 높다는 보고서를 통해 복잡한 목적세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작년 기준으로 연금과 사회보험을 합친 광의의 목적세 규모는 85조4000억원에 달해 국내 재정(통합재정 기준) 가운데 40.8%를 넘었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박사는 “목적세가 의미를 가지려면 국민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한다”며 “걷는 것도 쓰는 것도 간단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예를 들어 다양한 세목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특정한 기본 세목 하나에만 매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작년 기준 총 219개에 달하는 조세감면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제혜택은 일몰기한이 잘 지켜지지 않음은 물론 좀처럼 그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다.

실제 국세감면 규정 수는 △2005년 226개 △2006년 230개 △2007년 219개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세감면 효과가 본래 취지와는 반대로 가는 점도 문제다.

작년 12월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조세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국세감면분 22조7083억원 중 12조182억원이 개인납세자에 대한 환급분이다. 비중으로 전체 감면금액 중 52.9%에 달한다. 대신 성장잠재력 확충 등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규모는 2006년 7조2429억원에서 6조699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절대적인 조세감면 규모(조세지출 규모)가 크다는 게 문제”라며 “조세 감면 일몰기한은 통상 3년인데 감면 항목 55개가 평균 15년이나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신문 3월 4일자)

감세정책 성공 ‘조세개혁’에 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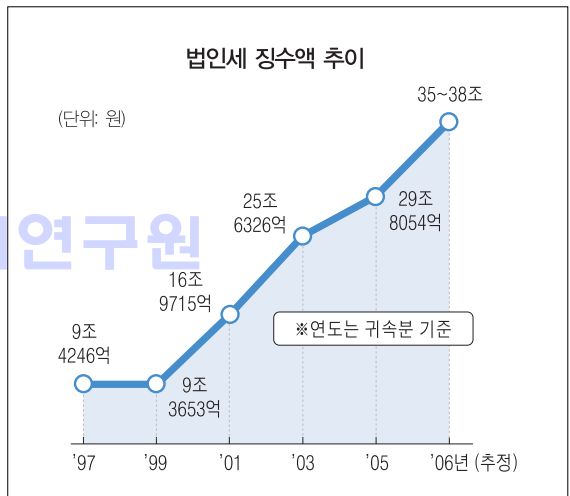
전문가 “정부 지출 효율화부터 제시해야”

새 정부가 투자 및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감세(減稅)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제개편 차원을 넘어 조세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감세 정책은 재정 건전성 유지가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출 효율화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 “4·9 총선 이후 조세 개혁을”

현진권(경제학) 아주대 교수는 2일 “조세 정책은 선거에

서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빠지기 쉬운 정책”이라면서 “4월 총선이 끝나고 5월 이후에는 조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의 조치가 새 정부 출발 시점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조세 개혁은 원점에서 출발해 하나의 패키지로 빅뱅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세제 개편을 하지 말고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세제를 한 번에 개혁해야 한다.”면서 “비과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제 효율성을 고려해 과세 기반(tax base)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쪽으로 조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감세 정책과 정부 지출 절감을 패키지로

세율은 한 번 낮추면 다시 올리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조세 저항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감세 정책은 세수(稅收) 부족으로 재정 수지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 지출 예산을 줄이는 조치와 맥을 같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 김우철 위원은 “감세 정책은 재정 안정성에 역점을 뒀야 하는 등 정책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예산 절감을 위한 정부 지출 구조 효율화 방안이 표면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대 현진권 교수는 “세수 누락 문제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을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면서 “공무원 감축과

공공 부문의 민간 이양 등을 통해 정부 지출 예산을 10~20% 줄이면 감세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천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지만 하면 기업의 투자 촉진과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수익이 늘어나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련의 세금 감면 조치는 재정 건전성 유지가 요체”라고 지적했다.

◆ 감세 정책 효과는

현진권 교수는 “부가가치세를 손대면 모르지만 법인세 인하는 세계 흐름으로 볼 때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라면서 “감세 정책은 단기가 아닌 장기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체질이 바뀌어 5년 뒤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연구원 김우철 위원은 “다른 세수에 비해 법인세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감세 요인이 있다.”면서 “현재 25%인 법인세율을 한꺼번에 5%포인트 낮추면 세수 안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매년 1%포인트씩 또는 두 차례에 걸쳐 3%포인트, 2%포인트를 인하는 단계적 감세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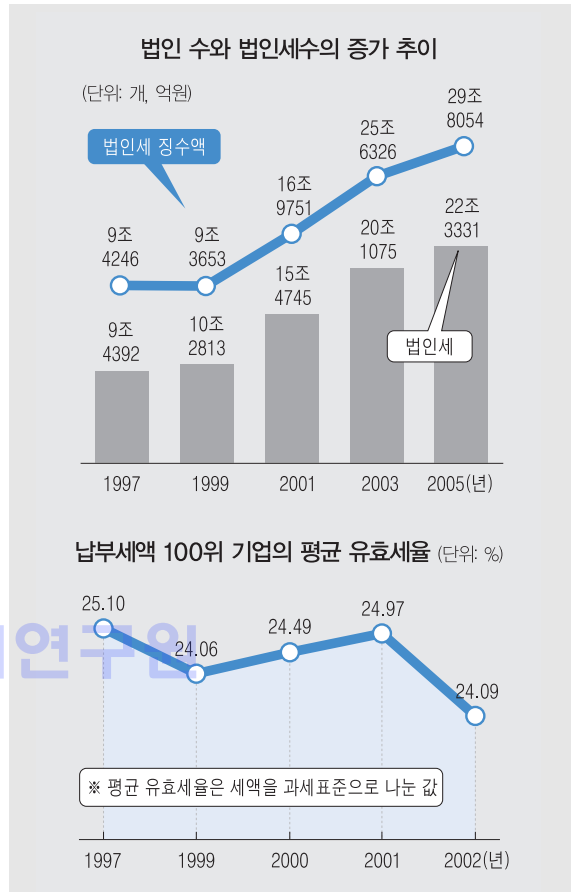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투자 조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지려면 2~3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신문 3월 3일자〉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급증은 수익성 개선 탓”
기업 稅부담 증가와 무관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가 급증한 것은 기업의 세부담 증가 때문이 아니고 전체 법인 수가 늘어나고,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법인세 납부세액 100대 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적은 재계를 중심으로 법인의 세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세연구원 김우철 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두차례에 걸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가 꾸준히 늘어나 그 원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8조 5000억원에서 2005년 29조8000억원으로 10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00조원에서 810조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법인세

수 증가가 경제 규모의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보고서는 “법인세수가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전체 법인 수가 증가한 데다 법인의 소득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997년 9만5000개 수준이던 흑자법인의 수는 2005년 22만3000개로 2.3배 증가했다. 법인당 납부세액은 같은 기간 평균 5.58% 늘었으나 전체 법인수가 11.66%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 수가 10% 늘어나면 GDP 대비 법인세수는 0.58%포인트 증가했다.

또 전체 법인세수에서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의 비중은 97년 33%에서 2002년 64%로 1.9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100대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은 97년 25.10%에서 2002년 23.09%로 오히려 하락했다. 기업 규모가 커지더라도 세부담이 누진적이거나 과세표준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보고서는 “사업연도 소득 대비 법인세 신고액 비율은 80년대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90년대 초반 25% 수준으로 상승한 뒤 꾸준히 하락해 최근에는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구위원은 “법인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률 개선이나 전체 법인 수의 증가 또는 규모에 따른 기업소득 격차의 심화와 같은 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인 수가 많아짐에 따라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기업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법인세수의 우량 기업 편중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향신문 2월 28일자)

조세연구 “목적세 부담 줄여줘야”

조세연구원이 부담금과 사회보험을 포함한 광의의 목적세가 2006년 85조원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면세 대상이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977년대 도입된 후 조정되지 않은 세율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하에서 미뤄졌던 세제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박기백·박상원·손원익) 보고서’를 통해 목적세는 너무 항목이 많고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순수 목적세는 2006년 기준 18조9000억원 수준이지만 부담금을 합치면 29조2000억원, 사회보험까지 포함하면 총 85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해당연도 세입 중 40%를 넘겨 과도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적인 지지 확보와 정책수단으로 교육, 환경, 도로 등 주요 목적세가 배분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교육세는 세입 구조를 단순화하고, 교통세는 일반과세와 환경, 유류세를 구분할 것을 권고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김승래·박명호·홍범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부가세 면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1977년 도입 후 부가세율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비세율을 조정하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매일경제신문 2008년 2월 28일자)

비싼집 거주=고소득 상관관계 낮다

조세연구원 “중부세 폐지해야” 보고서
“소득 고려안한 중과세 형평성 어긋나”

소득과 상관없이 비싼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소 내부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도입된 제도인 데다 실제 소득과 집값의 상관관계도 낮아 세금을 걷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던 지난 노무현 정부의 세금 정책을 전면 개편하자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세부담 높이면 세액확보 어려워

보고서를 작성한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7819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3년 기준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가액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가구가 보유한 주택을 2004년을 기준으로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양도차익과 소득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상관관계가 낮았다.

노 연구위원은 “비싼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택 보유자가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급격히 세 부담을 높이면 납부세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 가액이 높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에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51개 도시의 재산세 실효세율과 집값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재산세 부담을 높인다고 해

서 집값 상승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과세체계 전면 개편해야

노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를 종합소득세로 통합시키는 등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토지 공급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시장 참여자에게 공정한 거래의 룰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그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부동산 평가와 납부세액 확보라는 근본적인 제약 조건에 주목해야 한다”며 “주택에 대한 중부세는 어느 시점에서 폐지한 뒤 임대소득세를 통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多)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 목적에서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부동산에 국한하지 않고 부채도 공제하는 등 원칙에 충실한 유럽식 순 부유세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양도세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세제가 아니라 자본 이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내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경부 “보유자산에만 부과가 원칙”

재경경제부 당국자는 “보유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은 개인 소득과 부채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자산 가격만을 근거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며 중부세도 그런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부세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아닌 만큼 집값과 소득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 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주택 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까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2008년 2월 26일자)



경제학 패러독스

타일러 코웬 지음/김정미 옮김
랜덤하우스 코리아 발행

뉴욕거가 경탄한 경제계의 문화인류학자, 타일러 코웬이 제안하는 새로운 경제학

메뉴판을 보며 음식을 주문할 때 경제학은 어떤 도움이 될까? 천생연분을 찾을 때에는? 아니면 회의에서 지나치게 떠들어대는 사람을 통제하거나 덜 아프게 치료하도록 치과의사를 동기부여하는 데에는? 이처럼 저자 타일러 코웬은, 일상의 순간순간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경제적 사고가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자기계발적' 성격의 경제교양서를 집필했다.

경제학을 일상에 적용하거나 일상의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한 경제교양서들이 계속 출간되고 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타일러 코웬은 그런 책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처럼,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 경제적 사고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인간이 경제적 선택을 할 때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개념은 행동 경제학의 발전으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인지적 오류'를 극복하고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즉, 경제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해타산을 따지며 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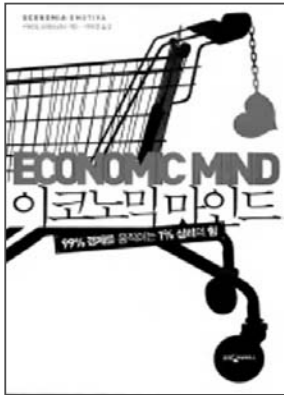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 책에도 언급되듯이, 경제학자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게 되었고, 같은 조건하에서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는 실험 결과들도 나오고 있다.

타일러 코웬에 따르면, 경제학은 이 세상에서 희소하고 값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학문이다. 그런데 그 희소하고 값진 것들을 꼭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으로 살 수 없다면, 그 욕망의 대상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도 없다. 시장에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없다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의 동기를 유발하고 자신의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학의 중심 개념은 돈이 아니라 인센티브이다. 인센티브란 인간의 행동을 자극하는 것, 개인이 여럿 중에서 특정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돈이 될 수도 있지만, 미소나 칭찬이 될 수도 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는 비틀스의 말은 맞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이용해 사랑에 빠질 수는 있다.

그러므로 인간 욕구의 난해함이나 다양성이 경제적 사고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인간의 신념과 사고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주제들을 종합 무진 넘나드는 자유분방한 서술과 재기발랄한 문체가 이 책은 경제교양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다채로운 일상사에 대해 자유분방한 문체로 일관하고 있다.

이 책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경제학자답지 않은 개성을 가진 저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타일러 코웬은 조지메이슨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자, 인기 절정의 경제학 블로그 '한계효용혁명(MarginalRevolution.com)'의 공동운영자,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서 열광적인 지지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코노믹 마인드

마테오 모르넬리니 지음/ 이현경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발행

심리로 읽으면 경제가 다르게 보인다

절대 부자가 못 되는 뉴욕의 택시 기사들, 좋은 와인인 썩어있는데 파리만 날리는 와인 바 주인, 매번 후회하면서도 구매를 멈추지 않는 온라인쇼핑 중독자, 쓸데없이 선수 몸값을 높이는 축구 구단주, 고급차를 파는 데 계속 실패하는 세일즈맨, 손해 보는 주식을 끝내 못 버리는 초보 주식투자자까지…….

그 누구도 현실 경제를 움직이는 심리의 비밀을 모르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감성에 주목하는 새로운 경제학의 트렌드. 최신 신경경제학·행동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 심리의 메커니즘을 예리하게 파헤친다. 진짜 경제를 움직이는 1% 마음의 힘을 읽어라.

예를 들어보자. '어중간한 실패'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성향은 한 개인에게는 도박판에 남은 돈마저 다 쏟아부어보자는 선택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축구 구단주에게는 일류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엄청난 트레이드 비용을 지르도록 한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사려 깊은' 성향은 어떤 결과를 낳

을까. 같은 업종의 주식이 작년에 상승세였다는 이유로, 내가 산 주식도 1년 뒤에는 상승세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쥐고 있게 만든다. 의사들에게는 자기에 게 찾아오는 환자들의 50% 정도를 항상 수술하게 만들고,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가 200만명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는 이유로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게 만든다. 이런 심리의 함정들이 결국 당신을 누군가의 현금인출기로 만들고, 능력 있는 마케터의 뒤통수를 친다.

저자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조언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동에는 다 체계가 있고 이유가 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의만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 수 있다"

더 다행스러운 것은 그 방법을 아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는 일' 이기도 하다.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의 주주 대부분이 애플랜타 주민인 비밀을 알려주고, 도저히 손님들이 선택할 것 같지 않는 비싼 고급 와인이 메뉴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청바지 하나를 사러 가서 스무 번도 넘게 입고 나서 결국 못 사고 나오는 사정을 해명해주기도 하고,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나보다 더 머리 좋은 인사팀의 계약을 미리 눈치채게 만들기도 한다.

저자인 마테오 모테르리니 (Motterlini, Matteo)는 이탈리아 밀라노 산 라파엘 대학에서 인지경제학과 자연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CMU)의 방문교수였으며, 실험·응용 인식론 연구센터(CRESCA)의 공동책임자이자, 재무행동 연구센터의 책임자이다. 또한 밀라노 실험연구소와 프로축구 구단 AC밀란의 과학 분야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포럼

2008년 3월호 통권 제141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민희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8년 3월 15일 발행 / 제13권 제3호(통권 제14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